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성장 동력 확충 등 사람중심 지속 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년도 본예산보다 28.4조원(7.1%) 증가한 총지출 429.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의 바람직한 역할, 재원조달 방법과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재정건전성,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을 비롯하여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재정총량에 대하여 분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와 현금급여 재정사업과 같은 유형별 분석을 확대함으로써 거시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예산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소관부처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하고, 부처의 정책·사업들을 단위·세부사업 등 다양한 수준에서 접근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전계획 수립과 절차 준수 여부, 그리고 집행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살펴봄으로써 예산안 분석의 틀을 유기적·통합적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재정사업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적정하게 편성·관리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분석시리즈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차 례

CONTENTS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I. 예산안 개요 / 3

- 1. 현 황 3
-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9
- 3. 예산안 주요 특징 12

II. 주요 현안 분석 / 13

- 1. 쌀 수급 불균형 문제와 개선 방안 15
 - 1-1.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의 과거 유사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15
 - 1-2. 쌀소득보전변동직불 사업의 적정 예산 반영 필요 19

III. 개별 사업 분석 / 22

-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사업의 운영방안 마련 필요 22
- 2. 밀집지역 환경친화 축사 개편 사업의 지원 효과 검토 필요 29
- 3.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의 기존 사업과 통합 추진 필요 34
- 4.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 사업의 사업계획 내실화 필요 38
- 5.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가입률 제고 필요 40
- 6.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의 사업 추진 체계 개선 필요 45
- 7.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사업과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의 계획 정비 필요 48



8. 농축산물 안전생산·유통관리기술개발(R&D)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과제 기획 필요 ...	51
9. 소규모 도계장 설치지원 사업의 기 설치된 도계장 활용 필요	56
10. 도축검사운영 사업의 도축검사원인건비 조정 필요	59
11. 축산물온라인가격플랫폼 구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필요	61
12.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의 부처간 협력 강화 필요	66
13.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의 기 추진 단지에 대한 경과 검토 필요	71
14.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보완 필요	74
15.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제조시설 지원 사업의 집행 실적 저조로 인한 예산 조정 필요	79
16. 노지 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 사업의 농촌진흥청 데이터 활용 필요	82
17.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수도작 이외의 작물로 유입 촉진 필요	86
18.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시범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 계획 마련 필요	89
19. 농식품바우처지원 사업의 사업 계획 내실화 필요	91
20.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선박검사 수수료율 검토 필요	94
21. 대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 사업과 수출인프라 강화사업 간의 유사·중복	97
22.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사업의 프론티어 업체 지원 등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지원 축소 필요	101
23. aT-PLANET 마스터 플랜 수립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105
24.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의 기존지구 위주로 사업 추진 필요	108
25. 농촌기반기술연구 사업의 추진방식 변경 필요	112
26. 농업가뭄센터와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의 연계 운영 필요	116
27. 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 수입 예산 편성 필요	121
28. 새만금지구 유지관리적립금 활용방안 강구 필요	123
29. 한식홍보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127



CONTENTS

30.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사업의 농촌진흥청 유사 사업과의 차별화 및 사업계획 철저 마련 필요	130
31. 타부처와 유사·중복되는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사업의 차별화 필요	135
32.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신규과제의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철저	139
33. 식물검역 수수료 세입 편성 필요	143
34. 농식품모태펀드 실투자 실적 개선 필요	147
35. 유통·마케팅 교육 사업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업 간의 유사·중복	151
36. 말산업육성 목표 달성 필요	154

[해양수산부]

I. 예산안 개요 / 159

1. 현 황	159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64
3. 예산안 주요 특징	168

II. 개별 사업 분석 / 170

1.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사업방식 조정 또는 예산규모 검토 필요	170
2.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의 사업계획 미흡	177
3.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과 해양폐기물정화사업의 유사성에 따른 통합 검토	180
4. 불법조업방지시설로 인공어초 설치 시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필요	185
5. 국립해양박물관 정보화사업의 사전 절차 준수 필요	190
6.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의 적정규모 편성 검토	193



7. 대형방제선 건조 사업의 대형방제선 소유권 이전 부적정 및 방제업무 신속투입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철저	196
8. 해양환경측정분석센터 공사비 중 해양환경관리공단 부담분 확대 필요	203
9. 양식어업지원 사업의 필요성 재검토	206
10.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예산 편성여부 및 편성시기 조정 검토	210
11. 항만YT 친환경 LNG연료 전환사업의 확대 가능성 검토 등	214
12. 특수경비원보안위탁용역 사업의 항만보안 특수경비원 시중노임단가 적용 필요	218
13. 비축사업의 집행현황을 감안한 편성 및 수매계획의 적시적인 조정 필요	220
14.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변동 예측기술 개발 사업의 기존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및 활용방안 검토	223
15.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 사업과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의 유사·중복된 분야 연구개발 실시	226
16.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의 성과 미흡에 따른 사업 철저수행 필요	230
17. 새만금신항 사업 진행상황 철저 관리 필요	233
18.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역의 조속한 지정 필요	235
19. 어선거래제도 운영 사업의 어선중개업 교육방식 적정성 검토 및 어선거래시스템 활성화 방안 검토	239
20. 관공선건조 및 운영 사업의 계약업체 관리 철저 및 표준선형 개발 필요	242
21. 선박안전기술공단 지출예산의 집행 저조	245



CONTENTS

[농촌진흥청]

I. 예산안 개요 / 251

- 1. 현 황 251
-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254
- 3. 예산안 주요 특징 256

II. 주요 현안 분석 / 257

- 1. R&D사업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및 국고지원을 조정 필요 257
 - 1-1. R&D 사업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필요 258
 - 1-2.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국고지원을 조정 필요 259

III. 개별 사업 분석 / 263

- 1.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사업의 기존 사업과 차별화 필요 263
- 2. 논 이용 발농업 안정생산 기술 개발 사업의 연구 대상 작물의 적정성 검토 필요 267
- 3. 기술자문위원 운영 사업의 농업기술상담 사업과 차별화 필요 271
- 4.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자종합처리센터 운영 방안 내실화 필요 276
- 5. Golden Seed 프로젝트의 식량종자사업단 성과 저조 문제 280
- 6. 농축산물수출확대장애요인해소기술 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에 부합하는 사업 설계 필요 283
- 7.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핵심기반기술 개발 사업의 협약 계획 구체화 필요 286



[산림청]

I. 예산안 개요 / 293

- 1. 현 황 293
-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297
- 3. 예산안 주요 특징 299

II. 개별 사업 분석 / 300

- 1.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운영 효율성 제고방안 필요 300
- 2.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의 위탁운영 및 유아숲지도사 자격 관리 철저 304
- 3.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의 지자체 실집행률 제고 필요 등 307
- 4. 임업인경영자금지원의 조속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311
- 5.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사업은 예산편성지침에 적합한 사업비의 편성·집행 필요 313
- 6. 국제산림협력 사업의 해외산림인턴 지원 사업방식 개선 필요 316

[해양경찰청]

I. 예산안 개요 / 321

- 1. 현 황 321
-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322
- 3. 예산안 주요 특징 323



CONTENTS

II. 개별 사업 분석 / 324

- 1. 항공기도입 사업의 통합적인 대체도입 등 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 324
- 2. 통신위성장비관리 사업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예산규모 검토 필요 327
- 3. 재료비 비목 편성의 적정성 검토 331



농림축산식품부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5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7개 기금(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구성된다.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4,444,363	5,222,561	5,222,561	4,951,108	△271,453	△5.2
- 일반회계	8,195	20,375	20,375	20,392	17	0.1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3,876,068	4,539,289	4,539,289	4,397,959	△141,330	△3.1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30,362	42,925	42,925	42,925	0	0
- 지역발전특별회계	22,195	15,729	15,729	18,854	3,125	19.9
-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9,461	9,100	9,100	9,000	△100	△1.1
- 양곡관리특별회계	498,081	595,143	595,143	461,978	△133,165	△22.4
기 금	5,739,243	5,116,505	5,116,505	4,633,893	△482,612	△9.4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125,408	2,588,250	2,588,250	2,055,242	△533,008	△20.6
- 농지관리기금	2,224,240	1,061,913	1,061,913	1,241,467	179,554	16.9
- 축산발전기금	1,073,822	1,030,605	1,030,605	871,127	△159,478	△15.5
-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기금	2,027	55,255	55,255	45	△55,210	△99.9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283,916	342,034	342,034	302,805	△39,229	△11.5
-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29,102	38,161	38,161	162,920	124,759	326.9
- 양곡증권정리기금	728	287	287	287	0	0
합 계	10,183,606	10,339,066	10,339,066	9,585,001	△754,065	△7.3

주: 총수입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수입은 9조 5,850억원으로 전년 대비 7,541억원 (7.3%)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04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조 3,980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29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89억원,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90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4,620억원이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조 552억원, 농지관리기금 1조 2,415억원, 축산발전기금 8,711억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0.5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028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629억원, 양곡증권정리기금 3억원 이다.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8,510,975	8,076,204	8,191,191	8,277,292	86,101	1.1
- 일반회계	529,027	573,442	574,412	631,366	56,954	9.9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4,773,630	4,643,072	4,757,489	4,764,127	6,638	0.1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51,109	53,002	53,002	45,318	△7,684	△14.5
- 지역발전특별회계	1,734,925	1,419,889	1,419,889	1,343,445	△76,444	△5.4
-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7,957	0	0	0	0	0
- 양곡관리특별회계	1,414,327	1,386,399	1,386,399	1,493,036	106,637	7.7
기 금	5,289,266	6,412,502	6,494,092	6,216,690	△277,402	△4.3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986,817	2,234,073	2,234,073	2,092,275	△141,798	△6.3
- 농지관리기금	893,714	1,066,923	1,066,923	1,061,174	△5,749	△0.5
- 축산발전기금	1,010,835	984,262	1,017,015	925,824	△91,191	△9.0
-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기금	733,778	1,497,950	1,497,950	1,510,747	12,797	0.9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648,521	623,637	623,637	616,066	△7,571	△1.2
-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15,600	5,657	54,494	10,604	△43,890	△80.5
- 양곡증권정리기금	0	0	0	0	0	0
합 계	13,800,241	14,488,706	14,685,283	14,493,982	△191,301	△1.3

주: 총지출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은 14조 4,9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13억원 (1.3%)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70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조 7,641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53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조 3,434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1조 4,930억원이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2조 923억원, 농지관리기금 1조 612억원, 축산발전기금 9,258억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1조 5,107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161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06억원이다.

나. 세입·세출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로 구성되며, 11조 2,846억원으로 전년 대비 5,250억원(4.4%)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는 2017년 204억원에서 17백만원(0.1%) 증가하였으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2017년 10조 2,837억원에서 2018년 9조 6,004억원으로 6,833억원 (6.6%) 감소하였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429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157억원에서 189억원으로 31억원(19.9%) 증가하였으며,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91억원에서 90억원으로 1억원(1.1%) 감소하였다. 양곡관리특별회계는 1조 4,378억원에서 1조 5,930억원으로 1,552억원(10.8%) 증가하였다.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 일반회계	8,195	20,375	20,375	20,392	17	0.1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0,268,669	10,169,172	10,283,704	9,600,434	△683,270	△6.6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30,362	42,925	42,925	42,925	0	0
- 지역발전특별회계	22,195	15,729	15,729	18,854	3,125	19.9
-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9,461	9,100	9,100	9,000	△100	△1.1
- 양곡관리특별회계	1,413,623	1,437,799	1,437,799	1,593,036	155,237	10.8
합 계	11,752,505	11,695,100	11,809,632	11,284,641	△524,991	△4.4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17조 5,862억원으로 2017년 17조 6,757억원 대비 6,543억원(3.7%)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17년 5조 6,695억원 대비 4,987억원(8.8%) 증가하였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9조 959억원에서 8조 4,362억원으로 6,597억원(7.3%) 감소하였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530억원에서 453억원으로 77억원(14.5%) 감소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는 1조 4,199억원에서 1조 3,434억원으로 764억원(5.4%) 감소하였다. 양곡관리특별회계는 1조 4,374억원에서 1조 5,930억원으로 1,556억원(10.8%) 증가하였다.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 일반회계	5,925,373	4,981,454	5,669,529	6,168,189	498,660	8.8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8,560,219	8,985,877	9,095,909	8,436,173	△659,736	△7.3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51,109	53,002	53,002	45,318	△7,684	△14.5
- 지역발전특별회계	1,734,925	1,419,889	1,419,889	1,343,445	△76,444	△5.4
-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7,957	0	0	0	0	0
- 양곡관리특별회계	1,414,327	1,437,399	1,437,399	1,593,036	155,637	10.8
합 계	17,693,910	16,877,621	17,675,728	17,586,161	654,297	3.7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7개 기금의 수입계획안은 9조 4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398억원(12.9%) 감소하였다. 주요 기금별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2조 8,850억원에서 2조 3,739억원으로 17.7% 감소하였고, 농지관리기금은 2조 703억원에서 2조 5,798억원으로 24.6% 증가하였다. 축산발전기금은 1조 1,660억원에서 1조 529억원으로 9.7% 감소하였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은 1조 5,545억원에서 1조 5,120억원으로 2.7% 감소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은 6,974억원에서 6,814억원으로 2.3% 감소하였으며,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2,271억원에서 3,305억원으로 45.6% 증가하였고, 양곡증권정리기금은 1조 7,808억원에서 5,108억원으로 71.3% 감소하였다.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470,525	2,885,008	2,885,008	2,373,927	△511,081	△17.7
- 농지관리기금	3,267,109	2,070,263	2,070,263	2,579,759	509,496	24.6
- 축산발전기금	1,364,235	1,166,039	1,166,039	1,052,904	△113,135	△9.7
-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기금	793,888	1,554,480	1,554,480	1,511,960	△42,520	△2.7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705,545	697,382	697,382	681,444	△15,938	△2.3
-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192,762	227,055	227,055	330,481	103,426	45.6
- 양곡증권정리기금	1,017,963	1,780,842	1,780,842	510,777	△1,270,065	△71.3
합 계	9,812,027	10,381,069	10,381,069	9,041,252	△1,339,817	△12.9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7개 기금의 지출계획안은 9조 4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398억원(12.9%) 감소하였고, 기금별 지출계획안은 기금 수입계획안과 동일하다.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469,734	2,885,008	2,885,008	2,373,927	△511,081	△17.7
- 농지관리기금	2,572,478	2,070,263	2,070,263	2,579,759	509,496	24.6
- 축산발전기금	1,364,235	1,166,039	1,166,039	1,052,904	△113,135	△9.7
-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기금	793,888	1,554,480	1,554,480	1,511,960	△42,520	△2.7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703,083	697,382	697,382	681,444	△15,938	△2.3
-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192,762	227,055	227,055	330,481	103,426	45.6
- 양곡증권정리기금	1,017,963	1,780,842	1,780,842	510,777	△1,270,065	△71.3
합 계	9,114,143	10,381,069	10,381,069	9,041,252	△1,339,817	△12.9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라.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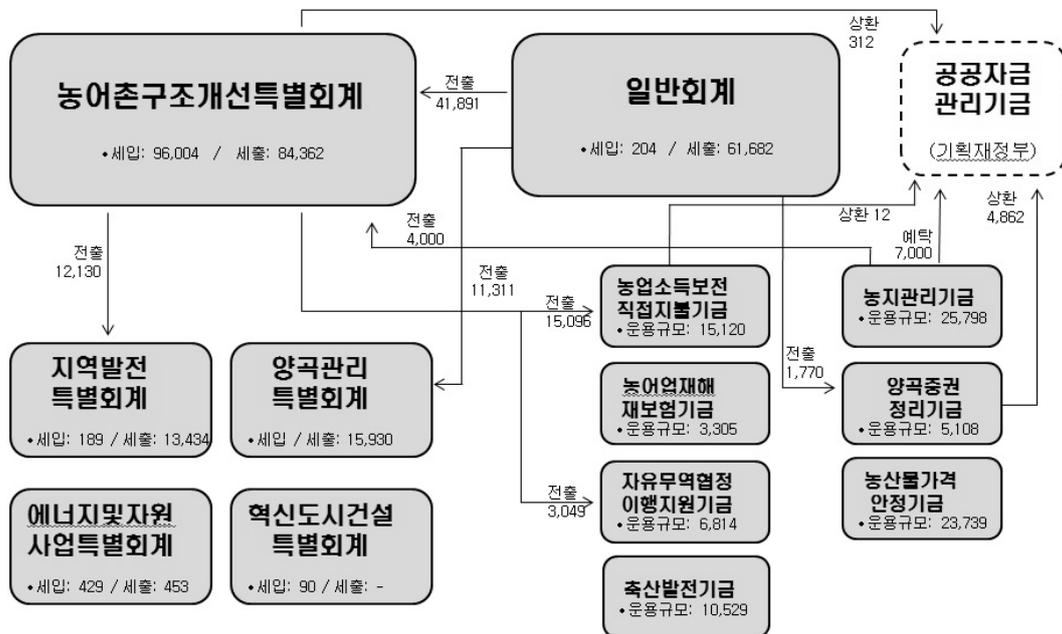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4조 1,891억원이 전출되었고, 양곡관리특별회계로 1조 1,311억원,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1,770억원이 전출되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1조 2,130억원이 전출되었으며, 농업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으로는 1조 5,096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는 3,049억원이 전출되었다. 또한 농지관리기금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4,000억원이 전출되었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312억원이 전출되었다.

기금 간 거래를 보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농지관리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각각 12억원, 7,000억원, 4,862억원이 전출되었다.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총 20개 사업, 2,324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은 방역정책국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신규반영액이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 중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은 쌀 수급 및 가격안정과 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며,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농촌형교통모델 사업은 교통취약 농촌지역에 버스·택시 등을 활용한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고, 소규모 도계장설치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살아있는 닭의 판매점 등 거점단위 소규모 도계장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예산안
일반회계 (2개)	(총액)기본경비(방역정책국)	58
	기본경비(방역정책국)	28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3개)	농촌기반기술연구(R&D)	1,527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	528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지원	50,962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9,060
	농촌고용인력지원	2,400
	논타작물재배지원	136,829
	지역단위 푸드플랜구축지원	350
	농식품마우처지원	500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964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3,043
	농축산물 안전 생산·유통관리기술개발	3,417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시범사업	500
	노지채소스마트팜보급사업	1,100
지역발전특별회계 (1개)	농촌형교통모델(생활)	4,10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개)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2,685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1개)	직불제이행점검	12,197
축산발전기금 (2개)	소규모 도계장설치지원	1,040
	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제고	860
합 계		232,40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국제농업협력(ODA) ② 정부양곡관리비 ③ 농지연금(융자)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은 기획협력사업 규모 증가 및 공동 협력사업기구 증가로 인하여 증액되었으며, 정부양곡관리비 사업은 양곡 재고증가에 따른 보관료, 가공료 및 운송료 등 관리비 증가에 따라 증액되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은 동물보호센터 사업지원,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재구축,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 등 동물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지원규모 확대에 증액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2017		2018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개)	국제농업협력(ODA)	17,253	17,253	65,133	47,880	277.5
	청사시설지원(종자원)	486	563	917	431	76.6
	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 관리기술개발사업(R&D)	400	400	1,800	1,400	350.0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12개)	농업정책자금관리	2,760	2,760	6,577	3,817	138.3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1,731	1,731	2,491	760	43.9
	기후변화실태조사	400	400	833	433	108.3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3,500	3,500	10,500	7,000	200.0
	농기자재수출활성화	617	617	973	356	57.7
	동물보호및복지대책	2,419	2,419	6,464	4,045	167.2
	동물용의약품산업융합지원(융자)	7,883	7,883	21,403	13,520	171.5
	시설현대화및품질관리(종자원)	9,396	9,396	25,543	16,147	171.8
	농업정보이용활성화(정보화)	3,955	3,955	5,826	1,871	47.3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R&D)	7,724	7,724	13,347	5,623	72.8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5,314	5,314	8,614	3,300	62.1
	농업자금이차보전	210,519	210,941	221,562	11,043	5.2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2017		2018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역발전 특별회계 (1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세종)	795	795	2,800	2,005	252.2
양곡관리 특별회계 (3개)	수입양곡대	357,026	357,026	386,905	29,879	8.4
	정부양곡매입비	763,677	763,677	782,811	19,134	2.5
	정부양곡관리비	247,796	247,796	306,434	58,638	23.7
농지관리 기금(2개)	농지연금(용자)	66,300	66,300	92,314	26,014	39.2
	맞춤형농지지원(용자)	334,300	334,300	378,300	44,000	13.2
축산발전 기금(2개)	기타경비(축발기금)	464	464	715	251	54.1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763	763	3,647	2,884	378.0
자유무역 협정이행 지원기금 (2개)	관세할당물량수입관리비	133	133	173	40	30.1
	축사시설현대화	27,984	27,984	45,990	18,006	64.3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4개)	기타경비(농안기금)	455	455	631	176	38.7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10,000	10,000	16,819	6,819	68.2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용자)	8,245	8,245	12,587	4,342	52.7
	도매유통활성화지원	650	650	990	340	52.3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2개)	기타경비(재보험기금)	149	149	204	55	36.9
	재보험금	5,000	5,000	10,000	5,000	100.0
합계		2,098,094	2,098,593	2,433,303	335,209	16.0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 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로, 2018년도 예산안은 ①농업인의 소득 안전망 확충, ②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③복지 농촌 조성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총지출 기준 예산은 14조 4,940억 원으로 2017년 대비 0.04% 증가하였다.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농림축산식품부 총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쌀 산업을 살펴보면, 쌀소득보전변동직불 사업의 경우 최근 산지쌀값의 추세를 반영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논에 타작물의 재배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8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은 2003~2005년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과 유사한 쌀 생산조정제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으며, 2011~2013년에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도 추진한 바 있으므로, 과거 유사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 영농정착지원 등 농업·농촌 분야에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은 철저한 사업 계획의 마련이 요구된다. 우선,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청년 농업인을 수도작 이외의 작물로 유입할 필요가 있으며,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사업과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은 벤처기업 및 농업법인에게 젊은 인력을 고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창업이나 영농을 위한 현장 경험 제공이라는 사업 취지와 다르게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청년 인력 지원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계획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의 내역사업인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은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2년차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 계획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 실적을 반영한 적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II

주요 현안 분석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사업을 쌀 산업, 원예·특작, 축산, 식품 등 4개 품목으로 나누어 보면, 2018년 예산안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총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쌀 산업(43.3%)이며 원예·특용작물(13.2%), 축산(9.5%), 식품(4.6%)의 순서로 나타난다. 2018년 예산안은 6조 2,700억원을 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2011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쌀값의 하락으로 인한 변동직불금의 지급 등으로 2017년 43.5%를 차지하였고, 2018년은 43.3%로 다소 감소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품목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안)
농림축산식품부 총지출	135,268	136,371	140,431	143,681	144,887	144,940
쌀 산업	48,503 (35.9)	48,629 (35.7)	53,060 (37.8)	58,500 (40.7)	63,059 (43.5)	62,700 (43.3)
원예·특작	23,882 (17.7)	21,539 (15.8)	21,555 (15.3)	19,762 (13.8)	19,909 (13.7)	19,159 (13.2)
축산	13,899 (10.3)	15,159 (11.1)	14,589 (10.4)	14,701 (10.2)	13,840 (9.6)	13,824 (9.5)
식품	7,339 (5.4)	7,723 (5.7)	8,401 (6.0)	8,208 (5.7)	7,478 (5.2)	6,731 (4.6)
기타	41,645 (30.8)	43,321 (31.8)	42,826 (30.5)	42,509 (29.6)	181,326 (125.1)	42,527 (29.3)

주: 푸드서비스 선진화 등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된 예산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벼 재배면적은 택지개발, 밭작물 재배 전환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은 작황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에는 전년대비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420만톤에 이른다.

반면, 소비량은 먹거리의 다양화,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6년의 경우 61.9kg(하루 평균 169.6g)로 하락하고 있어, 밥 한 공기를 100g으로 보았을 때, 국민 1인당 하루 소비량이 두 공기가 안되는 상황이다.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의 추이]

(단위: 만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재배면적 (천ha)	936	924	892	854	849	833	816	799	779
공급량	579	622	622	564	529	531	555	597	638
생산량	484	492	430	422	401	423	424	433	420
전년 이월량	69	99	151	105	76	80	87	135	175
수입물량	26	31	41	37	52	28	44	29	43
전체 쌀 수요량	479	471	517	488	450	444	420	422	456
1인당 소비량 (kg)	75.8	74.0	72.8	71.2	69.8	67.2	65.1	62.9	61.9

주: 1. 쌀 수요량은 식량, 가공용, 종자, 감모 등 수요 총량을 말하며, 공급량은 생산량과 전년 이월량을 포함

2. 쌀 수입량은 연분(annual quota)을 말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1.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의 과거 유사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가. 현황

논타작물재배지원(생산조정제) 사업¹⁾은 쌀의 공급과잉을 해소하여 쌀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논에 타작물의 재배를 유도하여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은 1,368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논타작물재배지원	0	0	0	136,829	136,829	순증
소득보전	0	0	0	136,000	136,000	순증
행정비용(이행점검)	0	0	0	829	829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을 통해 논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가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340만원을 지급²⁾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진흥³⁾ 및 비진흥지역⁴⁾을 모두 포함한다. 동 사업의 계획 물량은 5만ha이며, 사업비는 국비 80%와 지방비 20%로 구성된다.

남 회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특회계 2131-310

2) 논타작물재배지원의 지원 단가는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 중으로, 품목별로 소득차 차등 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

3) 「농지법」에 따라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4)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을 의미한다.

나. 분석의견

첫째, 과거의 유사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미 2003~2005년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한 경험이 있으며, 2011~2013년에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2003~2005년 시행한 쌀 생산조정제의 경우 2003년 26,400ha, 2004년 24,600천ha, 2005년 23,400ha에 시행되었는데, 농업 비진흥지역, 저위생산⁵⁾ 논을 대상으로 휴경을 하거나 상업적 재배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ha당 300만원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되었던 쌀 생산조정제는 당초 3년간 총 8만 2,500ha의 벼 재배면적을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7만 4,400ha로 당초 계획 대비 달성률은 90.2%였다.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약정 미이행 농가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⁶⁾

2011~2013년 시행한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논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는데, 타작물을 재배(휴경한 경우에는 미지급)할 경우 ha당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동 사업은 2011~2012년 매년 4만ha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1년에는 3만 7000ha를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된 것과 달리, 2012년에는 재배면적 감소, 연이은 기상재해에 따른 쌀 생산량 감소 등에 따라 쌀값이 상승하여, 타작물 재배 유인이 낮아짐에 따라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7,500ha 수준으로 사업 실적이 저조하였고, 이로 인해 2013년의 경우에는 사업 계획을 축소하여 1만3,800ha를 목표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7,800ha를 감소시키는데 불과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신규로 시행 예정인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행방법(대상농가, 농지 등), 기반정비 및 시설·장비 지원 방안 등을 검토 중이므로, 과거의 유사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논타작물재배지원에 대한 사업 계획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⁷⁾

5) 농작물의 생산에 있어서 평균수확량 보다 적거나 또는 현재의 생산량 이상으로 증산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또는 지대를 말한다.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향」, 2005.11

7)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과거 유사정책을 참고하여 타작물 재배시 생산 증가에 따른 수급불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쌀 생산조정제, 논소득기반다양화, 논 타작물 재배지원]

구분	쌀 생산조정제 (2003~2005년)	논소득기반다양화 (2011~201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2018안)
사업실적	(2003) 26.4천ha (2004) 24.6천ha (2005) 23.4천ha	(2011) 37천ha (2012) 7.5천ha (2013) 7.8천ha	2018년 50천ha 내외
지원단가	300만원/ha	300만원/ha	평균 340만원/ha
대상지역	비진흥지역 저위생산 논	진흥지역 논 쌀소득 보전 변동직불 금 대상 농지	진흥·비진흥지역 논 모두 포함 2017년산 변동직불금 대 상 농지
대상작물	상업적 대체작물 재배 (휴경 포함)	타작물 재배 (휴경 미포함)	하계조사료(2.5만ha) 및 조사료 이외 작물(2.5만ha)

주: 저위생산 논이란 벼의 생산성이 낮은 논을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둘째,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을 통해 논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특정 작물에 집중되지 않도록 품목별 배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은 2년간 한시적으로 편성되었으며, 동 사업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계속 추진 여부를 재검토 할 계획이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1,368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은 직불금을 포함할 경우, ha당 연간 641만원의 소득을 창출하는 반면, 사료용 피는 119만원, 사료용 옥수수 277만원, 콩 586만원 등에 불과하므로, 340만원의 논타작물재배지원금이 벼의 수익성과 작업편리성⁸⁾을 상쇄할만한 수준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8) 벼의 기계화율은 98%에 이른다.

[2018년도 논타작물재배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만원/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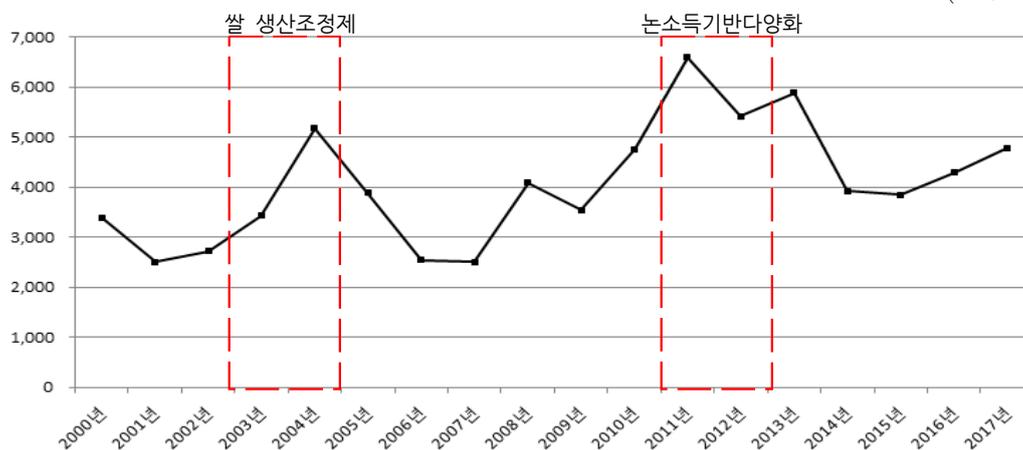
	직불금		논타작물 재배지원	농작물 판매수익	합계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타작물 재배	100	0	340	α	$440 + \alpha$
벼 재배	100	211	0	β	$311 + \beta$

주. 변동직불금 211만원은 2017년 지급 가격으로, 산지쌀값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대체 작물 중 논콩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작하는 농가가 논콩의 재배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을 통해 벼 이외의 품목으로의 전작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지만, 품목별 배분 계획 및 차등 지원 방안 등은 아직 검토 중인 단계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 바, 면밀한 사업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⁹⁾ 실제 국산 콩의 가격 변화를 보면, 쌀 생산조정제와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⁹⁾ 실제 국산 콩의 가격 변화를 보면, 쌀 생산조정제와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⁹⁾ 실제 국산 콩의 가격 변화를 보면, 쌀 생산조정제와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⁹⁾

[kg 당 국산 콩 가격의 변화]

(단위: 원)



주: 1. 국산 콩(백태)의 상품, 중품 가격의 평균 가격
 2. 2017년 가격은 9월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9) 농림축산식품부는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을 통해 조사료를 중심으로 전작을 추진하되 지역별 특화작목 등을 고려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실제 품목에 대한 배분 계획이나 유인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1-2. 쌀소득보전변동직불 사업의 적정 예산 반영 필요

가. 현황

쌀소득보전변동직불 사업¹⁾은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계획안은 2017년과 동일한 1조 4,9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쌀소득변동직불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쌀소득변동직불	726,220	1,490,000	1,490,000	1,490,000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공급 과잉 기조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부터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이하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수령자 중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고 고정직불금으로 미달분의 85%를 충당하지 못할 때 지급한다.

[2018년도 쌀소득변동직불 예산안 산출 근거]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8년 예산안
쌀소득보전변동직불	1,490,000백만원	1,490,000백만원
- 쌀 목표가격	188,000원/80kg	188,000원/80kg
- 수확기 산지 쌀값	130,411원/80kg	130,356원/80kg
- 지급대상면적	715천ha	714천ha
- 고정직불금 단가	15,873원/80kg	15,873원/80kg
- 평균 생산량	63가마/ha	63가마/ha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남 회 예산분석관(nhc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1031-300

나. 분석의견

최근 산지쌀값이 상승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확기 산지 쌀값 및 지급대상면적의 정확한 추계를 토대로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변동직불금에 편성된 예산안은 1조 4,900억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80kg 가마당 지급되는 변동직불금 3만3,124원²⁾에 생산량(63가마)과 지급대상 면적(714,000ha)을 곱하여 2018년 예산안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80kg 당 지급되는 변동직불금 3만3,124원은 수확기 산지 쌀값을 13만356원으로 가정하고 계산된 값인 반면, 최근 산지 쌀값의 추이를 보면 2017년 10월 15일 기준 15만984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인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의 산지 쌀값을 산술평균³⁾한 가격으로 2018년 3월 지급되기 때문에 최근 산지 쌀값의 상승 추세를 감안하면 지급 시점에서의 가격은 예산안에 편성된 가격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산지 쌀값 현황]

(단위: 원/80kg)

일자	08.05	08.15	08.25	09.05	09.15	09.25	10.05	10.15
쌀가격	129,232	130,224	130,976	132,096	132,672	133,348	150,892	150,984

자료: 통계청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변동직불금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2017년 변동직불금 실제 지급 면적(714,000ha)을 적용하여 변동직불금 지급 단가를 추계하였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12~2016년산) 변동직불금 지급면적이 연평균 1.89% 감소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생산 면적의 자연감소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 목표가격(188,000원/80kg) - 수확기산지평균쌀값(130,356원/80kg)×85% - 80kg 가마당 고정직불금(15,873원)

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쌀의 수확기) 법 제2조제4호·제6호,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확기는 해당 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산정) 법 제2조제6호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쌀의 수확기의 월별 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면 쌀 가격의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통계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18년도 쌀소득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면적]

(단위: 천ha)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안	2018년 예산안
지급대상면적	788	786	742	731	730	715	714

주: 예산 지급연도 기준 지급대상 면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따라서 수확기 산지 쌀값 및 지급 면적 등에 대한 면밀한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정 소요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지쌀값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현황]

(단위: 원/80kg, 백만원)

쌀가격	130,000	132,000	134,000	136,000	138,000	140,000
변동직불금	1,503,613	1,427,144	1,350,675	1,274,205	1,197,736	1,121,266
쌀가격	142,000	146,000	148,000	150,000	152,000	154,000
변동직불금	1,044,797	968,328	891,858	815,389	738,919	662,450

주: 1. 지급대상 면적은 714천ha를 가정하고 산출하였음

2. 산지쌀값이 169,326원/80kg이 되면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음

III

개별 사업 분석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사업의 운영방안 마련 필요

가. 현황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사업¹⁾²⁾은 농촌진흥청³⁾ 이전 부지의 일부에 농업역사 문화전시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대비 33억원 증액 된 86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341	5,314	5,314	8,614	3,300	62.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첫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2020년 완공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유물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와 유물의 보관을 위한 임차료를 편성하였으므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2020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예산안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비치할 유물 수집을 위한 자

남 회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231-427
- 2) 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사업규모: 건물(신축 1동, 리모델링 1동, 연면적 18,000㎡), 부지 96,000㎡
총사업비: 1,572억원
- 3) 경기도 수원시에서 전라북도 전주시로 이전하였다.

산취득비⁴⁾ 4억 5,000만원과 이를 보관하기 위한 임차료 1억원⁵⁾이 편성되었다. 또한 2017년에는 학예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2018년 1명의 추가 인력을 6개월간 고용하기 위하여 인건비⁶⁾를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즉, 개관까지 3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최소 2020년에 이르러서야 비치될 유물 등을 수집할 인력 및 유물 취득을 위한 예산과 보관을 위한 임차료가 편성된 상황이다.

[2018년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사업 예산안 비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2016		2017 (8월 30일 기준)		2018 예산안
	본예산	결산	본예산	집행액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1,000	341	5,314	130	8,614
상용임금	0	0	75	43	139
임차료	0	0	0	0	183
고용부담금	0	0	13	5	17
자산취득비	0	0	0	0	4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의역사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관 3년 전 유물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유사한 기관의 선례를 참조하여 개관연도 3년 전부터는 유물 수집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8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사업을 통해 확보할 유물이 임시 수장고에 저장될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임차료가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이 확정(2017.8)됨에 따라 건축설계 업체와 기본 및 실시 설계 계약을 완료(9.1)하였고, 본격적인 설계(9.4)에 착수하여, 2010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이다. 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기본설계 5~6

- 4)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유물수집비를 140억 3,600만원(70% 구입, 30% 기증)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 5) 예산안에 편성된 임차료는 1억 8,300만원으로, 공사 현장사무실 임차료 등을 제외한 수장고 임차료는 1억원이다.
- 6) (2017년)2명×4.42백만원×10개월=88백만원(4대보험 13백만원 포함) → (2018년)2명×4.42백만원×1.03(임금인상률 3% 반영)×12월 + 4.42×6월×1명 + 1,700만원(4대보험) = 156백만원

개월, 실시설계 6개월 등 통상 10~12개월이 소요되므로 동 사업의 2017년도 설계비는 선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총사업비 심의 지연으로 당초 계획보다 설계가 지연되는 등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사업이 당초 계획 보다 순연될 가능성이 있어 2020년에 개관이 가능할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농업체험관 건립사업 추진일정(안)]

범례 2017년 9월기준
 2017년 3월기준

추진내용	2017				2018				2019				2020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용역완료																
○ 건축공사																
- 공사발주 및 철거공사																
- 가설공사, 토공사, 기초공사																
- 골조공사																
- 창호 및 내·외부 마감공사																
- 조경공사																
- 공사완료																
○ 건설사업관리(CM)																
- 용역발주																
- 건설사업관리 실시																
- 용역완료																
○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 용역발주																
- 전시설계																
- 제작·설치																
- 용역완료																
○ 유물 조사 및 수집																
- 유물 조사·기증·구입																
- 수장고(임시포함) 운영																
○ 개관 준비																
- 사전운영																
- 개 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둘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유지비용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2015년 12월)에서 제시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비는 연간 45억 1,300만원에 이르지만, 아직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유지비용에 대한 조달 계획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예비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전시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해당하는 박물관이 아닌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기 위하여 농업체험관의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 유지비용 조달계획 등을 구상 중에 있으며,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9~12월)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르면,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을 설립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수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시체험관의 운영 형태와 운영비 및 이의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대학 등 이전기관의 종전부동산 매입을 위하여 발행한 채권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수원시 등 도시개발 인허가 기관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1년 「혁신도시특별법」의 개정으로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으로 농어촌공사가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제126차 국가정책조정회의(2012.9.14)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속 종전부동산(경기도 수원시)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매입이 결정⁹⁾되었다. 이에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1조(설립 협의) ①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협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3.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내역서
4. 조직 및 정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농진청 소속 8개 기관의 중전부동산 전체를 일괄 매입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 매입 현황]

(단위: 억원, m², 동)

구 분		금액	토 지		건물
			필지	면적	
합 계		18,113	259	2,730,469	297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진흥청	2,225	28	165,077	23
	농업과학원	3,150	26	344,035	65
	국립식량과학원	2,058	49	356,821	2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3,819	82	600,020	74
	국립축산과학원	4,963	54	1,043,137	7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림축산검역본부	222	9	20,098	7
	국립종자원	532	6	57,030	6
	한국농수산대학	1,144	5	144,251	28

주: 토지, 건물 외에 수목 등이 있음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이후 2013년에는 수원지역 활용 계획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승인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활용계획상 공원 부지를 수원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이며, 수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양해각서(2013.8.12)에 따라 기부채납 대상용지 중 일부를 무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임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원시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부지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이전기관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권은 1조 9,370억원에 이르며, 기 발행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2017년 채권을 차환 발행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입한 중전부동산을 현상태 매각(51ha),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매각(41ha), 도시개발시설 후 매각(181ha)을 통해 매입부채를 상환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 등 인허가기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도시개발계획의 승인이 지연될 경우 이자 등¹⁰⁾ 자본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입 부채 상황에 차질이 발생할 우

9) 국토해양부 중전부동산기획과 공문 627호, “국가정책조정회의(제126차) 결과 통보, 2012.09.24.

려가 있으므로, 발행한 채권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용도 변경 및 도시개발계획과 관련한 인허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채권 발행 및 상환 현황]

(단위: 억원)

채권명	발행일	상환일	발행금액		상환 여부
제10회	14.06.26	17.06.26	2,600	19,370	상환완료
제12회	15.06.02	18.06.02	5,200		-
제14회	15.12.10	20.12.10	6,100		-
제15회	16.11.17	19.11.15	5,400		-
제16회	17.06.22	22.06.22	1,400		-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10) 공사채와 별도로 기업어음(CP) 70억원을 발행하였다.

가. 현황

축사시설현대화 사업¹⁾은 가축 폐사의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할 목적으로 축사시설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계획안은 2017년 대비 279억 6,400만원 증액된 1,828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축사시설현대화	137,479	154,899	154,899	182,863	27,964	18.1
시설현대화 지원	115,684	121,789	121,789	99,064	△22,725	△18.7
시설현대화사업 관리비	0	0	0	203	203	순증
밀집지역 환경친화 축사 개편	0	0	0	9,000	9,000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첫째,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 따른 관리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상이한 측면이 있다.

내역사업인 시설현대화 사업 관리비는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에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을 위한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가금과 가금 외 축사시설에 대해 용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예산안에서 가금에 대해서는 2%의 금리로 178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금 외 축사시설에 대해 1%의 금리로 용자할 계획으로 812억원을 편성하였다.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의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농협이며, 농협은 가금 관련 농가를 대

남 회 예산분석관(nhc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760-322, 3760-346

상으로 2%의 금리로 용자를 시행하고, 이 중 취급기관 수수료(1.25%)를 제외한 0.75%를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납부하는 반면, 가금류가 아닌 축사 시설에 대해서는 농가에 1%의 금리로 용자하기 때문에 수수료(1.25%)와 0.25%p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로인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류가 아닌 축사 시설에 대하여 시설현대화 사업 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였다.

[2018년도 시설현대화사업 관리비 편성 내역]

○ 시설현대화사업 관리비: (2017년) - → (2018년) 203백만원 - 가금 외 2억 300만원 × 500개소 × 용자 80% × 0.2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시설현대화사업 관리비 편성 현황]

	용자금리	취급수수료		차액 (용자금리-취급수수료)		예산안 편성 현황
가금	2%	1.25%	→	0.75%p	→	지출계획에 계상하지 않음
가금류 외	1%	1.25%	→	△0.25%p	→	시설현대화사업 관리비로 편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러나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 따르면, 용자대행기관을 통한 용자사업은 대출금리에서 용자대행 수수료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하고, 대행수수료는 지출계획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다고 규정²⁾하고 있다. 즉, 시설현대화지원 사업의 수수료는 별도의 지출 과목으로 편성하지 않으며, 기금의 이자 수입을 계획할 때 대출금리에서 대출취급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상해야한다.

2)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17.3, p.71

①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총액 계상

○ 보조금 출연금의 정산잔액, 고정자산매각대, 부담금 징수수수료 등 수입을 철저히 검토하여 모두 수입에 계상

○ 지출과 수입이 연계된 경우, 지출규모를 상계처리 후 순수입액만의 계상은 금지하며, 반드시 총수입액을 계상

- 적용사례: 복권사업의 수입금액, 기금수익사업의 수입금액 등

- 총액계상원칙의 예외: 용자대행기관을 통한 용자사업

* 대출금리에서 용자대행 수수료율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하고, 대행수수료는 지출계획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

이에 대해 정부는 총액계상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은 대출 금리에서 취급수수료를 충당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충당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지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가금 및 가금류 외를 모두 고려한 용자수익은 15억 9,660만원인 반면, 이로 인한 취급수수료는 15억 4,790만원으로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가금류 외의 축사시설현대화에 대한 대출금리가 1%에 불과하여 취급수수료(1.25%) 보다 낮은 수준이더라도 부족분을 제외하고 원금을 회수하는 방안, 타 용자수입이 있을 경우 상계하여 처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설현대화사업 용자수익 및 수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용자금리	개소당 지원액	개소수	용자수익		
금리수익	가금	2	203	110	→ 446.6	→	1,596.6
	가금류 외	1	203	500	→ 1,150	→	
		용자금리	개소당 지원액	개소수	수수료		
취급수수료		1.25	203	610	1,547.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

둘째,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 따른 내역사업인 시설현대화 사업 관리비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과 달리 용자의 집행실적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편성되어 있으므로 지급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재원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57호) 제23조3)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 관련 사업의 수

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57호)

제23조(기금대출취급기관의 수수료) ①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수수료는 전년도말 대여잔액과 해당연도 대여액을 지급대상으로 하여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지급하되, 전년도말 대여잔액에 대하여는 지급월에 상환약정된 대여금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연도 대여금에 대하여는 지급월의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④제1항 이외의 용자사업의 시행에 따르는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수수료는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되, 해당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수료는 전년도말 대여잔액과 해당연도 대여액을 지급대상으로 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르면 해당연도의 실제 대여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설계된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예산안은 예산액에 기반하여 농협에 사업관리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편성되어 있어 용자의 집행실적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용자가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성은 낮으므로, 집행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지급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축사의 이전에 대해 8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밀집지역 환경 친화 축사 개편 사업의 보조금이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내역사업인 밀집지역 환경친화 축사 개편 사업은 밀집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이전에 필요한 시설비, 건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개 농가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최대 45억원으로, 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를 지원 조건으로 최대 5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⁴⁾할 계획이다.

2018년 새롭게 추진되는 동 내역사업은 가금 밀집 지역에 AI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방역 관련 개선대책과 함께 밀집 지역을 개편하여 방역 취약지역⁵⁾ 밖으로 축사의 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재정지원 효과가 특정 농업경영체의 자산이 된다는 점에서 농가 등이 소유한 축사의 이전에 대해 80%의 보조금(국비 40%, 지방비 40%) 지원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로, 원예시설현대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은 일반원예시설을 첨단 시설로 현대화하기 위하여 보조 20%와 용자 30%를 지원하며,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축사시설의 개보수와 신축에 대하여 가금의 경우 보조 30%와 용자 50%를 지원하고 가금이 아닌 경우에는 용자만 80% 지원한다. 특히 동 내역사업은 향후 보조율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용자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밀집지역 환경친화 축사 개편 사업은 다음의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가 미미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우선 밀집지역과 非밀집지역을 구분하는 기준⁶⁾이 명확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사업 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

4) 2018년 예산안 90억원 = 45억원×5호×국비 보조율40%

5) 가금 농가간 거리 500m 이내, 철새도래지 3km 이내 등을 말한다.

며, 지원 농가가 연간 5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방역 효과가 높지 않을 우려가 있다.⁷⁾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이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이고, AI 등이 철새 등에 의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주 지원 정책의 효과가 미미할 우려도 있다. 이밖에 非밀집지역에서의 신규 축사 건립이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해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밀집지역 환경 친화 축사 개편의 지원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정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6)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집지역과 관련하여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반경 1km 이내 20호 이상, AI중점방역관리지구, 철새도래지 10km 이내인 농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7)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5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을 토대로 밀집사육지역 개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가. 현황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¹⁾은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협의 인력중개센터 내에 영농작업반을 운영하여 전문화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은 24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촌고용인력지원	0	0	0	2,400	2,400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의 주관기관은 농협중앙회이며,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50개소²⁾의 영농작업반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구축된 인력풀 내에서 농가의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중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전담인력의 인건비와 영농작업반 운영비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농촌에서 일할 근로자와 자원봉사자의 출퇴근 수단도 지원하여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남 회 예산분석관(nhc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36-333

2) 농협 영농작업반 50개소 운영 지원: 23억 8,000만원(개소당 6,800만원×50개소×민간보조 70%)
담당자 워크숍 비용: 2,000만원

[2018년도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 개소당 예산안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합 계	68	
전담인력	24	○ 사무업무: 200만원×12개월
교통지원	30	○ 차량임차: 1인당 5,000원×60일×100명
교육비	6	○ 농가현장실습교육: 100명×2만원×3일
광고홍보비	4	○ 지역신문, 케이블방송, 현수막제작 등
기타운영비	4	○ 간담회 비용, 사무비품, 공공요금, 출장비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농협이 2013년부터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시행 주체인 농협과 협의를 통해 현재 지원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협중앙회는 자체사업으로 2013년 9월부터 158개 시군농정지원단에 농촌인력증개센터를 설치하여 농촌 지역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4월에는 농협중앙회에 국한된 인력증개 업무를 지역농협까지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력증개센터 내 영농작업반³⁾을 시범 운영(전국 15개소)하였다. 이후 농협중앙회는 2017년 영농작업반 시범지역을 38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인력증개 관련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농촌인력 참여자의 접근성 강화하고, 교통비 등의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농협이 증개한 인력은 2016년 연간 507,179명에 이른다.

[농협 농촌인력증개센터 인력 지원 실적]

(단위: 명/연인원)

구 분	유 상	무 상	합 계
2015년	254,133	143,528	397,661
2016년	356,781	150,398	507,179
2017년 8월 현재	233,570	114,456	348,02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 총 200명 규모로 상시적 영농작업반 인력 POOL 구성(1개반별 20명)

따라서 농협 및 지자체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을 시행주체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농협이 2013년부터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시행 주체인 농협과 체계적인 협의를 통해 현재 지원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을 효율화 할 필요가 있다.

[농협 영농작업반 운영 사무소 현황]

(단위: 백만원)

순번	지역	시군	사무소	지원예산 구분	지원예산			
					지자체	농협	합계	
1	강원	철원군	김화농협	농협인력증개예산	0	35	35	
2	전북	완주군	고산농협	농협인력증개예산	0	40	40	
3		전주시	전주원예농협	농협인력증개예산	0	40	40	
4		무주군	무주군지부	지자체협력사업	35	35	70	
5		장수군	장수농협	농협인력증개예산	0	35	35	
6	전남	강진군	강진농협	지자체협력사업	35	35	70	
7		고흥군	풍양농협	지자체협력사업	35	35	70	
8			팔영농협	농협인력증개예산	0	35	35	
9			광양시	다압농협	지자체협력사업	35	35	70
10		곡성군	옥과농협	농협인력증개예산	0	35	35	
11		목포시	북신안농협	지자체협력사업	35	35	70	
12			안시군	압해농협	지자체협력사업	35	35	70
13			신안농협	지자체협력사업	35	35	70	
14		무안군	무안농협	지자체협력사업	35	35	70	
15		순천시	순천농협	지자체협력사업	35	35	70	
16			여수시	여천농협	지자체협력사업	35	35	70
17			영광군	굴비골농협	지자체협력사업	35	35	70
18				삼호농협	지자체협력사업	35	35	70
19				영암군	영암낭주농협	지자체협력사업	35	35
20			신복농협		지자체협력사업	35	35	70
21			영암농협		지자체협력사업	35	35	70
22			완도군		청산농협	지자체협력사업	35	35
23			장성군	장성농협	지자체협력사업	35	35	70
24				삼서농협	지자체협력사업	35	35	70
25		장흥군	천관농협	지자체협력사업	35	35	70	
26		진도군	서진도농협	지자체협력사업	35	35	70	
27		함평군	함평농협	지자체협력사업	35	35	70	
28		해남군	황산농협	지자체협력사업	35	35	70	
29		경북	영덕군	영덕군지부	지자체협력사업	35	35	70
30			경산시	압량농협	농협인력증개예산	0	35	35
31				자인농협	농협인력증개예산	0	35	35
32			포항시	서포항농협	농협인력증개예산	0	40	40
33			청송군	청송농협	농협인력증개예산	0	40	40
34	경남	하동군	지리산청학농협	지자체협력사업	35	35	70	
35		합천군	합천호농협	지자체협력사업	35	35	70	
36		합양군	합양농협	농협인력증개예산	0	40	40	
합계					875	1,285	2,160	

주: 2017.8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 사업의 사업계획 내실화 필요

가. 현황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 사업¹⁾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돌봄 서비스와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은 5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	0	0	0	528	528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 서비스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였다. 총 9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의 70%를 국고로 지원한다. 이 중 1억 5,000만원은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일반수용비, 210-01)이며, 3억 7,8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집행될 계획이다.

동 사업의 개소당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이 중 5,000만원으로 사회적 농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1,000만원은 소모임 운영 등을 통해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지원된다.

[2018년도 예산안 산출 내역]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528백만원
 -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315백만원
 - 50백만원 × 9개소 × 70%
 - 지역네트워크 구축 지원: 63백만원
 - 10백만원 × 9개소 × 70%
 -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 구축: 150백만원
 - 프로그램 개발, 현장 연구, 연구 용역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남 회 예산분석관(nhc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135-391

나. 분석의견

사회적 농업의 모델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계획의 내실화를 통한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사회적 농업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닌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 등이 주도적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에게 영농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농업의 한 유형을 말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사회적 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등을 선발할 계획이며, 이들 단체에 강사비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모성 장비 등(개소당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예산 지원으로 해당 단체가 발달장애인 등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도모하고,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고용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추진 주체로 9개 협동조합 등을 선발할 계획인 반면, 2017년 2월 기준 농업 분야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31개에 불과하고, 이들 사회적 협동조합 조차 취약계층 고용률이 140명 중 38명에 불과한 상황이다.²⁾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에 9개소를 선발하여 3,500만원의 사회적 농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농업 분야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수가 31개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회적 농업의 표준 모델이 부재하여 관련 연구 용역 등을 위한 예산안(1억 5,000만원)을 편성한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통해 9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므로, 시행 예정인 연구용역을 토대로 운영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2018년에는 최소한의 규모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관련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개소수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³⁾

2) 또한 동 사업의 시범모델 중 하나인 충남 홍성의 한 농장의 경우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이 운영비 부족 등의 문제로 2017년 중단된 바 있다.

3)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을 구축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로 사업을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사업 추진 주체로 협동조합 등을 선발할 계획이나 다양한 조직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 현황

농업재해보험 사업¹⁾은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및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입감소를 보험 제도로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대비 348억 4,700만원 감액된 2,521억 4,800만원이다.

[2018년도 농업재해보험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업재해보험	281,864	286,995	286,995	252,148	△34,847	△12.1
농작물재해보험	216,869	216,176	216,176	181,874	△34,302	△15.9
가축재해보험	57,556	62,818	62,818	63,425	607	1.0
수입보장보험	3,950	4,649	4,649	5,149	500	10.7
가축질병치료 보험시범사업	0	0	0	1,700	1,700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나. 분석의견

첫째, 품목별 여건을 반영한 보장내용 설계 등을 통해 농업재해보험 및 수입보장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남 회 예산분석관(nhc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1031-30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업재해보험은 가입대상 농산물을 대상으로 재해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6년 사업 대상은 52개(원예시설, 봄감자 포함) 품목이다. 이 중 사과(78.8%)와 배(78.6%)를 제외한 51개 농작물은 대상 면적의 35% 미만이 가입하였고, 느타리버섯(0.7%), 밀(0.3%) 등 11개 품목은 전체 면적의 1% 미만이 가입하였다.

[2016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가입 현황]

(단위: %)

품목	가입률	품목	가입률	품목	가입률	품목	가입률
사과	78.8	밤	8.2	시설오이	3.9	고추	1.2
배	78.6	시설꽃고추	7.9	가을감자	3.8	복분자	1.2
벼	34.6	대추	7.9	시설수박	3.6	느타리버섯	0.7
단감	29	시설딸기	7.8	매실	3.6	시설배추	0.7
시설참외	26.9	시설멜론	7	시설시금치	2.7	시설백합	0.7
뽕은감	23.6	시설국화	5.8	양파	2.7	포도	0.7
시설파프리카	17.2	자두	5.7	시설미나리	2.6	오디	0.4
시설가지	13.8	표고버섯	5.2	마늘	2.6	양배추	0.4
시설장미	13.1	시설부추	5	시설호박	1.7	오미자	0.3
복숭아	12.7	참다래	4.7	시설파	1.6	밀	0.3
시설카네이션	12.6	시설상추	4.3	시설무	1.3	고구마	0.2
원예시설	11.1	시설토마토	4.3	인삼	8.7	감귤	0.1
차	9.3	콩	4.2	옥수수	1.2	봄감자	0
평균							27.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수입보장보험은 품목별 가격 하락, 생산량 감소 등으로 농가의 조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사업으로 2015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17년에는 6개 품목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사업 초기에는 콩·포도·양파 3품목을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2016년에는 마늘, 2017년에는 고구마·가을감자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가입 농가가 가격의 폭락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최근 5년 평균 조수입의 60~90%²⁾를 보장³⁾해 주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운용비를 전액 보장하고, 가입농가의 보험료(국고 50%, 지자체 25~40% 추가지원)를 지원하고 있지만, 2016년 수입보장보험의 가입률은 5.8%에

2) 보장액의 수준은 가입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3) 지급 보험금 = 보장수입(과거 기준수입 × 보장률) - 실제수입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이라는 농작물재해보험과 수입보장보험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농작물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 설계를 통해 품목별 가입률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입보장보험 가입 현황]

(단위: ha, 명, 백만원)

구 분	품목	대상면적(A)	가입면적(B)	순보험료	가입농가	가입률(B/A)
2015	콩	8,964	1,196	1,600	688	13.3%
	포도	5,867	289	3,565	528	4.9%
	양파	6,199	191	622	299	3.1%
	합계	21,030	1,676	5,787	1,515	8.0%
2016	콩	7,113	1,078	1,599	684	15.2%
	포도	4,832	246	2,610	491	5.1%
	양파	9,142	105	734	157	1.2%
	마늘	4,466	58	397	97	1.3%
	합계	25,553	1,487	5,340	1,429	5.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둘째, 가축질병치료보험 사업의 운영비는 보험료와 운영비를 별도로 분리하여 적시할 필요가 있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사업⁴⁾은 2018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사업에 1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한육우와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가축질병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50%를 국고지원하기 위한 비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육우와 젖소의 보험료에 1.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보험료의 10%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 책자의 제작, 보험설명회 개최 등 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업의 관리비로 사용될 계획이다.

4) 농업재해보험의 또 다른 내역사업인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법」에 따른 가축 20종 중 노새, 당나귀, 개, 지렁이를 제외한 16종의 가축에 대해 풍제·수제·설해, 화재, 질병 등의 발생으로 폐사 및 긴급도축 시 피해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인 반면, 가축질병치료보험시범사업은 가축의 폐사나 도축이 아닌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질병에 대한 보험이라는 차이가 있다.

[2018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예산안]

한육우 701백만원: 25,500두 × 50,000원 × 1.1 × 50%

젓소 799백만원: 10,300두 × 141,000원 × 1.1 × 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또 다른 내역사업인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 지원 사업⁵⁾이 별도로 분리되어있으며, 수입보장보험⁶⁾도 보험료와 운영비를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가축질병치료보험 사업도 보험료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계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축질병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있는 농업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⁷⁾에 근거하여 재해보험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신규로 추진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축산법」 제3조⁸⁾를 근거로 하고 있어 구체적인 보험료 지원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험료 지원은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입법적 보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코드: 농특회계 1031-301

6) 지원조건: 보험료 50%, 운영비 100%

7)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해보험별 법적 근거]

구분	지원 비율 (%)	법적근거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40~60%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가축재해보험	영업보험료 50%(보험료+운영비)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수입보장보험	보험료 50%, 운영비 100%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가축질병치료보험	보험료 50%, 실증실험 효과분석 100%	축산법 제3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가. 현황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사업¹⁾은 체계적인 동물보호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대비 40억 4,500만원 증액된 64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1,539	2,419	2,419	6,464	4,045	267.2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300	1,380	1,380	2,920	1,540	111.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역사업인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의 2018년 예산안은 광역 동물보호센터 1개소와 일반 동물보호센터 3개소를 대상으로 편성되었다. 이 중 광역 동물보호센터는 개소당 총 40억원의 예산 중 연차별 지원 비율에 따라 2년차 사업비²⁾를 지원할 계획이며, 일반시에 설치되는 동물보호센터는 단년도 사업으로 개소당 20억원³⁾의 사업비 중 국고 비중은 30%로 총 18억원이 편성되었다. 광역 및 일반 동물보호센터는 법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운영에서 일반은 시군구가 단독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고, 광역은 시도 혹은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시에 설치되는 유기동물보호시설과 광역시에 설치되는 시설은 수용하는 동물의 수⁴⁾에서도 차이가 있다.

남 회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940-338

2) 1년차 사업비 30%, 2년차 사업비 70%로 지원된다.

3) 일반동물보호센터의 총 사업비는 2017년 10억원에서 2018년 2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4) 일반은 유기동물 5000두 이상, 광역은 2,000두 이상을 의미한다.

[2018년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2018			
	개소수	예산	개소수	예산안	증감률	산출근거
일반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3	900	3	1,800	100.0	3개소×20억원×30%
광역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1	480	1	1,120	133.3	1개소×40억원×40%×7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내역사업인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은 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집행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조정하거나 2년차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의 추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은 유기동물보호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한 인근 주민의 반대로 부지 재선정, 새로 선정된 부지에 대한 추가 사업비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2015년 선정된 경기도 성남시는 건립 예정 부지 주변의 민원 발생으로 다른 부지를 모색하였으나, 이후에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업을 포기하였고, 2016년 선정된 전북 전주시는 선정된 부지의 위치로 인한 지역 갈등이 우려되어 후보지를 추가 모색하였으나 부지 확보에 실패하였다.

2017년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전광역시에 설치하려고 했던 광역 동물보호센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⁵⁾이 지연됨에 따라 2017년 10월 현재 실시설계를 수행 중이며, 12억원의 사업비 중 1억 4,000만원 집행된 상황이다. 그러나 2018년 예산안에 2년차 사업비가 전액 편성되어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한 집행 실적 제고가 요구된다.

2017년 예산을 통해 선정된 일반 동물보호센터는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 수원시와 전남 순천시의 경우 지역의 입지 및 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전액 실집행 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30억원의 총 사업비 중 3억 9,700만원만 집행된 상황이다.

5)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이 광역시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의회의 승인 절차를 말한다.

[2017년 동물보호센터 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2017년 예산액		실집행액	집행부진사유
		국비	지방비		
광역	대전광역시	480	720	14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지연
일반	서울특별시	300	700	397	연내 집행 예정
	경기(수원)	300	700	0	당초 건립부지의 경사도 등이 기준치보다 높아 개발행위가 어렵다는 검토결과에 따라 부지 재선정, 시유지와 사유지 토지교환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등의 절차로 실시설계 지연
	전남(순천)	300	700	0	건립 예정 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 착공 지연
합계		1,080	2,120	53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러한 집행 부진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예산안을 증액 편성한 바, 연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4월에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반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할 6개소(강원 춘천, 강원 강릉, 경북 경주, 경북 포항,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요를 확인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동 내역사업이 2015년 이후 부지로 인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요 조사에는 부지 관련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의 사업 신청 접수를 완료한 후 현지조사 등을 통해 부지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부지를 재선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 수립·부지 선정 여부·행정 절차의 이행 여부 등 사전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지자체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년차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적정 규모의 예산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¹⁾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는 농식품 벤처 근무를 희망하는 인턴을 선발하여 인력이 필요한 벤처기업에 매칭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은 3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내역사업은 대학생 등 50명을 고용하여 벤처 기업에 근무하도록 하며, 월 100만원의 임금을 지원함으로써 현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주관한다.

[2018년도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4,960	4,690	4,850	5,880	1,030	21.2
농식품벤처창업인턴제	0	0	0	310	310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활성화 사업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사업²⁾의 내역사업으로, 농업법인취업 지원을 시행할 목적으로 9억 3,0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농업법인취업지원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며, 만 39세 미만의 성인 150명을 선발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법인에 6개월 간 근무하게 할 예정으로, 1인당 1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농업인력의 영농정착을 촉진하고자 한다.

남 회 예산분석관(nhc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232-344

2)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36-331

[2018년도 농업·농촌 교육훈련지원의 내역 사업인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업경영활성화	1,150	1,309	1,309	2,919	1,610	123.0
농업법인취업지원	0	0	0	930	930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 및 농업법인취업지원]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	농업법인취업지원
사업목적	예비 청년창업가들의 현장경험 습득 기회 제공을 통한 벤처창업 지원	선도 농업법인 실무연수를 통한 잠재 농업인력의 영농 정착 동기부여
시행주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예산액	310백만원	930백만원
선발인원	50명	150명
채용대상	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대학(원) 졸업 후 7년 이내 미취업자로서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자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만 18~39세 이하의 미취업자
채용기관	일정 경영규모 이상의 농식품 벤처기업	일정 경영규모 이상의 농업법인
운영비 및 용도	인턴제 참여 기업 및 학생 교육·관리비 10백만원	인턴제 참여 기업 및 학생 교육·관리비 3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창업이나 영농을 위한 현장경험 제공이라는 사업 취지와 달리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청년 인력 지원 사업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계획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는 농식품 벤처기업에 청년 인턴을 근무하게 함으로써 청년창업자에게 현장의 경험을 제공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고, 농업법인취업지원은 미취업자에게 농업법인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영농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의 모델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인턴제 사업³⁾은 청년인턴을 선발하여 벤처창업기업과 매칭하고, 인턴활동비를 지급(월 100만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벤처창업인턴제와 달리 인턴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창업지원금(최대 1억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창업인턴제 사업이 사업화 지원과 연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위한 현장경험 제공보다는 기업 인력 활용 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분석한 바 있다.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와 농업법인취업지원 사업이 모두 벤처기업이나 농업법인에게 젊은 인력을 고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기업의 인력지원 사업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들 사업이 기업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국한되지 않도록 참여 기업에 대한 책임성 강화 조치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사업을 통해 농업법인 및 농식품 벤처법인의 관계자를 해당 법인에 고용하여 사업비를 수령하지 못하도록 선발 및 채용 관련 규정을 면밀하게 설계하고 관련 처벌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업 설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3) 창업사업화 지원의 내역사업이다.

가. 현황

농축산물 안전생산·유통관리기술개발(R&D) 사업¹⁾은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해 성분을 사전에 탐지하고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34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농축산물 안전생산·유통관리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축산물 안전생산·유통 관리기술개발	0	0	0	3,417	3,417	순증
농축산물 위해성분 제 어 기술개발	0	0	0	500	500	순증
농축산물 신뢰성 강화 기술개발	0	0	0	500	500	순증
역매칭 시범사업	0	0	0	2,364	2,364	순증
기획평가관리비	0	0	0	53	53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안전생산·유통관리기술개발(R&D) 사업은 전액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출연된다.

첫 번째 내역사업인 농축산물 위해성분 제어기술개발 사업은 농축산물이 생산 및 유통되는 단계에서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기술개발을 할 계획이며, 두 번째 내역사업인 농축산물 신뢰성 강화 기술개발 사업은 생산 단계 이후의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 및 신뢰성 강화를 목적으로 원산지 판별, 생산이력 인식 기술 등 위·변조를 판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할 예정이다.

남 회 예산분석관(nhc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531-451

[농축산물 위해성분 제어 기술개발 및 농축산물 신뢰성 강화 기술개발 사업 신규 과제 목록]

	우선 순위	신규 과제 목록
농축산물 위해성분 제어 기술개발	1	잔류성 유해요소의 선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유통단계 실시간 검출법 개발
	2	농축산물의 잔류 독성성분 One-Stop 검출장치 및 안전관리 플랫폼 개발
	3	농산물 위해성 평가법 마련을 위한 통합 DB 구축
	4	농축산물 잔류 독성성분 탐지를 위한 후각 방향장치 기술 고도화
	5	농산물 오염 미생물 및 독소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진단 센서 개발
	6	채소류 저장과정에서의 미생물 독소 모니터링 기술 개발
	7	농축산물의 냉동 저장 중 발생하는 식물 유래 독소 신속 분석법개발
농축산물 신뢰성 강화 기술개발	1	친환경 농식품 시장 확대를 위한 시험·분석기술 개발 및 실용화
	2	축산물 원산지 판별을 위한 바이오마커 개발
	3	농축산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이력 및 품질관리 기술개발
	4	식품가공 포장 기자재 활용 생산이력·가공정보 인식기술
	5	IoT 기술 기반 농축산물 인증 및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6	농축산물의 생산지/원산지 투명성을 위한 농업 경영체 DB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세 번째 내역사업은 역매칭 시범사업으로,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방안을 다변화하기 위해 시도하는 사업으로, 23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다. 역매칭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官)와 농협중앙회(民)가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수행할 예정이며, 3년(2018~2020년) 간 총 9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관리할 계획이다.

나. 분석의견

첫째, 내역사업인 역매칭 시범사업은 농축산물 안전생산·유통관리기술개발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과제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물 안전생산·유통관리기술개발 사업은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며, 세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은 내역사업인 농축산

물 위해성분에 대한 연구개발과 농축산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를 각 5 억원씩 편성하였다.

그러나 세번째 내역사업인 역매칭 시범사업은 농가소득과 직결된 농축산물 판매·유통 분야의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세부사업의 목표인 먹거리 안전성과 내역사업의 성격 간의 괴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 역매칭 시범사업은 농축산물 유통·관리 핵심기술 20종을 확보하고 연매출 20억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제품 20개 이상을 개발할 계획으로, 농협경제지주 및 일선조합의 판매·유통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는 파 동결 건조 복원 기술 개발, 절단 된 파프리카 및 수출용 유기농 현미의 유통 기한 연장 기술 등을 수행할 계획인 바, 해당 과제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술 수요조사 및 과제기획단계 등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부과제의 기획 및 구성을 먹거리 안전 및 유통 관리에 집중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역매칭 시범사업 신규 과제 목록]

우선 순위	신규 과제 목록
1	당근 감자 파 블록형 동결건조 해동 복원 기술 개발
2	현장 활용형 엽채류 안전성 검사 키트 개발
3	절단가공 파프리카 유통기간 연장 및 미생물 제어 기술 개발
4	수출용 유기농 현미 제품의 유통기한 연장 기술개발
5	은행 과육 손상 및 유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한 연속 처리 공정 개발
6	산지유통센터 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개발
7	화훼류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친환경 전처리제 개발
8	양곡표시제 도입에 따른 양곡분석기 표준화 및 선진분석시스템 구축
9	신선 채소류 유통에 적합한 전처리→포장 일관작업 시스템 개발
10	복숭아 선도 등 품질 유지를 위한 포장 기술 개발
11	저가형 엽채류 품질유지를 위한 습기제거 포장기술 개발
12	농산물 안전 유통을 위한 골판지 상자 강도 강화 기술 개발
13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도라지 변색 방지 가공·포장 기술개발
14	도매유통 이미지 경매기술 현장 활용기술
15	저장과일 후숙·변형 방지 및 적정 출하시기 판단기술 개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둘째, 역매칭을 통한 연구개발은 사업 구조의 특성상 기업 주도의 기술 및 제품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수의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 선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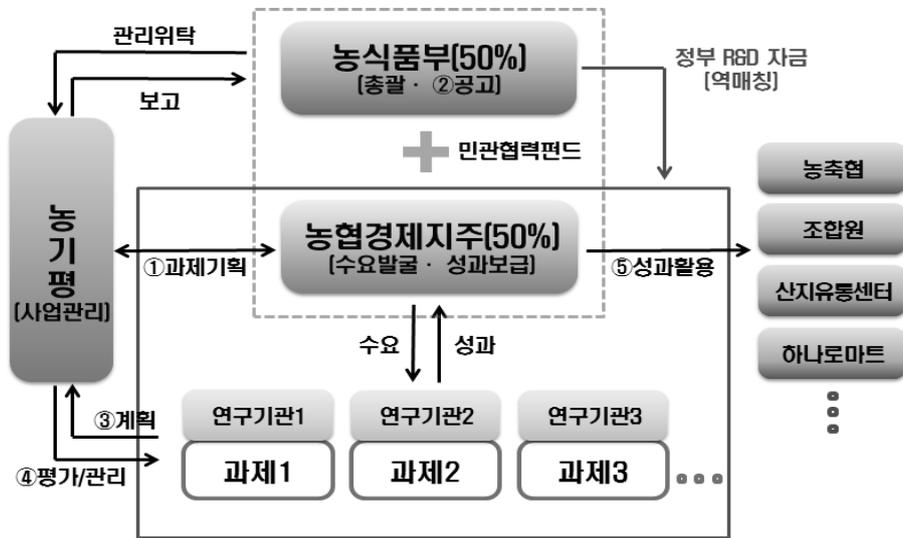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역사업인 역매칭 시범사업을 통해 농협과 공동으로 조성한 펀드를 재원으로 과제를 선발하고 연구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가 적절한 비율로 역매칭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즉, 기존의 연구개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고를 통해 연구기관이 응모를 하면 이를 선정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지만, 역매칭을 통한 연구개발 사업은 연구기관이 응모할 때, 스스로 부담할 부담금을 결정하여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선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화 된 출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식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 등이 개발하고자 제안하는 기술이나 제품을 대상으로 과제를 제시하면, 정부는 해당 기관의 사전 R&D 투자 실적과 정부지원 필요성 등을 토대로 사업성과 기술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및 지원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 추진 체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조성한 펀드를 재원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의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이 선정되기 보다는 재원 조달 기관 및 과제의 사업성에 의해 지원할 연구과제가 선정될 우려가 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는 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한 농협과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성이 높은 연구는 민간의 영역에서 연구개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정부 재정지원은 민간의 투자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²⁾

따라서 역매칭 제도의 사업추진체계를 감안할 때, 기존의 R&D 사업과 차별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므로, 과제 및 연구자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한 지침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다수의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2)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으나, 해소되지 않는 현장애로기술에 대해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민간의 투자를 대체하는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역매칭 제도 사업추진체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가. 현황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사업¹⁾은 거점 단위의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10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소규모 도계장 설치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소규모 도계장 설치지원	0	0	0	1,040	1,040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현재 전체 유통 물량의 36%에 이르는 토종닭, 오리 등은 소규모로 사육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유통되는 가금류는 방역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부터 살아있는 닭의 유통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2018년 계획안에는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1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개소당 3억 4,6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계획안을 편성하였다.²⁾ 국고 및 지방비 등으로 조성된 재원은 도축시설·폐수처리시설 등 건축비에 사용된다.

나. 분석의견

첫째, 구축된 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소규모 도계장의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남 회 예산분석관(nhc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축산발전기금 3941-343

2)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소규모 도계장 설치지원 사업은 장기적으로 살아있는 닭 등의 유통을 금지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는 시설로 건설하여 도축에 따르는 비용과 수수료를 부담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도계장에 대해 전국 54개소의 수요가 있고, 35개소는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19개소는 향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수요처는 토종닭을 직접 사육하는 농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소유 시설에 소규모 도계장이 설치 될 경우 해당 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살아있는 닭이 유통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정책의 효과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인 소유시설로 소규모 도계장이 설치될 경우 폐쇄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장상인회가 운영주체가 되도록 사업 계획을 수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규모 도계장의 설치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16개 전통시장에서 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개 전통시장 내 산닭의 판매점포가 3~16개로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동 사업이 40%의 자부담³⁾이 포함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축한 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해당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와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소규모 도계장 설치지원 사업은 도계장 건설 비용에 대해 국고 30%와 지방비 30%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장기적으로 가금류에 대한 유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지원 효과가 특정 농업경영체의 자산이 되지 않도록,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설립 주체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규모 도계장 설치지원 사업은 기 구축한 도축장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계장은 폐수배출시설로 규정⁴⁾되어 있으며, 이는 수질오염방지시설⁵⁾이기 때문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⁶⁾와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⁷⁾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

3) 개소당 사업비는 3억 4,650만원이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시행규칙」 별표 5

러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0⁸⁾에 따르면 토종닭을 소규모로 도축하는 경우 도축장 개설에 따른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닭의 유통 구조상 거점 단위의 소규모 도계장을 건립해야할 필요성이 있지만,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하나를 설치해야하고, 동 시행규칙 별표13에 규정된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도계장의 설치 과정에서 도계에 따르는 부산물 및 폐수 처리의 어려움이 있을 우려⁹⁾가 있다.

한편,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에 따라 도축업자는 가축의 도살·처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¹⁰⁾하고 있고, 전국 43개 도계장은 연간 12억 1,950만 마리를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7월까지 5억 3,900만 마리(이 중 토종닭은 1,751억 마리)를 도축하여 추가 도축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축산물위생관리법」제31조와 제47조¹¹⁾의 규정에 따라 도축을 거부한 도축업자의 제재수단이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고, 기 구축된 시설은 대부분 계열화 업체가 보유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 대한 소규모 농가의 도계장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기구축된 도축시설을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 및 인센티브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시행규칙」별표 13

8)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12) 생체중량 2.3킬로그램 이상의 닭을 연간 30만수 이하로 도축·처리하는 도축업에 대하여는 허가관청이 닭과 닭고기의 국내수급상황·지역여건·특성 또는 도축 예상 마릿수 등을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다음 ① 및 ②에 관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하루에 닭 500마리 이상 도축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기준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축장의 위치·구조·규모(부지면적)

② 도축장의 시설(소독준비실, 폐기물처리시설, 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물뿌림시설, 작업실 안 시설별 계획, 출입문의 자동·반자동화, 자동 탕지기·탈모기, 외부 차단시설, 시설의 배치순서, 각 시설별 면적, 도축기계의 자동식 설치 등)

9)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적 시설 기준에 맞는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함으로써 기존의 전통시장 등의 불법 도계로 인한 오폐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 생략

9.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자

10.~11. 생략

가. 현황

도축검사운영 사업¹⁾은 축산물 안전성검사와 도축검사원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역사업인 도축검사운영을 통해 도축검사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 계획안은 89억 5,300만원으로, 소규모 도계장 검사인력(공중수의사²⁾)의 인건비 5,2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다.

[2018년도 도축검사운영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변경(A)		B-A	(B-A)/A
도축검사운영	14,121	14,872	14,872	15,486	614	4.1
도축검사원 인건비	9,180	9,347	9,347	8,953	△394	△4.2
(소규모 도계장 검사인력)	(0)	(0)	(0)	(52)	(52)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도축검사운영 사업은 소규모 도계장에서 근무할 검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검사 인력의 실제 근무 가능한 기간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도축검사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도축검사원인건비 사업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근무하는 33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이다. 2018년 예산안은 1인당 301만 6,000원을 336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밖에 퇴직적립금, 보험부담금, 인건비 공통인상분이 반영되어있다.

남 회 예산분석관(nhc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축산발전기금 3938-332

2)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사를 의미한다.

[2018년도 소규모 도계장 검사 인건비 산출 내역]

구 분	2018 예산안
도축검사원인건비	3,016천원×336명×12월×60% ≙ 7,295,000천원
퇴직적립금	3,030천원×336명×1월×60% ≙ 610,000천원
보험부담금	3,030천원×10.6%×336명×12월×60% ≙ 736,000천원
소규모 도계장 검사 인력 인건비	300천원×3명×8회×12월×60% = 52,000천원
공통인상분(3.0%)	8,675백만원×3.0% ≙ 260,000천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도축검사원인건비는 소규모 도계장의 양성화에 따른 검사인력(공중수의사)의 인건비³⁾이며, 5,200만원을 편성하였다. 해당 인력은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공중수의사 인건비로, 3명의 인력에 대해 12개월 간 편성하였다. 이는 소규모 도계장의 특성상 매일 도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축일에 맞추어 검사인력이 출장 검사를 실시할 것을 예상하고, 월 8회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소규모 도계장 사업은 아직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며,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사업설계, 공모, 평가, 사업자 선정, 설계, 건축 등의 절차를 고려하였을 때, 12개월 간 근무해야 할 인건비를 편성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인건비가 미 집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규모 도계장에서 도축 검사를 할 검사 인력과 관련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검사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 임무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현황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사업¹⁾은 축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계획안은 2017년 대비 28억 8,400만원 증액된 36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781	763	763	3,647	2,884	378.0
축산물유통 실태조사	230	300	300	322	22	7.3
조사료통계 관측조사	115	78	78	78	0	0
축산물가격조사	85	85	85	85	0	0
육류유통 수출입조사	351	300	300	300	0	0
축산물거래증명 통합 시스템 구축	0	0	0	1,293	1,293	순증
가금산물가격 조사시스템	0	0	0	787	787	순증
축산물온라인 가격플랫폼구축	0	0	0	782	782	순증

주: 가금산물가격조사시스템 사업은 축산물수급관리(3731-300)에서 이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첫째, 내역사업인 조사료통계관측조사와 육류유통수출입조사는 공모 절차 없이 축산경제연구원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축산물거래증명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시행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 회 예산분석관(nhc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축산발전기금 3731-305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사업은 7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3개 기관이 수행한다.

[2018년도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사업 내용 및 시행기관]

구분	사업 내용	시행기관
축산물유통실태조사	주요 축산물 4축종 10품목 유통 경로·가격·비용 조사 (추가) 1개 축종(오리) 및 표본 확대, 축산물 유통조사 입력시스템 구축	축산물품질평가원
조사료통계관측조사	조사료 생산통계 자료 수집 조사	축산경제연구원
축산물가격조사	산지가격 4품목 19종류, 도매가격 2품목 2종류	농협중앙회
육류유통수출입조사	재고조사(60개소), 소비자 실태조사 및 분석	축산경제연구원
축산물거래증명통합 시스템 구축	○ 소, 돼지, 닭, 오리, 계란 축종별 9종의 거래증명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한 거래증명통합시스템 개발하는 사업 ○ 하드웨어(서버, 저장장치 등), 소프트웨어(보안, 운영체제 등), 프로그램 개발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금산물가격조사 시스템	가격조사체계 개선을 통한 살처분 기준 가격의 합리적 설정을 위한 사업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온라인가격 플랫폼구축	산지·도매·소매 등 각 단계별 축산물 가격정보를 수집·제공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형성 및 거래지표 제공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 중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조사료통계관측조사와 육류유통수출입조사 사업은 축산경제연구원이 소관하며,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받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²⁾은 민간경상보조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공모(公募)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

동 사업은 보조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 사업을 시행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조사료통계관측조사 및 육류유통수출입조사의 경우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축산경제연구원에 민간경상보조를 지원하고 있다.

[축산경제연구원 현황]

설립일자	2005. 3. 14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설립목적	축산경영·경제, 유통, 환경, 위생, 브랜드 등 각종 축산정책에 대한 자문, 조사연구, 컨설팅을 실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축산물유통실태조사와 가금산물가격조사시스템 사업은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시행하고 있다. 「축산법」 제47조³⁾는 축산발전기금의 용도로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개선’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인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지침」에 따르면, 유통 정보 조사 기관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내역사업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축산물거래증명통합시스템 사업은 축산물을 거래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9종의 거래증명서류⁴⁾를 간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축산법」 제4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 3의2.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이력정보, 친환경인증정보, HACCP인증정보, 경기도G마크 인정, 형성한우인증, 축산물품질공정지정서, 가축혈통등록인증을 말한다.

사업이기 때문에 유통 관련 정보의 조사와 무관한 측면이 있으므로, 동 내역사업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시행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 가격 비교 플랫폼 사업은 유통단계·산지·부위·등급·축종 등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축산물온라인가격 플랫폼 구축 사업은 산지·도매·소매 등 각 단계별 축산물 가격정보를 수집·제공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형성 및 거래지표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등유·경유로 이원화하여 실시간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주유소 가격 플랫폼과 달리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의 종류⁵⁾에 따른 전국의 축산물유통업체가 10만개에 이르며, 유통단계⁶⁾·산지·정육⁷⁾·부산물⁸⁾·등급⁹⁾·성별¹⁰⁾ 등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플랫폼을 구성할 정보를 수집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제공해야할 자료의 양으로 인해 실시간 정보 제공이 어려울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구축 예정인 시스템의 효과성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가격정보시스템(KAMIS)¹¹⁾은 매주 원산지 등 6종의 축산물 관련 정보를 공표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정보서비스¹²⁾도 373개 축산물 소매판매점의 원산지 등 6종의 정보를 매주 금요일 조사·발표하고 있다.

5)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 오리, 계란 등으로 분류된다.

6) 유통단계에 따른 가격은 산지가격(가축시장, 도매시장), 도매가격(부분육 도매시장, 식육포장처리업체), 소매가격(오프라인, 온라인) 등으로 분류된다.

7) 정육은 안심, 등심 등 11개 부위 등으로 나뉜다.

8) 일례로 소의 경우 우족, 사골, 꼬리, 잡뼈 등이 있다.

9) 등급은 육질(1++, 1+, 1, 2, 3, 등외)을 의미한다.

10) 일례로 소의 경우 육우, 암소 한우, 거세우 등으로 나뉜다.

11) www.kamis.or.kr

12) www.price.go.kr

[축산물온라인가격 플랫폼구축 현황(안)]

구분 (유통단계별)		가격 비교 정보 제공 내역
산지 가격	가축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 한우 ○ 성별: 암, 수, 거세 ○ 구분: 송아지(6~7개월), 큰 소
	도매시장 지육경락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의 종류: 소 지육(한우, 육우, 젓소), 돼지 지육 ○ 성별: 암, 수, 거세 ○ 등급: 육질(1++, 1+, 1, 2, 3, 등외), 육량등급(A, B, C)
도매 가격	부분육 도매시장 경락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의 종류: 쇠고기 ○ 소 도체 종류: 한우, 육우 ○ 성별: 암, 수, 거세 ○ 부위: 정육(안심, 등심 등 11개 부위) 및 부산물(우족, 사골, 꼬리, 잡뼈) ○ 등급: 육질(1++, 1+, 1, 2, 3, 등외)
	식육포장 처리업체 판매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의 종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 부위: 정육(안심, 등심 등 11개 부위) 및 부산물(우족, 사골, 꼬리, 잡뼈) ○ 등급: 육질(1++, 1+, 1, 2, 3, 등외)
소매 가격	오프라인 매장 판매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장 종류: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전통시장, 정육점 ○ 축산물의 종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 부위: 안심, 등심 등 10개 부위 ○ 등급: 축산물 종류별 모든 등급 ○ 가격구분: 일반가격, 할인가격, 특판가격
	온라인 쇼핑몰 판매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의 종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 부위: 쇠고기(안심, 등심 등 10개 부위), 돼지고기(삼겹살 등 7개 부위) ○ 등급: 축산물 종류별 모든 등급 ○ 가격구분: 일반가격, 할인가격, 특판가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가. 현황

농촌형교통모델¹⁾ 사업은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통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공공서비스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41억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농촌형교통모델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촌형교통모델	0	0	0	4,100	4,100	순증
교통모델 지원	0	0	0	4,100	4,100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교통모델 사업은 2014년 마사회특별적립금을 이용하여 시작되었으며, 2015년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²⁾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관되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동 사업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여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업 운영비는 전액 이관되었지만, 사업자 선정 및 모니터링 등 관리 비용 1 억원은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촌사회 복지증진 사업에 편성되어있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형교통모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에 총 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사업비 41억원³⁾은 지특회계에 편성되어 있고, 사업자 선정 및 모니터링·평가 등 사업관리를 위하여 농특회계에 1억원이 편성되어있다.

남 회 예산분석관(nhc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지역발전특별회계 4240-301

2)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231-405

3) 교통모델 지원: 82개소 × 100백만원 × 50% = 4,100백만원

[2018년도 농촌사회 복지증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촌사회 복지증진	4,662	5,734	5,734	4,834	△900	△15.7
선정 및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	100	100	100	100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농촌형교통모델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농촌형교통모델 사업은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교통취약 지역에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운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촌형 교통모델이란, 경제성이 낮거나 진입로 등의 이유로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소형버스와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기존 교통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의 시행 주체는 농어촌공사 및 지자체로, 사업 대상 지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4)에 따른 농촌 지역에 한한다. 개소당 최대 1억원이 지원되며, 국고 지원 비율은 50%로 버스형과 택시형으로 나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사업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서 운송업자를 제외하여 주민 및 비영리단체로 한정하였으며, 지원받은 국비와 지방비는 차량구입 및 개조비, 기사 인건비, 유류비(버스형)에 사용할 수 있고, 운행손실보상금 등(택시형)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용 대상은 고령자(만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8년 신규사업으로 공공형택시지원 사업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대중교통 사각 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매칭 비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동일한 50%이며, 지역당 최대 1억원을 한도로 지원된다는 점도 동일하다.

[국토교통부의 공공형택시지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

(단위: 백만원)

구분	공공형 택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대상	전국 78개 시(市) 지역 (8개 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 자치시)	일반농산어촌 대상 (82개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법령	「여객자동차법」 제50조 1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 조 1항
재원	지특회계	지특회계
추진방식	50% 국비 보조	50% 국비 보조
시작연도	2018년(신규사업)	2014~
예산안	3,900 (생활계정 3,750, 제주 100, 세종 50)	4,200
지원형태	지자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기간	2018년 ~ 2022년	3년
이용요금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	지자체 자율
지원대상 유형	대중교통 사각취약지대 거주 주민 택시형 및 버스형	전국 군단위 지역(82개소) 버스형, 택시형
지원내용	대중교통 사각취약지대 거주 주민 들이 최소한의 금액으로 공공형 택 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형 택시 운영 지자체에 운영비 등 보조	(버스형) 차량구입 및 개조비, 기사 인건비, 유류비 (택시형) 운행손실보상금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비용 및 주체	별도 추계 없음, 지자체	1억원(농특회계), 한국농어촌공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처 간 사업의 범위를 구분하여 국토교통부는 전국 75개 시 지역과 세종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공공형 택시 사업을 운영하는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군 단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사한 목적과 내용의 사업이 중복 수행되거나 분산되어 추진되는 경우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

며, 사업자 관리 및 모니터링에 드는 비용도 중복될 우려가 있다. 특히 동 사업은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사업 주체를 구분할 경우 이용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지, 출발지 및 도착지를 기준으로 구분할지, 이동 수단의 사업 주소지로 구분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시·도의 경계를 운행하는 버스 노선의 경우, 종착지와 출발지가 서로 다른 시와 군에 속할 경우 등 다양한 혼란이 있을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농어촌 거주민의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해야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교통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협회 및 비영리단체 등을 관리하고 운송업계의 갈등을 중재하는 측면 등에서 강점이 있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처별 분리 수행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노선 및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도 자율적으로 농촌형 교통모델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 기준 전국 9개 시·도, 99개 시·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버스형을 운영하는 25개 지역과 택시형을 운영하는 74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지자체 자율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현황]

구분	버스형	택시형
대구(1)	-	달성군
경기(13)	가평군, 김포시, 시흥시, 포천시, 파주시, 안산시, 오산시, 연천군, 양평군	이천시, 양평군, 여주시, 포천시, 안성시, 가평군, 화성시
강원(13)	-	춘천시, 영월군, 평창군, 양구군, 횡성군, 인제군,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정선군, 화천군, 양양군
충북(10)	-	충주시,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충남(13)	천안시, 보령시, 논산시, 홍성군, 당진시, 아산시	서천군, 태안군, 청양군, 공주시, 예산군, 세종시, 서산시
전북(7)	남원시, 완주군, 정읍시,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부안군	완주군
전남(19)	-	화순군, 여수시, 영광군, 무안군, 강진군, 보성군, 광양시, 나주시, 곡성군, 고흥군, 장흥군, 영암군, 완도군, 순천시, 구례군, 함평군, 신안군, 장성군, 담양군
경북(7)	울진군, 예천군, 경주시	칠곡군,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 예천군, 의성군
경남(10)	-	함안군, 남해군, 하동군, 고성군, 사천시, 함양군, 밀양시, 산청군, 거창군, 창녕군
계(99)	25개 지역	74개 지역

주: 2016년 12월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가. 현 황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¹⁾은 2025년까지 스마트원예단지 8개를 조성하여 시설 원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기반 조성 사업이다. 2018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00% 증액된 105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0	3,500	3,500	10,500	7,000	2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예산안에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2017년 추진한 1개소에 대한 2년차 사업비와 2018년 신규로 추진할 2개소에 대한 1년차 사업비가 편성되었다. 연차별 지원 비율은 50:50이다.

스마트원예단지는 20ha 규모의 수출 중심 시설원예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개소당 100억원에 이른다. 동 사업은 사업신청자가 확보한 토지에 국가가 기반 시설을 구축해주는 사업이며, 국비(70%)와 지방비(30%)를 재원으로 용수시설, 전기수전, 도로 건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3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17~2018년에 걸쳐 1개 단지를 시범조성 할 계획으로 시행되었다.

남 회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232-370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총사업비(안)]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비	내용
부지조성	부지정지	5,200	○ 논을 시설건축이 가능한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성토 등
	도로	375	○ 생산물 유통을 위한 간선·지선 도로
생산 필요시설	용수	200	○ 시설원예 재배시 필요한 일정급수 이상의 용수 시스템 ○ 경영에 필요한 생활용수
	전기	2,909	○ ICT융복합 장비, 에너지공급 시스템 가동 전기시설
	오폐수처리	400	○ 발생하는 폐양액 및 생활폐수 등 처리시설
기타 부대비	설계·감리비 등	916	-
합계		10,0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2017년 시작된 시범사업이므로 조성 중인 스마트원예단지의 추진 경과를 검토한 후 신규 원예단지의 추가 조성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생산·유통시설을 집적화하여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경영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시설원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단지 조성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있는 지자체를 공모를 통해 선발하여 스마트원예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조성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4월 사업자를 공모하였고, 사업성·대상지의 적정성·계획의 타당성·수출 계획 등을 고려하여 2017년 6월 충청남도 부여군을 선정하여 9월 국비(35억원)를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7년 9월 기준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도비 편성은 완료되었으나, 군비가 아직 편성되지 않아 추경 편성을 기다리고 있으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도 진행 중²⁾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충청남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업자가 선정되기까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2017년 7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한 기술적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9월 기준 기반조성을 포함한 세부추

2)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 사업은 아직 설계 및 시공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³⁾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향후 시행 계획과 관련하여 2017년 10월 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11월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설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통상적으로 설계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8년 3월 착공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안에는 기시행된 단지에 대한 2년차 사업비 35억원이 전액 편성되었으므로 집행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사업이 아직 착공되지 않아 사업의 성과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안을 통해 신규 스마트원예단지 2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70억원을 편성하였다. 따라서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이 2017년 시작된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시행된 단지에 대한 추진 성과 및 경과를 검토한 후 신규 원예단지의 추가 조성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3) 2017년 9월 기준이다.

가. 현황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¹⁾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지역 내에 순환시키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지역단위 푸드플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역단위 푸드플랜	0	0	0	350	350	순증
푸드플랜 모델 개발	0	0	0	100	100	순증
교육 및 거버넌스	0	0	0	250	250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푸드플랜 모델 개발 사업’과 ‘교육 및 거버넌스 사업’이라는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푸드플랜 모델 개발 사업은 국내 상황에 적합한 푸드플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원이 편성되어있으며, 교육 및 거버넌스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 지원되는 민간 경상보조로 지자체,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푸드플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지역먹거리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역사업인 교육 및 거버넌스 사업에 편성된 2억 5,000만원은 지자체·실행조직·유통주체 등 지역단위 푸드플랜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사업에 필요한 비용 2억원과 시·군·구 자치단체장, 생산자·소비자단체, 농림축산식품부·타부처, 농협 등 유관기관 간 거버넌스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 5,000만원으로 나뉜다.

남 회 예산분석관(nhce@assembly.go.kr, 788-4632)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32-383

이를 통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단위로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안전, 영양, 복지, 환경, 식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단위 푸드플랜을 세우는데 필요한 개념 교육, 거버넌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8년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의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2018년 예산안
푸드플랜 모델 개발 (일반연구비 260-01)	○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지역여건별 푸드플랜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	100
교육 및 거버넌스 (민간경상보조 320-01)	○ 지자체·실행조직·유통주체 등 지역단위 푸드플랜 플레이어 대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200
	○ 시·군·구 자치단체장,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식품부·타부처, 농협 등 유관기관 간 거버넌스 구축·운영	50
합 계		350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나. 분석의견

첫째, 당초 계획과 달리 교육비 및 관련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비만 편성되었으므로, 시행 예정인 연구용역을 토대로 운영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푸드플랜 확산기반 조성 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순환 시스템의 구축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푸드플랜 확산 기반 조성 사업은 2018년 연구용역을 시행한 후 운영 방안 및 교육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⁴⁾

둘째, 지역단위 푸드플랜은 농림축산식품부나 지자체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지역 식품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2017년 9월 기준 법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향후 보완의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⁵⁾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2013년 10월에 수립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르면 ‘Ⅱ. 기술농업 및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⁶⁾ 챕터의 ‘2. 지역농업 조직화 및 허브 구축’⁷⁾에서 지역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 및 향토산업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플랜을 준비 중인 많은 지자체에서 전문지식 및 관련 자료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어 교육 사업을 하루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입장이다.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
-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생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P. 52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P. 59

2. 지역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 및 향토산업 육성
 - 농특산물 산업화 발전단계에 따라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개별경영체, 소규모지역), 향토산업(시·군), 지역전략산업(광역 단위)으로 차별화

로컬푸드(지역식품) 활성화에 대해서도 생산자 조직과 연계한 로컬푸드숍(직매장) 확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체계적 홍보 및 한국형 로컬푸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달성 추진전략과 주요사업 내용 및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지자체가 수립할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계획도 로컬푸드 육성, 지역단위의 먹거리 생산 계획 등이 포함되고 시도 등 지자체에서 작성될 예정이므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해당 계획이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 지자체의 법정 계획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시도계획, 시·군·구 계획)의 지역 식품 파트와 연계되어 작성되고 상반된 내용을 담지 않도록 하여 식품계획 간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작성되고 있으나, 지역단위 푸드플랜은 현재 법령상 근거가 미흡한 계획으로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교육·컨설팅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가 분명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역단위 푸드플랜이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¹⁾ 사업은 우수제조시설(GMP)²⁾을 갖춘 동물용의약품 생산시설의 신축·개보수 및 수출업체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대비 136억 1,000만원 증액된 221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8,686	8,513	8,513	22,123	13,610	159.8
제조시설 지원	7,604	5,883	5,883	20,403	14,520	246.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첫째, 제조시설 지원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므로 집행 여건을 감안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

내역사업인 제조시설 지원 사업³⁾은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우수한 제조시설의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용자하는 사업⁴⁾과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을 신축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남 회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940-394, 3940-350
- 2)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제조기준)이란, 품질이 고도화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료입고부터 출고까지 제조·품질관리규범을 말한다.
- 3) 국고70%, 자부담30%으로 금리 연 3%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6개월마다), 상환기간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 4) 1,589백만원(567.5백만원×4개소×70%)

우수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용자 신청이 저조하여 예산현액 67억 9,000만원 중 43억 900만원이 집행행된 상황이다. 이 중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의 신축에 대한 용자는 예산현액 49억원 중 71.4%인 35억원이 집행되었으며, 개보수의 경우 18억 9,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42.8%인 8억 900만원만 집행되었으므로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집행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수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실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A/B)
신축	2013	13,020	13,020	2,024	2,024	6,498	4,498	15.5
	2014	12,687	19,185	11,179	11,179	7,812	187	88.1
	2015	5,600	13,419	13,419	5,600	0	0	41.7
	2016	9,100	9,100	7,000	7,000	2,100	0	76.9
	2017	2,800	4,900	3,500	3,500			71.4
개보수	2013	730	730	0	0	730	0	0.0
	2014	503	1,233	313	313	503	417	62.3
	2015	1,400	1,903	503	503	604	796	35.9
	2016	0	604	604	604	0	0	
	2017	1,890	1,890	809	809			42.8

주: 2017년 9월 말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구제역 백신제조시설 신축 사업은 2017년 신규 사업으로 당초 2017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8~2019년에는 건축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모집공고(2017.6.1)에 따라 2개의 컨소시엄 업체가 신청하였고, 2017년 9월 동물용의약품 관련 제조업체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었다. 그로 인해 2017년 9월 기준 당초 계획된 설계비 17억원(용자 12억원, 자부담 5억원)이 전액 집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사업의 순연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예산안에 구제역 백신제조시설 신축 사업의 2년차 사업비를 당초 계획대로 편성하였으므로, 해당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아직 구제역 백신제조시설 신축에 대한 설계가 착수되지 않았으며, 설계 완료 이후에서야 공사비 및 감리비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소요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5) 18,814백만원(67,243백만원×39.97%×70%)

[2018년도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7				2018 예산안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본예산	추경			
- 제조시설 지원	5,883	5,883	7,983	4,309	20,403
(우수제조시설신축및개보수)	4,690	4,690	6,790	4,309	1,589
(구제역백신제조시설신축)	1,193	1,193	1,193	0	18,814

주: 2017년 9월 말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둘째,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지원 사업의 경우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제조시설 지원 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신축 사업은 구제역 백신을 제조하는 시설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업자에게 총사업비의 70%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공모 결과 선정된 업체는 3개의 국내 동물용의약품 제조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구성한 컨소시엄으로 다국적 기업이 제휴되어있다. 융자금의 배정 대상은 국내기업에 한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기업이 구제역 백신에 대한 생산 기술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건축 설계 컨설팅, 생산기계의 사양, 품질 관리 기술 등과 관련하여 다국적 기업과 제휴해야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지원 사업이 다국적 기업의 국내 제조시설에 대한 설립 지원이 되지 않도록 기술 제휴와 관련한 국내 컨소시엄과 다국적 기업의 계약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노지 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 사업¹⁾은 생산량이 불규칙한 노지 채소와 관련하여 스마트팜 시설을 보급하고,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최적 생육 환경 분석 및 관측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2018년 신규 사업으로 11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노지 채소작물 스마트 팜 모델개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노지 채소작물 스마트 팜 모델개발	0	0	0	1,100	1,100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환경 조사 장비, 관수·관비 관련 장비, 병해충관리, CCTV 등 영상장비, 통합제어시스템 등 5개의 스마트팜 관련 장비를 구입하여 50개 농가를 대상으로 개소당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급하고, 1억원의 예산으로 생육정보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농가에 보급되는 스마트팜 관련 장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노지 채소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해당 장비를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남 회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232-376

[2018년도 노지 채소작물 스마트 팜 보급 장비 구성(안)]

(단위: 원)

구분	세부내역	단위	수량	금액
환경센싱	온·습도, 풍향, 풍속, 강우, 일사, 토양 등 센싱 장비	1	1	2,500,000
관수·관비	관수 모터, 스프링클러, 전자밸브, 액비 주입기	1	1	5,000,000
병해충관리	IT-페르몬트랩 등	1	1	6,000,000
영상장비	CCTV, 녹화장비 등	1	1	1,500,000
통합제어시스템	관수·관비 등 통합 제어기 및 운영관리 시스템	1	1	5,000,000
총 비용				20,000,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생육조사는 농촌진흥청의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동 사업을 통해 조사할 내용은 환경, 병해충, 생육정보, 경영정보, 시장가격, 수급 동향 등이다.

[노지 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 개발 사업 조사 내용, 주기 방법]

구분	조사 내용	조사 주기	조사 방법
환경정보	온·습도, 풍향, 풍속, 강우, 토양 등	분 단위	센서를 통해 자동수집
병해충 관리	해충 종류, 포집수	실시간(중밀도 이상)	IT-Trap 및 센서 통해 자동수집
생육정보	초장, 엽수, 수확량 등	시작부터 종료까지 주 1회/농가 조사	전문 조사원을 활용한 현장방문 조사
경영정보	작업량, 생산량, 출하량 등	상시(발생시)	PC·모바일 활용 및 농협 ERP 연계
시장가격	33개 공영 도매시장 경락 정보	1일 단위	도매시장 정보 연계
수급예측	작황, 기상위험, 판매동향, 소비동향	실시간	채소 수급예측 시스템 (BIGFOS) 연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의 ICT 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술개발²⁾ 사업은 작물이 생육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설정 모형 및 자동측정기술을 개발하여 시설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에너지 및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활용 모형 개발 사업은 2017년 현재 생산성 향상 모형 개발을 위한 생육조사와 스마트팜 빅데이터 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60명의 조사 인력을 고용하여 스마트팜 빅데이터 분석능력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된 인력을 각 도의 농업기술원에 배치하여 180개 농가를 대상으로 생육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신규로 추진하는 노지 채소작물 스마트 팜 모델개발 사업은 농촌진흥청이 ICT 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조사인력을 고용하여 생육조사 및 경영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의 ICT 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총 83개 항목³⁾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 중 조사 인력이 직접 측정하는 생육 자료는 초장 변화량⁴⁾, 나뭇잎 수, 길이, 폭, 경경⁵⁾, 화방수⁶⁾, 화방별 꽃수, 성장점⁷⁾과 화방 간 거리, 착과 수⁸⁾, 평균 과중, 수확량의 11개 변수이고, 이밖에 14개 기초 재배 자료⁹⁾도 조사하고 있다. 2017년 ICT 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노지채소 스마트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조사 항목은 시설원에 및 노지채소 간에 큰 차이가 없으며 이와 같은 자료를 원활하게 수집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조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R&D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 사업과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활한 생육조사를 시행하

2) 코드: 일반회계 1133-309

3) 83개 항목은 환경 자동측정데이터 온실 외부, 내부, 시설, 제어 등 48개 항목, 생육(수동측정) 및 재배기초 데이터 25개 항목, 경영(수동측정) 데이터 수량, 품질, 난방비, 조수입 등 10개 항목이다.

4) 식물 전체의 길이(높이)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5) 줄기의 굵기를 의미한다.

6) 꽃이 피어있는 모듬의 수를 의미한다. 예를들어 첫 번째 꽃모듬은 제1화방이고, 두 번째 꽃모듬은 제2화방으로 이 숫자를 의미한다.

7) 식물의 줄기와 뿌리의 끝에서 세포의 증식, 기관 형성과 같이 두드러진 형성 활동을 하는 부분을 말한다.

8) 과수나무에 과일이 맺혀있는 수를 의미한다.

9) 작목/품종, 정식묘, 재배 방법, 배드 종류, 재식 밀도, 육묘 기간, 정식 일시, 적엽량, 수확 시작일자, 수확 종료일자, 적심유무/적심시기, 적심 절위, 병해충 방제횟수, 병해충 발생 정도이다.

기 위해서는 작물의 생육에 대한 이해와 조사 항목 및 조사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기존 사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농촌진흥청이 빅데이터의 수집을 확대¹⁰⁾할 계획이며, ICT 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스마트농업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이 자부담이 없이 전액 국비를 통해 지원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유사한 목적과 내용의 사업이 중복 수행되거나 분산되어 추진되는 경우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생육조사는 기존 농촌진흥청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10) (2017) 135농가 → (2017추경) 315농가 → (2018) 330농가

가. 현황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¹⁾은 청년 농업인에게 초기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조기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영농 기반이 없는 젊은 층에게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여 영농 창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은 90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0	0	0	9,060	9,060	순증
청년 농업인 지원금	0	0	0	9,060	9,060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청년 농업인 지원금 사업은 지자체 보조로 운영될 계획이며, 농업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년 농업인의 경영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만 40세 미만, 만 3년 이하의 영농 경험을 지닌 청년 농업 경영주(2018년 창업예정자 포함) 중 농가 소득²⁾이 일정수준 이하인 1,500명을 선발하여 매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경영안정자금을 9개월 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 농업인 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농가소득은 도시가수 평균 근로소득과 농가 평균 소득, 도시가구 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고, 농업인이 제출한 영농계획서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평가(서류 및 면접)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남 회 예산분석관(nhc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70-436

2) 농가소득이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나. 분석의견

첫째, 수도작³⁾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우선 선발하는 등 쌀 농업으로의 유입을 통제하여 청년 농업인을 타 작물로 진입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생산 과잉에 따른 쌀 재고의 누증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쌀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수도작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우선 선발하거나 농가 소득 산정시 직불금 수령액을 포함하는 등의 유인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을 수도작 이외의 작물로 유인할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3년간 후계 농업 경영인들의 주요 재배품목⁴⁾을 보면, 타 작물에 비해 수도작 종사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수도작을 배제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2016년 기준 쌀의 수요량은 456톤인 반면, 공급량은 638톤으로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비축미 또는 수입쌀의 보관·가공·운송을 위한 정부양곡관리비⁵⁾ 사업을 보면, 관리해야 할 양곡의 증가로 인해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2,477억 9,600만원 대비 23.7% 증가한 3,064억 3,400만원이 편성되는 등 재정 부담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 청년 농업인을 수도작 이외의 작물로 유인할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 농업인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무 영농기간을 부과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장기적인 영농 정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18년 시범사업을 통해 선발된 인원에 대해 2019년 본 사업으로 전환한 후에도 최대 3년간 청년 농업인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영농 정착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므로, 청년 농업인이 장기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3) 물을 이용한 농업으로 벼 농사를 의미한다.

4) 채소·화훼(36.5%), 축산(21.9%), 과수(18.5%), 쌀(14.8%)

5) 코드: 양곡관리특별회계 2131-366

일례로, 한국농수산대학의 경우 졸업 후 수업연한의 2배 기간(6년)동안 농수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영농·영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학 중 퇴학(자퇴) 및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해야 한다.⁶⁾ 한국농수산대학교는 1997년 개교 이래 2016년까지 4,04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전체 4,041명 중 1,938명이 6년간의 의무영농이행을 완료하였다. 2017년 기준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지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총 2,103명으로 이 중 1,896명(98.1%⁷⁾)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의무영농 기간이 종료된 사람은 1,938명으로 71.6%⁸⁾인 1,355명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 농업인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인에게 의무 영농기간을 부과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장기적인 영농 정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6) 한국농수산대학교, 「2017년도 한국농수산대학교 모집 요강」, 2016.

7) 2,103명 중 171명은 유예자이며,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8) 1,938명 중 46명은 면제 대상자이며,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가. 현황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시범 사업¹⁾은 다양한 환경보전형 영농방식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농촌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시행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시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시범	0	0	0	500	500	순증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정책연구비 260-02)	0	0	0	500	500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사업의 목적과 달리 정책연구비만 편성되어 있어 사업 목표와 내용 간의 정합성이 저조하므로, 2018년 편성된 정책연구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시범 사업의 당초 요구안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시범지구를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 1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2018년 정부의 예산안에는 정책연구비²⁾ 5억원만 편성되었다. 그 결과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하여 전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던 사업 목적과 달리 2018년 예산안에는 정책연구비만 편성되어 사업 목적과 내용 간에 정합성이 낮은 상황이다.

남 회 예산분석관(nhc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430-320

2) 정책연구비(260-02)란,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비용을 말한다.

2018년 예산안에 5억원의 정책연구비가 편성된 반면,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하여 3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정책연구비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가 검토, 조사·연구 등을 통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활동 및 방법, 추진체계, 모니터링 등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8년은 본 사업의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 시행된 3건의 연구용역 중 1건만 완료되었으며, 2건은 2017년 9월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로 연구비를 편성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2018년 편성된 정책연구비는 기 시행된 연구와 차별화하여 추진해야하며, 기존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및 조기 검토 등을 통해 기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신규로 편성된 정책연구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농식품바우처지원 사업¹⁾은 저소득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계급여 일반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를 지원하고,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계층 간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안은 5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농식품바우처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식품바우처지원	0	0	0	500	500	순증
농식품 바우처 도입기반 마련 (일반연구비 260-01)	0	0	0	500	500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첫째, 당초 사업 계획과 달리 연구용역비만 편성되어 있어 사업 목표와 내용 간의 적합성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며, 2018년 편성된 일반연구비 5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바우처지원 사업의 당초 요구안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를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63억 3,2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018년 정부안에는 실증연구 등을 위한 일반연구비²⁾ 5억원만 편성되었다. 그 결과 생계급여 일반수

남 회 예산분석관(nhc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32-384

2) 일반연구비(260-01): 국가로부터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 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

급자를 대상으로 농식품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했던 사업 계획과 달리 일반연구비만 편성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예산안을 활용하여 농식품바우처 지원 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제도 도입의 효과성을 검토한 후, 타당성 확보 시 농식품바우처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9월 정책연구사업을 통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³⁾의 연구를 발주한 상황이며, 2017년 12월 연구용역 최종 보고 및 검수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 시행한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증연구를 위한 신규 사업이 편성되었으므로, 기 발주한 연구 용역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실증연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집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건복지부에서 기 추진 중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1995년 이후 「국민영양관리법」⁴⁾을 토대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⁵⁾의 내역사업인 통합건강증진 사업⁶⁾을 통해 지자체경상보조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사업을 기획·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영양 분야는 영양관리 및 식습관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애주기에 따라 영양플러스 사업,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 사업, 어린이집·유치원 기반 영양관리 사업,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영양관리 사업 등 다양한 지원⁷⁾을 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영양플러스 사업은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중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시행하고, 보충식

3)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정책연구개발 사업(260-02)를 통하여 바우처 도입의 필요성, 지원규모, 지원대상, 운영체계 등에 대한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4)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5) 코드: 건강증진기금 3333-300

6) 2018년 예산안은 661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568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다.

7) 2017년 기준 254개 보건소당 평균 지원되는 국비는 1.5억원으로, 국비 보조율은 50%이다.

품(분유,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꿀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고,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건강 과일 바구니 사업은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건강한 간식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교내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과일⁸⁾과 채소⁹⁾류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학교기반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을 통해 학교를 통해 영양교육 및 과일·채소류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이밖에 실버 건강식생활 사업도 시행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식생활 관리서비스(공동부엌 실습교육·가정방문을 통한 영양교육)를 실시하고, 과일과 우유 및 유제품을 주3회 제공하고 있어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영양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¹⁰⁾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 제공과 관련한 기존 사업이 있는 상황에서 생계급여 일반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를 지원하고, 식생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인 바, 보건복지부가 기 추진 중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8) 딸기, 수박, 참외, 귤, 감, 바나나, 망고, 키위, 사과, 배, 복숭아, 오렌지, 포도, 파인애플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9) 오이, 당근, 단호박, 샐러리, 토마토(방울토마토)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10) 보건복지부, 「2017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영양분야 안내서」

가. 현황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식물방역법」 제29조 2)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NAPPO(북미식물보호기구)에서 요구하는 북미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해충 검사와 항만지역의 예찰, 방제업무를 추진하여 국내 수출산업을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은 식물검역 업무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선박에 대한 AGM(아시아매미나방) 검사규정’에 근거하여 NAPPO(북미식물보호기구)에서 요구하는 북미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해충 검사를 실시하고, 선박사로부터 검사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검사수수료는 선박의 종류(컨테이너, 차량운반선, 벌크선, 기타 선박류), 선박중량기준에 따라 다양하며, 매년 50억원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검사수수료 현황]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검사수수료	4,264	3,948	4,515	5,099	5,078

자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나. 분석의견

기관 운영비를 초과하는 독점적 AGM선박 검사수수료로 인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내 금융성자산이 확대되므로, 기관의 운영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수료를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식물방역법」 제29조 2

제29조의2(국제식물검역인증원)

① 식물의 검역과 관련한 국제협약 및 국가 간 약정에 따라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을 설립한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검사한 선박 수는 최근 5년 동안 50.5% 증가하였고, 검사수수료수익도 2013년에 일부 감소된 것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선박검사 건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다 2015년 이후 안정적으로 2,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검사수수료도 5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선박검사건수 및 검사수수료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2012(a)	2013	2014	2015	2016(b)	증감(b-a)	증감률 (b-a)/a
선박검사 건수	1,805	2,062	2,327	2,780	2,717	912	50.5
검사수수료	4,264	3,948	4,515	5,099	5,078	814	19.1

자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예산 규모는 78억 수준(자체수입 50억원 9,300만원, 전기이월금 24억 5,700만원 등)이며, 인건비 28억 9,400만원, 경상운영비 10억 3,100만원, 유형자산 취득비 1억 1,600만원 등 지출액 40억 4,200만원을 충당하고도 예비비로 8억 2,600만원, 금융자산에 9억 4,300만원을 투자하고 19억 9,700만원을 차기로 이월하고 있다.

[2017년도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수입지출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I. 자체수입	5,093	I. 인건비	2,894
- 검사수수료	4,984	II. 경상운영비	1,031
- 이자수입	38	III. 예비비	826
- 수탁사업수입금	66	IV. 자산취득비	1,047
- 기타수입	5	- 유형자산	116
II. 전기이월금	2,457	- 금융자산	931
III. 임차보증금	245	V. 차기이월금	1,997
합 계	7,795	합 계	7,795

자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지출액을 초과하는 독점적 수입의 확보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금융자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금융성자산은 2013년 18억 8,900만원에서 2016년 24억 1,400만원까지 확대되었다.

독점적 수수료로 기관운영비를 충당하는 기관이 금융성자산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기관운영비(인건비, 경비 등)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부는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각종 경비를 감안해 수수료의 수준이 적정한지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금융성자산 규모, 기관운영비, 향후 검사선 밖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수료율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금융성자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현금및현금성자산(a)	129	129	667	298
단기금융상품(b)	1,900	1,900	2,300	2,200
소 계 (c=a+b)	2,029	2,029	2,967	2,498
유동부채 (d)	122	144	158	48
퇴직급여충당부채(e)	18	0	0	36
금융성자산(f=c-d-e)	1,889	1,885	2,810	2,414

자료: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 황

검역해소품목 및 對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¹⁾ 사업은 농가 소득과 연계성이 높은 대중국 수출 확대 가능 농식품 품목(인삼·버섯·화훼·유자차·유제품 등)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여 육성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여 보조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도 예산 44억원 대비 14억원을 감액한 30억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검역해소품목 및 對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검역해소품목 및 對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	3,400	4,400	4,400	3,000	△1,400	△31.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대중국 수출지원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품목인 인삼, 화훼, 유자차, 유제품을 지원하는 사업인 제2과프리카 사업 8억원, 2016년 대중국 검역문제가 해소된 품목인 쌀, 삼계탕, 포도, 김치, 장류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인 16년검역해소품목 사업 17억 5,000만원 등을 합한 30억원이 편성되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35-303

[2018년도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 사업 예산안의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전략품목육성지원		4,400	3,000
제2파프리카	인삼	450	200
	화훼	340	200
	유자차	330	200
	유제품	450	200
16년검역해소품목	쌀	600	350
	삼계탕	400	350
	포도	160	350
	김치	600	350
	장류	350	350
신규개발	농산가공(전통주 등)	720	0
	파프리카 등(신규검역추진)	0	4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동 사업은 수출인프라강화 사업(2835-304)과 사업목적, 사업방식 등에서 유사·중복되어 향후 차별화된 사업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동 사업 사업수행체계를 살펴보면, 대중국 수출 유망 농산물·식품 10개 품목을 선정하여, 해당 품목의 중국 지역 수출지원, 마케팅,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타 수출 지원 사업인 수출인프라강화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대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과 수출인프라강화 사업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전략품목 육성지원	수출인프라강화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회계·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품목별 바이어 초청, 팸투어 등 수출 지원 ○ 대중국 소비 확대 위한 판로확대 사업 ○ 장류, 쌀 등의 판매촉진 위한 홍보 영상 제작, 지하철 광고 등 ○ 소비자체험행사 개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 K-FOOD 페어 참가 지원 ○ 수출농식품 홍보관 운영 ○ 해외 대상 홍보 영상 제작 등 미디어마케팅 실시 ○ 수출상담회 지원 등
사업방식	민간 보조	민간 보조
2018 예산	3,000	47,89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구체적으로 전체 사업내용에서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 사업은 대 중국 수출을 위해 선정된 품목을 대상으로 바이어 초청, 팸투어²⁾, 판로확대 사업, 홍보 영상 제작 등의 수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출인프라강화 사업도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지원을 위하여 농식품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수출상담회 지원, 미디어 마케팅 등을 실시하여 유사하다.

특히, 2016년도 동 사업과 수출인프라강화 사업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추진한 수출 관련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삼계탕의 경우 동 사업에서 중국 대상으로 ‘중국 베이징 버스 연계 삼계탕 홍보동영상 방영’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출인프라강화 사업에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 삼계탕 소비자체험 홍보사업’을 추진하여 양 사업간 사업내용이 유사·중복되고 있다.

2)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사전답사여행): 홍보가 필요한 기관이 자신의 관광상품이나 특정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여행사 또는 관련업자들, 유관인사들을 초청하여 관광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제분유의 경우 동 사업에서 ‘중국 수출 한국 조제분유 브랜드 광고 홍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출인프라강화 사업에서 ‘중국 영화관 한국산 조제분유 광고 방영 사업’을 추진하여 분유와 관련한 홍보 사업의 추진도 양 사업에서 중복되고 있다.

그 외의 쌀, 김치 등 품목에서도 동 사업과 수출인프라강화 사업에서 중국 대상으로 유사한 홍보·마케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과 수출인프라강화 사업의 중국 대상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예시)]

품목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세부사업
조제분유	중국 수출 한국 조제분유 브랜드 광고 홍보 사업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
	중국 영화관 한국산 조제분유 광고 방영사업	수출인프라강화
삼계탕	중국 수출 삼계탕 공동CI 홀로그램 제작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
	중국 베이징 버스 연계 삼계탕 홍보동영상 방영	
	중국 진출 한국기업 삼계탕 소비자체험 홍보사업	수출인프라강화
쌀	한국 쌀 초도수출 연계 홍보행사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
	한국산 쌀 수입바이어 초청 팸투어	
	전기밥솥연계 국산 쌀 수출확대사업 행사	
	상하이국제박람회 쌀 홍보관 전시	수출인프라강화
쌀 수출협의회 중국수출분과 회의		
김치	청두 고급 유통매장 김치 시식 체험 홍보행사	검역해소품목 및 대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
	베이징 유명 쇼핑몰 연계 한국김치 체험홍보행사	
	상해박람회 김치, 쌀 홍보관 운영	수출인프라강화
	중국 시장 한국김치 소비확산 및 김장체험사업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동 사업은 수출인프라 강화 사업과 중국 대상으로 한 수출 지원을 위한 마케팅, 홍보 사업의 추진에서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차별화된 사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¹⁾ 사업은 농식품 수출지원을 위하여 정보·네트워킹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팀을 파견하거나 신시장·신품목 수출업체 대상으로 현지 마켓테스트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보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과 동일한 8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

[2018년도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0	8,420	8,420	8,420	0	0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0	6,470	6,470	6,470	0	0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0	1,950	1,950	1,950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내역사업은 우리나라 농식품 미개척 지역을 대상으로 정보·네트워킹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팀(생산자·수출업체·지역 전문가 등)을 운영하고 파일럿 개척요원을 파견하는 미개척 시장 개척단 파견 57억 5,000만원과, 신시장·신품목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마켓테스트,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프론티어 업체 시장개척 활동 지원 7억 2,000만원을 합한 64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35-306

또한, 패키지로 지원하는 수출 전략형 제품인큐베이팅 내역사업은 레시피 개발, 적합 원료 탐색, 제조기술 지원 등을 통하여 권역별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예산 1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세부내역	2018년도 예산안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 미개척 시장 개척단 파견	5,750
	○ 프론티어 업체 시장개척 활동 지원	720
수출 전략형 제품인큐베이팅		1,950
합 계		8,4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프론티어 업체 시장개척 활동 및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지원대상 기업을 중소기업에 집중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2017년도 8월 기준으로 프론티어 업체 시장개척 활동 및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지원대상 기업의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지원받은 총 36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29개, 중견기업이 5개, 대기업이 2개 지원 받았으며, 프론티어 업체 시장개척 활동 및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지원금액은 중소기업에 각각 7억 7,600만원과 15억 3,100만원, 중견기업에 각각 1억 2,800만원과 1억 8,400만원, 대기업에 각각 2,600만원과 5,200만원이 지원되었다.

[기업 규모별 프론티어 업체 시장개척 활동 등 지원금액 현황(2017년 8월 기준)]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기업수	지원금액	
		프론티어 업체 시장개척 활동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중소기업	29	776	1,531
중견기업	5	128	184
대기업	2	26	52
합계	36	904	1,715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중견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프론티어 업체 시장개척 활동 지원 현황(2017년 8월 기준)]

(단위: 백만원, %)

기업명	권역	프론티어 업체 시장개척 활동 지원		수출전략형인큐베이팅		기업 규모
		총사업비	지원비율	총사업비	지원비율	
○○○	아세안	30	80	80	80	중견
△△△△(주)	중앙아시아	29.1	80	9.5	80	중견
★★주식회사	아세안, 중동	30	80	10	80	중견
□□□	아세안, 중남미	33	80	89	80	중견
◆◆	아세안, 중남미, 유럽	37.6	80	41.9	80	중견
○○○○○	아프리카	37	50	63	50	대기업
★★★★★	중남미, 유럽	15	50	40	50	대기업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구체적으로 프론티어 업체 시장개척 활동 지원과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에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경우를 살펴보면, 중견기업에서 아세안, 중앙아시아 권역 등에서 5개 기업이, 대기업에서는 아세안, 중동, 유럽, 아프리카 등의 권역에서 2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재무적·사업적 역량이 우수한 편이며, 농식품 분야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지원대상의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동 사업을 통하여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는 프론티어 업체나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지원 기업을 선정할 때,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선정을 지양하고 중소기업에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aT-PLANET 마스터 플랜 수립 사업은 양재화훼공판장부지 및 aT센터를 농업비즈니스센터, 화훼산업센터 등이 포함된 농식품 미래 산업육성 플랫폼(aT PLANET)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마스터플랜 비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보조로 지원하는 유통개선 사업운영¹⁾ 사업의 2018년도 신규 내역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내역사업의 2018년도 계획안 2억원을 정부 보조금으로 편성하였다.

[2018년도 유통개선 사업운영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유통개선 사업운영	47,020	48,361	48,361	49,508	1,147	2.4
aT-PLANET 마스터 플랜 수립	0	0	0	200	200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aT-PLANET 조성 사업은 양재화훼공판장부지 및 aT센터를 활용하여 농업 관련 단체 및 협회, 지자체사무소 등 농업관련 기관이 수도권에 집적된 농업 비즈니스센터와 산지조직화·규모화 촉진을 위한 산지마케팅보드 전용직매장 등 신유통채널을 갖춘 국산 농산물 허브센터 등을 조성하고, 화훼공판장의 절화·분화 전용 경매장 등을 대상으로 현대화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통하여 aT-PLANET 조성 규모, 총사업비, 사업방식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7076-250

나. 분석의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는 aT 센터의 종전부동산 처리 방식에 대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마스터플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전부동산²⁾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aT-PLANET 조성 사업 부지에 현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aT센터가 포함될 예정이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나주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으로 기존의 본부 청사로 사용하고 있던 aT센터의 일부는 종전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aT센터의 종전부동산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aT센터 중 6~15층(건물연면적 13,652㎡, 대지면적 4,063㎡) 및 지분토지가 종전부동산에 해당한다.

[aT센터 종전부동산 현황]

구 분	aT센터(전체)	종전부동산 (aT센터 6~15층 및 지분토지)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232-1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건물 (연면적)	59,103.85㎡(17,879평) - 지하 3층, 지상 15층	13,562㎡(4,103평) - 지상 6~15층
대지 (면적)	17,637.1㎡(5,335평)	4,063㎡(1,229평)
주요시설	전시컨벤션시설, 사무실 및 편의시설 등	농식품 관련 업체 사무실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유통업무설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국토교통부는 2009년 10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이전기관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마련하였으며, aT센터의 전시·컨벤션 시설 등을 제외한 사무동 시설의 부분매각을 결정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종전부동산”이라 함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하였고, 2015년 9월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aT센터 종전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703억 5,000만원을 산출하였다.

aT-PLANET 조성 부지에 aT센터의 종전부동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aT-PLANET 마스터플랜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aT센터 종전부동산의 매각 제외가 필요한 상태이다.

2017년 9월 기준으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국토교통부와 aT센터 종전부동산의 매각 대상 제외를 논의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해당 종전부동산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마스터플랜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국토교통부와 aT센터 종전부동산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실시하여, 동 사업을 통한 마스터플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가뭄상습 농경지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의 농업·생활·환경용수 등을 확보·공급함으로써 안전영농기반 구축과 농어촌환경개선을 도모하는 농촌용수개발¹⁾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여 보조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내역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도 추경 예산 2,965억원 대비 141억 5,500만원이 감액된 2,82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농촌용수개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촌용수개발	316,374	365,970	391,570	366,987	△24,583	△6.3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259,064	274,900	296,500	282,345	△14,155	△4.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내역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도 준공 12지구 대상 사업비 350억 4,500만원, 계속 54지구 사업비 2,431억원, 신규 5개 지구 사업비 25억원과 기본조사비 15억원, 사후평가 2억원을 합한 2,823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046-300

[2018년도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	
	지구	예산	지구	예산안
준공	10	44,560	12	35,045
계속	60	225,540	54	243,100
신규	6	3,000	5	2,500
기본조사비	6	1,800	5	1,500
사후평가	0	0	2	200
합계	82	274,900	78	282,34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동 내역사업의 기존 지구는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기존 지구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될 필요가 있다.

동 내역사업 기존지구의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거창지구의 경우 최초 사업기간이 1996~2010년이었으나, 2016년도 말 기준으로 1996~2017년으로 최초 대비 7년이 연장되었으며, 묘곡 지구의 경우 최초 사업기간이 1997~2001년이었으나, 2016년도 말 기준으로 1997~2017년으로 최초 대비 16년이 연장되었다.

또한, 총사업비 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거창 지구의 경우 최초 399억 5,700만원에서 2016년 말 기준 981억 1,9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비룡 지구의 총사업비도 최초 489억 6,000만원에서 2016년 말 기준 960억 9,100만원으로 최초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지구별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지구명	거창	마동	묘곡	비룡	가곡	감곡	성곡 (영주)	계산	백룡	백신	
사업시작 년도	1996	2001	1997	2001	2002	2003	1999	2000	2000	2008	
총 사업 비변 경	최초	39,957	84,717	58,164	48,960	48,585	48,026	37,629	49,780	40,983	99,137
	현행	98,119	125,220	95,789	96,091	60,113	52,970	52,727	58,078	60,340	104,019
최초사업 기간	1996-2010	2001-2012	1997-2001	2001-2010	2002-2011	2003-2007	1999-2003	2000-2009	2000-2005	2008-2015	
2016년말 기준 사업기간	1996-2017	2001-2018	1997-2017	2001-2017	2002-2017	2003-2017	1999-2016	2000-2017	2000-2018	2008-2018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이처럼 물가상승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이유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총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 규모는 부족하였으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이월로 인하여 편성된 예산이 적시에 투입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농업 분야 SOC 자본 축적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지구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다목적농촌용수 신규지구 착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4~2018년도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신규지구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신규지구가 착공되고 있으며, 2013년도는 16개(105억원), 2014, 2015년도는 각각 8개(40억원), 2016~2018년도(안)에는 5~6개(25~30억원)의 신규지구가 착공 또는 예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신규지구 예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개소	7	5	5	3	5	7	5	0
예산	2,100	1,500	1,500	900	1,500	3,500	2,500	0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안)	
개소	6	16	8	8	6	6	5	
예산	3,000	10,500	4,000	4,000	3,000	3,000	2,5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가뭃재해에 대비하고 농촌지역의 다양한 용수수요를 감안하여 일정수준의 신규지구 착수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다수의 지구에서 기존 지구의 완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최소한의 신규지구 착수는 유지하되 기존 지구의 완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현황

농촌기본기술연구¹⁾ 사업은 농업·농촌의 자산을 안전하고 농촌답게 관리할 수 있는데 필요한 농업기반시설과 농촌 생활서비스 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보조를 통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15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

[2018년도 농촌기본기술연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촌기본기술연구	0	0	0	1,527	1,527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조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연구개발 기관인 농어촌연구원에 보조금이 교부되고, 해당 보조금을 활용하여 농업·농촌 관련 농업기반시설, 농촌 생활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일부는 농어촌연구원이, 일부는 연구기관의 공모를 통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및 농업재해 대응 안전기술 분야 신규 2개 과제를 평균 연구개발비 3억원으로 9개월 동안 연내 연구개발이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편성된 예산 4억 5,000만원, 농업용수 및 생산기반시설 관리효율화기술 분야 신규 1개 과제를 평균 연구개발비 5억원으로 9개월 동안 연내 연구개발이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편성된 예산 3억 7,500만원과, 농촌 과소화대응 정주여건 개선기술 분야 신규 3개 과제를 평균 연구개발비 3억 1,200만원으로 9개월 동안 연내 연구개발이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편성된 예산 7억 200만원을 합한 연구개발비 15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531-450

[2018년도 농촌기반기술연구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개, 개월)

연구과제명	평균 연구개발비	과제수	개월	2018년도 예산안
기후변화 및 농업재해 대응 안전기술	300	2	9	450
농업용수 및 생산기반시설 관리 효율화기술	500	1	9	375
농촌 과소화대응 정주여건 개선 기술	312	3	9	702
합 계				1,52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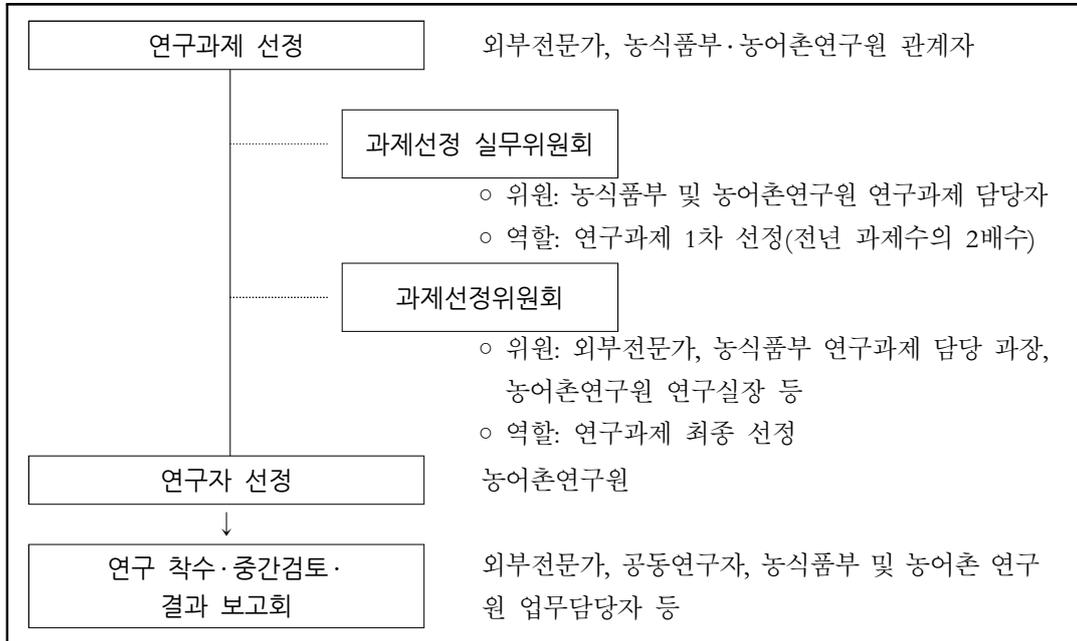
동 사업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한국농어촌공사 소속의 농어촌연구원 관계자가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동 연구개발 사업은 외부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연구원 관계자가 농업·농촌 관련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보조 사업자인 농어촌연구원이 일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농어촌연구원 내부에서 연구자도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연구원 관계자가 연구과제 선정과 과제선정 실무위원회, 과제선정위원회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농어촌연구원 관계자가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과제 선정 과정에서 연구개발 수행 기관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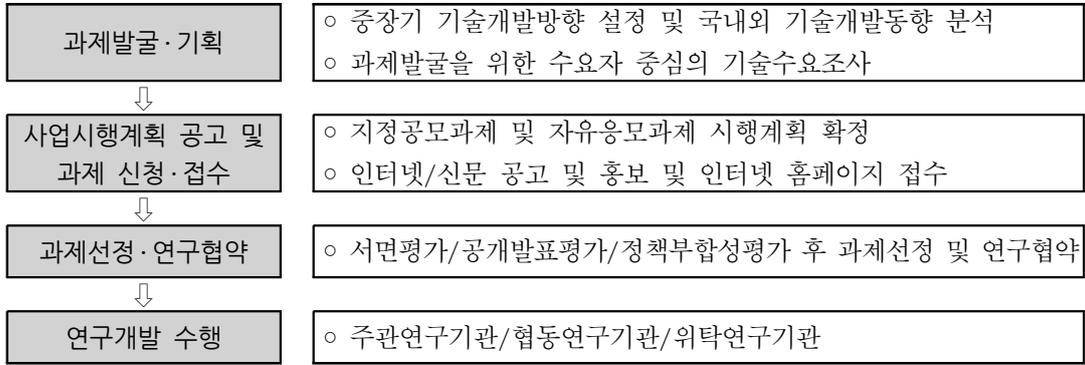
[농촌기반기술연구 사업시행체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특히, 타 농업 관련 연구개발인 농생명산업기술개발 사업의 시행체계를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장기 기술개발방향에 따른 산·학·연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과제발굴·기획과정을 실시하고, 연구개발 관리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수행할 주관·참여기관을 공모하는 형태로 연구과제 선정 과정이 추진되어, 주관·참여기관이 연구과제 선정 단계에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하여 연구개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농생명산업기술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체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따라서, 동 사업의 2018년도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할 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연구과제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농업가물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사업은 농업가물 예·경보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농업가물 정보조사, 농업가물 평가 등을 실시하는 농촌용수관리 사업¹⁾의 2018년도 신규 내역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민간보조로 수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 예산 대비 47억 1,000만원 (12.2%) 증액한 432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

[2018년도 농촌용수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촌용수관리	27,911	38,553	38,553	43,263	4,710	12.2
농업가물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0	0	0	671	671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업가물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사업은 2018년도 신규 내역사업으로 농업가물 예·경보시스템을 신규로 개발·운영하는 비용 3억 5,400만원, 농업가물 정보를 조사하는 비용 1억 1,700만원, 농업가물 평가 비용 2억원을 합한 6억 7,100만원이 2018년도 예산안에 신규 반영되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038-310

[2018년도 농업가뭄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예산안
농업가뭄 예·경보 시스템 개발·운영	354
농업가뭄 정보조사	117
농업가뭄 평가	200
합 계	67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내역사업의 농업가뭄 정보조사(1억 1,700만원)와 농업가뭄 평가(2억원)는 2017년 하반기에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에 신설될 농업가뭄센터를 통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농업가뭄센터는 농업가뭄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농업가뭄 예측·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표출 기능 고도화,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Web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뭄예경보시스템을 2018~2022년 동안 개발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르면 23억원이고 2018년 예산안은 3억원이 편성되었다.

[가뭄예경보시스템 개발 사업의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내역	산출근거	2018 예산안	총사업비
농업가뭄 시스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가뭄 예·경보 시스템 고도화 ○ 가뭄정보 통합 DB 구축 및 고도화 ○ Web/Mobile 가뭄 경보 시스템 구축 ○ 농업가뭄 정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고도화 - DB구축 및 고도화 - Web/Mobile 구축 - 분석 알고리즘 개발 	300	2,300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가뭄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타 기관, 한국수자원공사에 설치된 가뭄정보분석센터 등과 연계·운영을 통해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15년 9월 24일 부처간의 단편적 대책으로 2015년과 같은 심각한 가뭄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국무총리실의 (구)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통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자원의 체계적 통합관리 방안’을 발표하였다.

해당 방안에는 가뭄에 대응한 수자원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가뭄 예경보 시행에 필요한 수자원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 내에 가뭄정보분석센터를 신설하는 내용²⁾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2016년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내에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를 신설하여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가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가뭄 예·경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뭄예경보시스템을 구축³⁾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2018년 신규로 농업가뭄센터를 설립하고 해당 센터의 모니터링 사업비 등을 책정하여 농업 분야 가뭄예경보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한국수자원공사의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 설립 취지를 감안하여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정보 공유, 협력 등 연계·운영할 필요가 있다.

2) 관계부처 합동, 「수자원의 체계적 통합관리 방안」, 2015. 9. 24,

3. 수자원정보 통합관리 및 공유 확대

□ (정보연계 강화) 현행 「물관리 정보유통시스템(‘04~)」에
종합분석기능을 추가하여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으로 고도화*

* 각 부처의 수자원정보시스템과 연계강화하고, 강우-유출분석 등 분석기능을 보장하여 유역별 물
배분, 시설간 연계 등 의사결정 지원

□ (수자원정보센터) 가뭄 예경보 시행을 위해 수자원정보센터 구축 추진 검토(국토부, 기상, 농식품부,
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및 세부 논의)

* 기존 국토부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를 ‘수자원정보센터’로 개편 검토
(기술지원을 위해 수자원공사내 가뭄정보분석센터 신설)

3) 국토교통부, 「내년 봄 가뭄 대비 1월부터 ‘가뭄 예·경보’ 도입」, 2015. 11. 26

[국가가물정보분석센터와 농업가물센터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한국수자원공사 (국가가물정보분석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가물센터)
소 속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설 립	2016년	2017년 하반기(예정)
정 원	15명	8명(계획)
목 적	생활·공업용수 가물예경보	농업용수 가물예경보
분석 대상	22개 전국 다목적댐 대상 광역상수도망 용수공급능력 분석	공사 저수지(3,394개) 및 시군 저수지 대상 용수공급능력 분석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공업용수 가물예측 및 분석 - 생활·공업용수 가물정보분석 - 생활·공업용수 조사평가 - 가물시스템 개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수 가물예측 및 분석 - 농업용수 가물예경보 - 농업가물정보조사 - 농업가물평가 및 대책 수립
2018년 예산안	1,726	671

자료: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기상청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국가가물정보분석센터는 이미 가물에 대비한 가물예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가물센터가 신규로 구축·운영하는 농업 관련 가물예경보시스템이 기존 정보시스템과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타 정보시스템과의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상청은 ‘종합가물정보시스템’을 현재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은 가물과 관련된 누적 강수량, 강수량 순위, 무강수 일수 등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국가가물정보분석센터’는 가물현황 및 전망, 가물예경보 등 가물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고자하는 가물예경보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2017년도 각 기관이 운영하는 가뭄예경보 관련 시스템(예시)]

구분	가뭄예경보시스템	종합가뭄정보시스템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기상청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목적	농업 관련 가뭄예경보 관련 정보	기상 가뭄 관련 강수량 등 각종 정보	생활·공업용수 가뭄현황 및 전망, 가뭄예경보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수 가뭄예경보 ○ 농업가뭄정보조사 ○ 농업가뭄 정밀 분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수현황, 가뭄지수 ○ 가뭄전망정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뭄현황 ○ 가뭄예경보 ○ 용수공급시설 가뭄 현황 ○ 가뭄통계정보

자료: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 관련 가뭄에 대한 정보를 특성화하여 가뭄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의 가뭄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유사·중복을 회피할 필요가 있으며, 가뭄 관련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각 시스템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가산금¹⁾ 사업은 「농지법」 제38조제9항 및 제10항²⁾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의무자에게 일정 금액의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징수하여 농지관리기금 수입으로 편성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의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관리기금의 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 수입 계획을 2018년도 계획안에 편성하지 않고 있다.

[2018년도 가산금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가산금	2,392	0	0	0	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기금의 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금액의 3/100을, 증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 마다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납금액의 12/1000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납입금이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세목: 농지관리기금 58-581

2) 「농지법」 제38조제9항 및 제10항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하는 자가 제8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 이라한다.)을 제9항에 따라 가산금에 더하여 부과되,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증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분석의견

농지관리기금의 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 수입이 매년 일정 수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가산금 수입 계획안이 편성되지 않고 있다.

농지관리기금의 농지보전부담금 2013~2017년도 가산금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 징수결정액 128억 2,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2014년에는 47억 1,700만원, 2015년에는 38억 4,400만원, 2016년은 23억 9,200만원, 2017년 8월 기준으로 15억 9,000만원이 수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지관리기금의 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 수입 징수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2013	0	0	0	12,824	12,824	0	0
2014	0	0	0	4,717	4,717	0	0
2015	0	0	0	3,844	3,844	0	0
2016	0	0	0	2,392	2,392	0	0
2017 (8월말)	0	0	0	1,590	1,590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처럼 매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한 자의 발생으로 인하여, 농지보전 부담금 가산금 및 증가산금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동 수입을 2018년도 수입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17조3)에 따른 예산총계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따라서, 최근 몇 개년도 간의 평균 수납 금액 등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여, 매년 일정수준이 발생하고 있는 농지관리기금 가산금 수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3) 「국가재정법」 제17조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가. 현황

새만금지구(유지관리 및 부대사업)¹⁾ 사업은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만금방조제 및 배수갑문 등 농업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새만금호의 환경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법정대행 받아 새만금지구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2018년도 계획안을 2017년과 동일한 164억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새만금지구(유지관리 및 부대사업)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새만금지구 (유지관리 및 부대사업)	18,200	16,400	16,400	16,400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의 2018년도 계획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새만금 지구의 방조제·배수갑문 보수·보강, 녹지대 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물관리비 88억 8,300만원, 공유수면 환경관리, 변산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비용 37억 9,000만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조사연구, 묘목장 조성, 방조제 명소화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37억 2,700만원을 합한 164억원이 편성되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농지관리기금 4043-335

[2018년도 새만금지구(유지관리 및 부대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시설물관리	공유수면관리	수리시험 등	합계
8,883	3,790	3,727	16,400
방조제·배수갑문 보수·보강, 녹지대 관리 등	공유수면 환경관리	시설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조사연구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지역 유지관리 적립금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과 해당 적립금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²⁾ 및 제57조³⁾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농업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재원을 적립하고 있다.

2016년도 새만금사업지역 유지관리 재원 적립금 현황을 살펴보면, 새만금 사업지역 토지·건물임대료 등이 21억 1,200만원, 사료작물 재배임대료가 9억 7,900만원, 그리고 협약이행보증금 등이 41억 6,400만원으로 총 74억 2,300만원이 적립되어 있다.

-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56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입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하는 토지·건물 등의 임대료
 2. 제5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제57조(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방조제와 그 주변 부지, 농업용지 및 새만금호 일부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개발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년도 말 새만금사업지역 유지관리 자원 적립금 현황]

(단위: 백만원)

합 계	새만금 사업지역 부지임대료				기 타 (협약이행 보증금 ⁴⁾ 등)
	토지·건물 등 임대료	사료작물 재배임대료	신재생에너지 부지 사용료	소 계	
7,423	2,112	979	168	3,259	4,164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법령에 따라 규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지침인 「새만금사업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적립금 운용·관리 업무지침」 제10조⁵⁾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지역 유지관리 적립금은 새만금사업지역 유지관리 등에 사용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2013~2017년(8월말) 해당 적립금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새만금사업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나 개선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없으며, 2016년에 새만금 지역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수익사업인 신시도 임시 휴게시설 사업비에 2억 3,3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만금사업지역 유지관리 자원 적립금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용역	기타	합계
2013년	0	0	0	0	0
2014년	0	0	0	0	0
2015년	0	0	0	0	0
2016년	0	0	0	236 ⁶⁾	236
2017년 (8월말)	0	0	0	0	0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 4) 메가리조트 개발사업 협약이행보증금(2,762백만원),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협약이행보증금(1,134백만원)
- 5) 「새만금사업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적립금 운용, 관리 업무지침」 제10조 제10조(재원 적립금의 용도) 재원의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새만금사업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
 2. 새만금사업지역 농업기생산반시설 등의 개선
 3. 새만금사업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용역
 4.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여 승인한 사항
- 6) 사료작물 재배부지 사용료 환불(3백만원), 신시도 임시 휴게시설 사업비 이체(233백만원)

새만금지역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은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부 예산안을 통하여 지급하고 있는 새만금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부담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적립금 규모가 부족하고 적립금 중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부분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적립금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해당 적립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¹⁾ 사업은 한식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한식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한식확산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식재단을 통하여 보조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내역사업의 2018년도 계획안을 2017년도 대비 105억 3,900만원 대비 15억 6,700만원이 증액된 12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10,609	10,539	10,539	12,106	1,567	14.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의 2018년도 계획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한식콘텐츠 DB 구축, 장문화 유네스코 등재기반 조성, 한식진흥 정보화 운영·지원, 한식 관련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한식재단, 한식문화원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국내기반 정립 사업 계획안 46억 6,300만원, 음식관광 상품 개발·보급,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 한식홍보를 하는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 계획안 17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다.

또한, 국내외 한식교육을 실시하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 계획안 25억 2,700만원, 해외 한식당 협의체 역할 강화, 글로벌 한식산업조사 및 DB 활용, 한식문화 해외홍보를 실시하는 한식 해외 확산 사업 계획안 31억 6,600만원이 포함되어 총 세부사업 기준으로 121억 6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834-332

[2018년도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의 계획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2018년 예산안
국내기반정립	○ 한식콘텐츠 DB 구축(235), 장문화 유네스코 등재기반 조성(90), 한식진흥 정보화 운영·지원(491), 한식 관련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60), 추진기관 운영(한식재단, 한식문화관)(3,787)	4,663
음식관광 활성화	○ 음식관광 상품 개발·보급(500),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 한식홍보(1,250)	1,750
전문인력 양성	○ 국내 한식교육(926), 해외 한식교육(1,601)	2,527
한식 해외 확산	○ 해외 한식당 협의체 역할 강화(540), 글로벌 한식산업조사 및 DB 활용(626), 한식문화 해외홍보(2,000)	3,166
합계		12,10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의 보조금 실집행에 있어,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내 실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한식재단의 2014~2017년(8월)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보조금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한식재단은 2014년은 계획현액 127억 9,300만원 중 92억 2,700만원을 집행(계획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 72.1%)하여 이월액이 30억 2,600만원 발생하였으며, 2015년도 계획현액 158억 100만원 중 114억 8,300만원을 집행(계획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 72.7%)하여 이월액이 39억 700만원 발생하였다.

또한, 2016년도 한식재단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계획현액 146억 3,900만원 중 112억 4,700만원을 집행(계획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 76.6%)하여, 이월액 25억 6,900만원과 불용액 8억 2,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17년 8월 기준으로 계획현액 131억 800만원 중 54억 3,300만원을 집행하여 계획현액 대비 집행율이 41.4%로 저조한 상태이다.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의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A)							
2014	12,639	12,639	154	12,793	9,227	73.0	72.1	3,026	540
2015	11,000	12,775	3,026	15,801	11,483	89.9	72.7	3,907	411
2016	10,732	10,732	3,907	14,639	11,247	104.5	76.6	2,569	823
2017 (8월)	10,539	10,539	2,569	13,108	5,433	51.6	41.4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처럼, 동 사업의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은 해외 관련 한식홍보 사업이나 한식정보 조사 사업의 지연 등의 이유로 일부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은 동 사업의 연례적인 이월액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내 실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사업¹⁾은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고효율 농축산 자재를 개발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자재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연구개발 관리기관으로 정부 출연금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2018년도 신규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2018년 예산안을 9억 6,400만원 편성하였다.

[2018년도 농축산자재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축산자재 산업화 기술개발	0	0	0	964	964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에너지절감자재 관련하여 1개 신규 과제를 연간 연구개발비 2억 9,600만원을 기준으로 9개월 동안 연구개발하는데 필요한 2억 2,200만원, 환경부하 저감자재 관련 1개 신규과제를 연간 연구개발비 4억 7,500만원을 기준으로 9개월 동안 연구개발하는데 필요한 3억 5,600만원, 노동력 절감자재 관련하여 1개 신규과제를 연간 연구개발비 4억 7,500만원을 기준으로 9개월 동안 연구개발하는데 필요한 3억 5,600만원을 합한 세부사업 기준 9억 6,400만원이 2018년도 출연금으로 신규 편성되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2531-447

[2018년도 농축산자재 산업화 기술개발 예산안의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과제	연구개발비	개월	2018 예산안
에너지절감자재	1	296	9	222
환경부하 저감자재	1	475	9	356
노동력 절감자재	1	475	9	356
기획평가관리비				30
합 계				96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농촌진흥청에서도 농자재 관련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기술기획평가원은 타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과 동 사업이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법」 제2조제2호사목2)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농기계·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표준규격 설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촌진흥청과 소속 기관은 농업기초기반연구(1131-300) 사업 등을 통하여 에너지절감자재 관련 ‘에너지절감형 고효율 버섯 재배 시스템 개발’, ‘투광성 보온커튼에 의한 조조 난방에너지 절감 및 작물재배 효과 분석’ 등의 연구과제를 추진하였다.

2) 「농촌진흥법」 제2조제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바. (생략)

사. 농기계·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표준규격 설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아.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한, 환경부하 저감자재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한 단감 해충방제 기술 개발’, ‘친환경 들깨잎 민달팽이 및 담배거세미나방 방제용 친환경 자재 개발’ 등을 추진하여 농촌진흥청이 동 사업에서 2018년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에너지 절감자재, 환경부하 저감자재, 노동력 절감자재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축산자재 산업화 기술개발과 유사한 농촌진흥청 연구과제(예시)]

관련성	연구과제명	연구개발 기관
에너지 절감자재	에너지절감형 고효율 버섯 재배 시스템 개발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
	투광성 보온커튼에 의한 조조 난방에너지 절감 및 작물재배 효과 분석	농촌진흥청
	산업체부산물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 온실 내 탄산가스 공급 기술 연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환경부하 저감자재	식물유래 친환경 작물보호제 품질관리기술 개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고수, 길초근 등 유래 기능성 물질을 이용한 해충 방제기술 개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친환경 들깨잎 민달팽이 및 담배거세미나방 방제용 친환경 자재 개발	농촌진흥청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한 단감 해충방제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 (전북대학교)
	인삼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미생물제제 개발 및 실용화 연구	농촌진흥청 (강원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노동력 절감자재	딸기 고설식 양액재배 기술개발	농촌진흥청
	벼 대단위 규모별 생력기계화 종합기술 개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자료: 농촌진흥청,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2018년도 동 사업의 신규과제를 선정할 때,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사업과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부처간 사업협의 등을 실시하여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림기술기획평가원은 동 사업의 신규 과제 연구개발비가 연내 실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중에서 농림기술기획평가원이 연구개발 관리기관인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 2017년 신규 연구과제는 예산 편성 시 연내 9개월의 연구개발이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연구개발비가 편성되었으나,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탈모치료용 혈행 개선식품 핵심소재 발굴 및 산업화 기술개발’ 등의 연구과제는 2017년 8월 2일에 공고가 추진 중이고 2017년 9월까지 주관·참여기관과의 연구개발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연내 가능한 연구개발 기간은 9개월에 못 미칠 예정이다.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2017년 신규 연구과제(2017년 9월 기준)]

(단위: 개월)

세부사업	연구과제	공고일 (공고차수)	예산편성 상 연구개발 기간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사업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탈모치료용 혈행 개선식품 핵심소재 발굴 및 산업화 기술 개발	2017. 8. 2 (2차)	9
	국산밀 소비 촉진을 위한 소재 품질 향상 및 활용기법 개발		9
농생명산업 기술개발	화훼 신화환대 개발 및 화환 유통 활성화 방안 연구	2017. 8. 22 (2차)	9
	생강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		9
	국내산 약용식물을 이용한 배뇨기능 개선 기능성 제품 개발		9
	농지 침수예방 및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IOT 기반 스마트 배수시스템 개발		9
첨단생산 기술개발	발농업용 지능형 로봇개발	2017. 8. 22 (2차)	9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또한, ‘농생명산업기술개발’, ‘첨단생산기술개발’ 사업의 ‘국내산 약용식물을 이용한 배뇨기능 개선 기능성 제품 개발’ 등의 일부 신규과제도 2017년 8월 22일에 공고가 추진 중으로 연내 가능한 연구개발기간은 예산 편성 시 기간인 9개월에 못 미칠 예정으로 연내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주관·참여기관과의 협약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기존 과제와 달리 신규 과제의 경우 사업과제 및 주관·참여기관 선정 등 사전 준비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 사업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연구개발 관리기관인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상 연내 연구개발이 가능한 기간을 9개월로 가정하고 있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2017년도 일부 신규 연구과제와 같이 사업추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¹⁾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농식품 분야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영세 농식품 관련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연구개발 관리기관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정부 출연금으로 30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0	0	0	3,043	3,043	순증
국가연구개발 성과후속지원	0	0	0	1,470	1,470	순증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연구개발성과후속지원 사업은 농식품 분야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산업화 단계로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연구개발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으로 14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내역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년도 신규 6개 과제는 평균 연구개발비 2억 2,000만원에 연내 9개월 동안 연구개발이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단년도 신규 24개 과제는 평균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적용하여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531-448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성과후속지원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개, 개월, 백만원)

구분	과제	평균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2018년도 예산안
다년도 상반기 과제	6	220	9	990
단년도 과제	24	20	12	480
합 계				1,47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동 내역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의 공공연구 후속 지원 사업과 유사·중복되므로 타 사업과 차별화된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4602-402)’에서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하여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화 유망 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기술 업그레이드 R&D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소관 공공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하여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은 농식품산업체의 R&D 기획역량 강화 및 이전기술 상용화에 소요 되는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1138-300)’을 추진 중이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후속지원과 유사한 사업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국가연구개발성과후속지원)	공공연구성과기술 사업화지원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사업시행 주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등)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상	○ 농식품 관련 국가연구 개발 기술	○ 공공연구성과 기술	○ 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 청 등)에서 개발한 기술
사업내용	○ 추가 연구개발 제공 ○ 실용화·산업화 지원	○ 추가 연구개발 제공 ○ 기술컨설팅 등	○ R&D 기획역량 강화 ○ 시제품 개발 등
비목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2018년도 예산안	1,470	29,034	12,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 사업은 전체 산업 분야의 공공연구기술 중 실용화가 유망한 기술에 대해 추가 연구개발과 기술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어, 동 내역사업이 농식품 분야 기술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사업목적, 사업내용이 유사하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사업은 농식품 국가연구개발을 통하여 산출된 공공기술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등의 실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동 내역사업과 사업 부처가 다르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대상, 기술 분야에서 유사하다.

특히,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실용화기술R&D지원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이전받은 기술(특허, 실용신안)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농식품산업체를 상대로 추가연구개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농업 분야에서 ‘부분경운장치를 부착한 이앙기 개발’, ‘무인자동주행시스템이 적용된 발작물용 케도식약제살포기 개발’ 등 다수의 추가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농업기술실용화기술R&D지원을 통한 농업 분야 실용화 연구과제(예시)]

(단위: 백만원)

분야	실용화 연구과제	총사업비
농업	가변 블레이드를 갖는 500W급 수직축 소형 농업용 풍력발전기 개발	100
	무인자동주행시스템이 적용된 밭작물용 궤도식 약제 살포기 개발	100
	부분경운장치를 부착한 이앙기 개발	100
	제주산 돈육의 비선호 부위를 이용한 습식 육포 개발	100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수의 기관에서 농업 실용화 관련 유사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연구개발 성과후속 지원 사업이 타 부처 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¹⁾ 사업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방, 검역, 진단, 방역 등에 관련된 기술개발을 정부 출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연구개발관리기관으로 동 사업의 연구과제를 관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 예산 대비 56억 2,300만원 증액된 13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 중 내역사업인 사회문제해결형 감염병 대응기술개발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인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으로 AI·구제역 관련 사회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며,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공통 R&D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으로 방역 관련 범부처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감염모델 확립, 야외 방역용 장비 개발 등의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2018년도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7,598	7,724	7,724	13,347	5,623	72.8
사회문제해결형 감염병대응기술개발	2,688	2,483	2,483	2,764	281	11.3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공동연구개발	0	0	0	1,200	1,200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 두 내역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문제해결형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 사업은 계속 3개 과제의 평균 연구개발비 2억 8,200만원을 기준으로 연내 연구 가능기간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2531-436

10개월을 기준으로 산출된 7억 600만원과 종료 5개 과제의 평균 연구개발비 2억 9,800만 원을 책정하여 연내 연구 가능기간 12개월을 기준으로 산출된 14억 9,000만원과 신규 3개 과제의 평균 연구개발비 2억 5,200만원을 책정하여 연내 연구 가능기간 9개월을 기준으로 산출된 5억 6,800만원을 합한 27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다.

[사회문제해결형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개, 백만원, 개월)

구 분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			
	과제수	연구 개발비	연내 기간	예산	과제수	연구 개발비	연내 기간	예산안
계속	5	425	10	1,773	3	282	10	706
기일치	3	196	12	590	0	0	0	0
종료	1	120	12	120	5	298	12	1,490
신규	0	0	0	0	3	252	9	568
합계	9	0	0	2,483	11	0	0	2,76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연계 범부처감염병공동연구개발 사업은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신규 3개 과제를 평균 연구개발비 5억 3,300만원을 책정하여 연내 연구 가능기간 9개월을 기준으로 산출된 12억원이 편성되었다.

[방역연계 범부처감염병공동연구개발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개, 백만원, 개월)

구 분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			
	과제수	연구 개발비	연내 기간	예산	과제수	연구 개발비	연내 기간	예산안
신규	0	0	0	0	3	533	9	1,2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두 내역사업 신규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비가 연내에 주관·참여기관 단계의 실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6~2017년도에 수행된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사업 신규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을 살펴보면, 2017년에 신규로 추진된 ‘소, 돼지, 산란계 농장 차단방역 매뉴얼 개발’, ‘드론과 CCTV를 이용한 조류 독감 예찰 플랫폼 개발’ 등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2017년 5월 29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2017년 연내에 실제 가능한 연구기간은 7개월(2017. 6.~2017. 12.)이다.

또한, 2016년에 추진된 신규 연구과제인 ‘ICT 기반 오리사육농가 사육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연구’ 등도 연구기간이 2016년 5월 19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약 7개월 수준이다.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의 신규 연구과제 연구기간(예시)]

연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2017	소, 돼지, 산란계 농장 차단방역 매뉴얼 개발	2017. 5. 29 ~ 2018. 12. 31
	드론과 CCTV를 이용한 조류 독감 예찰 플랫폼 개발	2017. 5. 29 ~ 2018. 12. 31
	색전이 센서 개발	2017. 5. 29 ~ 2018. 12. 31
	동결기 FMD, AI 방역용 부동 소독제의 효력향상 연구	2017. 5. 29 ~ 2018. 12. 31
2016	ICT 기반 오리사육농가 사육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연구	2016. 5. 19 ~ 2018. 12. 31
	원격오리농장 사육관리 모니터링시스템 및 차량이동감지 시스템 개발	2016. 5. 19 ~ 2018. 12. 31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www.ntis.go.kr)

이처럼, 연내 실제 가능한 연구기간이 예산 편성 기간에 못 미치는 7개월인 이유는 신규 연구과제의 추진 전에 연구과제 공모, 실제 연구를 추진할 주관·참여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협약체결 등 사전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2016~2017년의 경우 이러한 사전 준비 과정이 약 5개월 소요되었다.

그러나, 2018년도 두 내역사업에서 예산상 신규 연구과제의 연내 가능한 연구기간은 9개월로, 2016~2017년도 동 사업 신규 연구과제의 실제 연구 가능기간(7개월)을 감안할 때 주관·참여기관 단계에서 연구개발비의 연내 실집행이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사회문제해결형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 사업과 범부처감염병공동연구개발 사업의 신규과제 연구개발비가 주관·참여기관 단계에서 연내 실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면허료 및 수수료¹⁾ 세입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46조²⁾에 따른 식물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품종보호료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제1항제3호³⁾에 따라 동물의 수출입 검역을 받으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역수수료 등을 징수하여 세입으로 편성한 세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세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도 예산과 동일한 2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2018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면허료 및 수수료	1,014	2,000	2,000	2,000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 1) 세목: 일반회계 65-651
- 2) 「식물신품종보호법」 제46조
제46조(품종보호료) ① 제54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보호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품종보호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④ 품종보호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금액과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제1항제3호
제4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3. 제36조제1항, 제39조제1항 본문 또는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받으려는 자

나. 분석의견

동물을 수출입할 때 필요한 검역에 대한 수수료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수출입 식물을 운반하는 선박 검역수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자체 수입으로 편성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식물방역법」 제28조의2제2항4) 및 같은 법 제18조5)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식물검역관이나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을 통하여 수출입 식물을 운반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6)에 따라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식물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한 검역수수료를 선박종류, 선박중량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선박 검역수수료 징수 기준]

선박종류(형태별)	선박중량기준 (gross tonnage)	기본 수수료(만원)
컨테이너선	2만톤 미만	100
	2만톤~3만톤 미만	150
	3만톤~5만톤 미만	200
	5만톤~7만톤 미만	250
	7만톤 이상	300
차량운반선	2.5만톤 미만	150
	2.5만톤~4만톤 미만	200
	4만톤 이상	250
벌크선	2.5만톤 미만	150
	2.5만톤~4만톤 미만	200
	4만톤 이상	250
기타 선박류	2.5만톤 미만	150
	2.5만톤~4만톤 미만	200
	4만톤~7만톤 미만	250
	7만톤 이상	300

자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선박검사수수료 징수 업무 규정」

- 4) 「식물방역법」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2(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② 식물검역관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수출하는 자 또는 운송인 등이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등 운송수단(그 운송수단에 싣는 컨테이너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
- 5) 「식물방역법」 제18조
제18조(검역의 방법 등) 제7조의3, 제12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검사·검역의 방법, 검사·검역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검역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6)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
제29조의2(검역 수수료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이러한 선박 검역수수료를 자체 수입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2012~2017년(8월말) 선박 검역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에 42억 6,300만원, 2013년에 39억 4,800만원, 2015년에 50억 9,800만원, 2016년 50억 7,700만원이 발생하여 40~50억원 수준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선박 검역수수료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8월말)
식물 검역수수료 수입	4,263	3,948	4,514	5,098	5,077	3,858

자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그러나, 식물 검역 업무는 수출입 식물을 검역하여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물방역법」 제6조7)에 따른 식물 검역 등 병해충위험분석 주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검역 업무는 국가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출입 식물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한 검역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물방역법」에 따라 공공기관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게 국가사무를 대행시키는 민간 대행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국가재정법」 제17조8)에 따른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민간 대행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 위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에 교부하고, 대행 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 등은 사업시행의 주체인 국가의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선박 검역수수료를 자체 수입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어 부적절한 면이 있다.

7) 「식물방역법」 제6조

제6조(병해충위험분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평가(이하 "병해충위험분석"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8) 「국가재정법」 제17조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수납하고 있는 수입 식용 축산물 검역검사 수수료는 전액 국고 세입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수입 식용 축산물 검역검사를 수행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3⁹⁾에 따라 수입 검역을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를 납부 받고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해당 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액을 연말에 반납하고 있고, 검역검사 업무 필요비용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별도 사업(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으로 교부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선박 검사수수료를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¹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자체 수입으로 편성하고 있는 선박 검사수수료를 세입으로 편성하고, 별도 사업을 통하여 선박 검역업무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해당 공공기관에 교부하는 방식의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9)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제45조의3(수수료의 납부방법) ① 수수료의 납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2.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신용카드
-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장(방역본부장에게 납부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시·도지사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10) 다만,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2012년 설립되어 사무실 등 기본인프라의 구축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기반이 구축된 이후 정확한 사업비 산정이 필요하며, 현재의 자체수입 편성 후 자체 사업 실시 방식과 세입 편성 후 국가 예산을 교부받은 후 사업을 실시하는 방식 간의 효율성 검토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가. 현황

농식품모태펀드 출자¹⁾ 사업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 7조²⁾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된 농식품모태펀드에 출자하여 농식품경영체의 투자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사업을 통하여 농림수산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연구 및 농식품모태펀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도 예산 200억원 대비 100억원이 감액된 100억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30,000	20,000	20,000	10,000	△10,000	△5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 1150-300

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이하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우수한 벤처농업인을 발굴·투자하는 농업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용펀드를 11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정부출자금 100억원(정부출자비율 90%)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사업의 계획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개)

구분	2017년 계획				2018년 계획안			
	펀드 조성액	정부 출자 비율	펀드수	2017 예산	펀드 조성액	정부 출자 비율	펀드수	2017 예산
일반펀드	20,000	50	1	10,000	0	0	0	0
특수목적펀드	14,300	70	1	10,000	0	0	0	0
농업벤처펀드	0	0	0	0	11,000	90	1	10,000
합 계	0	0	0	20,000	0	0	0	10,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농식품모태펀드는 펀드 조성액에 비하여 실제 기업으로 투자된 금액의 비율이 저조하므로, 2018년도 신규 펀드의 투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모태펀드가 실제 농식품경영체 투자 촉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펀드 운영기관(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의해 자펀드가 결성된 후, 해당 펀드 조성액이 기업으로 투자되는 실제 기업 투자실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2010~2017년(7월말) 농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 분야별 펀드 현황을 살펴보면, 농축산식품펀드의 경우 총 3,055억원의 펀드 조성액 중 1,331억 7,000만원이 농식품경영체 등 기업에 투자되어 조성액 대비 투자비율이 43.6%에 불과하다.

또한, 6차산업펀드도 펀드 조성액 500억원 중 198억원이 농식품경영체 등 기업에 투자되어 조성액 대비 투자비율이 39.6%이며, 수출펀드도 펀드 조성액 330억원 중 113억원이 투자되어 조성액 대비 투자비율이 34.2%로 농식품모태펀드의 펀드 조성액 대비 농식품경영체 등에 대한 기업 실투자 실적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농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 분야별 펀드 현황]

(단위: 백만원, %)

투자 분야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7월)	계	투자비율 (B/A)
농림축산 펀드	펀드규모(A)	20,000	40,000	32,000	0	0	0	0	0	92,000	84.1
	투자금액(B)	17,840	33,700	25,850	0	0	0	0	0	77,390	
	투자기업수(건)	8	28	23	0	0	0	0	0	59	
농축산식품 펀드	펀드규모(A)	20,000	0	0	45,000	61,000	64,000	75,500	40,000	305,500	43.6
	투자금액(B)	17,520	0	0	37,910	39,840	28,200	9,700	0	133,170	
	투자기업수(건)	9	0	0	32	27	15	4	0	87	
식품펀드	펀드규모(A)	25,000	37,000	32,000	0	0	0	0	0	94,000	83.4
	투자금액(B)	18,700	31,870	27,860	0	0	0	0	0	78,430	
	투자기업수(건)	11	26	23	0	0	0	0	0	60	
8대프로젝트 펀드	펀드규모(A)	32,000	20,000	0	0	0	0	0	0	52,000	78.9
	투자금액(B)	25,000	16,020	0	0	0	0	0	0	41,020	
	투자기업수(건)	4	15	0	0	0	0	0	0	19	
소형프로젝트 펀드	펀드규모(A)	0	0	20,000	20,000	10,000	10,000	0	0	60,000	77.8
	투자금액(B)	0	0	18,380	18,100	8,200	2,000	0	0	46,680	
	투자기업수(건)	0	0	15	18	7	2	0	0	42	
6차산업펀드	펀드규모(A)	0	0	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39.6
	투자금액(B)	0	0	0	9,000	4,800	2,500	3,500	0	19,800	
	투자기업수(건)	0	0	0	9	6	3	2	0	20	
에그로씨드 펀드	펀드규모(A)	0	0	0	0	10,000	0	0	0	10,000	65.5
	투자금액(B)	0	0	0	0	6,550	0	0	0	6,550	
	투자기업수(건)	0	0	0	0	10	0	0	0	10	
R&D펀드	펀드규모(A)	0	0	0	0	10,000	0	0	0	10,000	67.0
	투자금액(B)	0	0	0	0	6,700	0	0	0	6,700	
	투자기업수(건)	0	0	0	0	8	0	0	0	8	
수출펀드	펀드규모(A)	0	0	0	0	13,000	10,000	10,000	0	33,000	34.2
	투자금액(B)	0	0	0	0	5,200	3,600	2,500	0	11,300	
	투자기업수(건)	0	0	0	0	5	3	2	0	10	

(단위: 백만원, %)

투자 분야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7월)	계	투자비율 (B/A)
창업아이 디어펀드	펀드규모(A)	0	0	0	0	0	12,000	0	0	12,000	32.9
	투자금액(B)	0	0	0	0	0	3,950	0	0	3,950	
	투자기업수(건)	0	0	0	0	0	5	0	0	5	
스마트팜펀 드	펀드규모(A)	0	0	0	0	0	0	50,000	0	50,000	22.0
	투자금액(B)	0	0	0	0	0	0	11,000	0	11,000	
	투자기업수(건)	0	0	0	0	0	0	4	0	4	
ABC 펀드	펀드규모(A)	0	0	0	0	0	0	0	42,000	42,000	0
	투자금액(B)	0	0	0	0	0	0	0	0	0	
	투자기업수(건)	0	0	0	0	0	0	0	0	0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농식품모태펀드의 기업 실투자 실적이 저조하여, 기존의 펀드 조성액 여유자금이 과다 보유된 상태로 2018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농업벤처펀드의 경우에도 실투자가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2018년 투자될 신규 펀드의 실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³⁾.

3)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펀드 조성 후 각 자펀드가 투자처를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예산 투입 후 실제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 현황

농업·농촌교육훈련 사업은 미래농업 선도고교 지원, 농대영농창업특성화사업이나 전문 농업경영체와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농업·농촌교육훈련 지원¹⁾ 사업²⁾의 내역사업으로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이 민간보조로 수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내역사업의 2018년 예산안을 2017년 대비 23억 900만원을 증액한 305억 1,200만원 편성하였다.

[2018년도 농업·농촌교육훈련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업·농촌교육훈련 지원	33,977	33,503	33,503	38,232	4,729	14.1
농업·농촌교육훈련	28,158	28,203	28,203	30,512	2,309	8.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동 사업을 통하여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추진할 필요가 있는 농업 관련 유통·마케팅 교육 사업을 실시하여, 농업 교육 사업의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5월 27일에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수산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 중복을 조정하였으며, 해당 방안에 따르면 농림수산물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36-331

2)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 현장실습중심의 전문교육을 통해 신지식·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체 육성하는 사업이다.

교육문화정보원은 종합적인 미디어 홍보 기능과 일반농가·농대생 대상 교육을 담당하고, 교육기능은 기관별로 전문화하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유통·마케팅 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농업 교육 분야의 기능조정이 이루어졌다.³⁾

이에 따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소관 기관인 농식품유통교육원을 통하여 유통·마케팅 관련 교육인 6차산업화, 판로확대 교육, 창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마케팅 교육으로 ‘홈쇼핑 활용 및 진출 전략’, ‘농식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관리 전략’ 등을, 창업교육으로 ‘청년 외식창업 경영인 양성’을, 6차산업 관련 교육으로 ‘6차 산업화 사업기획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마케팅, 창업, 6차산업 교육(예시)]

분야	과정	교육일시
마케팅 교육	홈쇼핑 활용 및 진출 전략	2017. 4
	농식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관리 전략	2017. 10
	SNS/블로그 활용 농식품마케팅	2017. 11
창업교육	청년 외식창업 경영인 양성	2017. 5
	농식품 창업 교육	2017. 6 ~ 2017. 7
6차산업	6차 산업화 사업기획 실무	2017. 10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동 사업을 통하여 창업경영, 농촌개발거버넌스 등 분야의 교육을 실시할 농업교육 관련 단체를 공모로 선정하고, 해당 기관이 농업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농업경영인 능력향상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도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이 실시한 농업경영인 능력향상교육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창업경영 분야에서 마케팅 교육 성격인 ‘농식품 On-Line시장 개척과정’, ‘농산물 상품개발 및 판로개척’ 등의 과정을, 6차산업 분야에서 ‘농식품의 6차산업화 인력양성과정’, ‘6차산업 치유농장 창업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 2015. 5. 27

○ 미디어 홍보기능은 농정원에서 종합, 교육기능*은 기관별 전문화

* (a1)유통·마케팅, (농공)농지은행, (한식재단)한식세계화, (농정원)일반농가농대생

[2017년도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동 사업 중 창업, 6차산업 교육(예시)]

분야	과정	교육일시
창업경영	농식품 On-Line시장 개척과정	2017. 3 ~ 2017. 11
	농산물 상품개발 및 판로개척	2017. 5. ~ 2017. 6.(1기)
	현장코칭형 청년 농산업창업 전문가 양성과정	2017. 5 ~ 2017. 10
6차산업	농식품의 6차산업화 인력양성과정	2017. 5 ~ 2017. 6
	6차산업 치유농장 창업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	2017. 6 ~ 2017. 10
	셰프와 함께하는 6차산업형 메뉴개발 및 운영전략	2017. 4 ~ 2017. 5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이 실시하고 있는 해당 교육 과정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마케팅, 창업, 6차산업 분야 교육과 유사·중복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기능재조정을 통하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유통·마케팅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취지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마케팅 관련된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교육 사업을 조정하여 공공기관간 기능 유사·중복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말산업육성지원¹⁾ 사업은 승마대회 실시, 승마시설 설치, 말사육 지원, 말산업인력양성기관 지원 등을 실시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보조 또는 용자로 실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2018년도 계획안을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45억 8,700만원 대비 57억 300만원이 감액된 28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말산업육성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말산업육성지원	32,149	34,551	34,587	28,884	△5,703	△16.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의 2018년도 계획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농어촌형승마시설 설치, 말산업특구지원, 승마길조성 등을 추진하는 말산업기반 조성 사업 계획안이 104억 5,000만원, 유소년 대상 승마 보급, 취약계층 승마지원, 국산마 생산기술선진화 등을 수행하는 경쟁력 강화 사업이 139억 8,400만원, 말산업 관련 취·창업지원센터 운영,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말자격시험 등을 운영하는 교육·홍보 강화 사업이 44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총 288억 8,400만원의 계획안이 편성되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축산발전기금 3733-315, 321

[2018년도 말산업육성지원 사업의 계획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2018 계획안
말산업기반 조성	농어촌형승마시설 설치, 말산업특구지원, 승마길조성 등	10,450
경쟁력 강화	유소년 대상 승마 보급, 취약계층 승마지원, 국산마 생산기술선진화 등	13,984
교육·홍보 강화	취·창업지원센터 운영,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말자격시험 등	4,450
합 계		28,88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동 사업 및 한국마사회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하여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목표 달성 성과가 미흡하여 개선의 필요가 있다.

「말산업 육성법」 제5조2)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2012년도에 ‘제1차 말산업육성 5개년 (’12~’16) 종합계획’을 실시하면서 세부적으로 승마장수, 체험승마인구, 사육두수, 사육농가, 관련일자리, 전

2) 「말산업 육성법」 제5조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8.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9.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문인력 양성을 세목표로 설정하였으나, 2016년 말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육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2016년도 말산업육성 목표 대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승마장수 목표는 500개였으나 결과는 479개로 목표 대비 96%를 달성하여 양호하나, 체험승마인구는 목표는 150만명이었으나 결과는 약 89만명으로 달성률이 59%에 불과하며, 사육두수도 목표 대비 달성률이 54%, 사육농가도 목표 대비 달성률이 65%에 불과하는 등 다수의 말산업 육성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말산업육성 목표 대비 추진 실적]

(단위: %)

구분	2013년 실제	2014년 실제	2015년 실제	2016		달성률 (B/A)
				목표 (A)	실제 (B)	
승마장수(개소)	331	395	457	500	479	96
체험승마인구(명)	739,449	771,076	830,406	1,500,000	890,951	59
사육두수(두)	24,467	25,819	26,330	50,000	27,116	54
사육농가(호)	1,608	1,808	1,829	3,000	1,960	65
전문인력 양성(명)	233	461	602	1,100	788	72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향후에도 동 사업과 한국마사회 자체 예산 등을 통하여 말산업 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도에 제2차 말산업육성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세부 목표 달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시설 목표인 승마장수(개소)는 달성률이 양호하나, 체험승마인구, 전문인력 양성 목표 등의 경우 달성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동 사업의 예산 집행을 전문인력 양성, 교육, 승마인구 확대 등의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

I 예산안 개요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2018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및 1개 기금(수산발전기금)으로 구성된다.

2018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수입은 9,3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억원(1.4%)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682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35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2,297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03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38억원, 수산발전기금 6,019억원이다.

[2018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342,302	305,641	305,641	335,691	30,050	9.8
- 일반회계	52,718	56,804	56,804	68,243	11,439	20.1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20,758	17,975	17,975	23,543	5,568	31.0
- 교통시설특별회계	231,573	220,332	220,332	229,746	9,414	4.3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1,073	3,817	3,817	3,840	23	0.6
- 지역발전특별회계	10,477	6,713	6,713	10,319	3,606	53.7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25,703	0	0	0	0	0
기 금	499,578	644,819	644,819	601,918	△42,901	△6.7
- 수산발전기금	499,578	644,819	644,819	601,918	△42,901	△6.7
합 계	841,880	950,460	950,460	937,609	△12,851	△1.4

주: 총수입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2018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지출은 4조 9,464억원으로 전년 대비 446억원(0.9%)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조 7,002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002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1조 3,664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4,007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506억원, 수산발전기금 5,282억원이다.

[2018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4,184,506	4,387,805	4,402,389	4,418,118	15,729	0.4
- 일반회계	1,382,354	1,562,022	1,572,106	1,700,228	128,122	8.1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884,908	868,923	873,423	900,181	26,758	3.1
- 교통시설특별회계	1,389,688	1,486,726	1,486,726	1,366,405	△120,321	△8.1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44,847	43,588	43,588	50,585	6,997	16.1
- 지역발전특별회계	461,413	426,546	426,546	400,719	△25,827	△6.1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21,296	0	0	0	0	0
기 금	525,525	588,579	588,579	528,232	△60,347	△10.3
- 수산발전기금	525,525	588,579	588,579	528,232	△60,347	△10.3
합 계	4,710,031	4,976,384	4,990,968	4,946,350	△44,618	△0.9

주: 총지출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나. 세입·세출

2018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1조 4,724억원으로 전년 대비 818억원 (5.3%) 감소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568억원에서 2018년 682억원으로 20.1% 증가하였으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2017년 180억원에서 2018년 236억원으로 31.0% 증가하였고, 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17년 14,867억원에서 2018년 13,664억원으로 7.0% 감소하였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는 2017년 38억원에서 2018년 38억원으로 0.6% 증가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는 67억원에서 103억원으로 53.7% 증가하였다.

[2018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2,718	56,804	56,804	68,243	11,439	20.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758	17,975	17,975	23,543	5,568	31.0
교통시설특별회계	1,761,194	1,486,726	1,486,726	1,366,405	△102,481	△7.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073	3,817	3,817	3,840	23	0.6
지역발전특별회계	10,477	6,713	6,713	10,319	3,606	53.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5,192	0	0	0	0	0
합 계	1,919,412	1,554,195	1,554,195	1,472,350	△81,845	△5.3

주: 총계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2018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5조 2,914억원으로 전년 대비 4,105억원 (7.2%) 감소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2조 7,319억원에서 2018년 2조 4,405억원으로 10.7% 감소하였으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2017년 1조 131억원에서 2018년 1조 332억원으로 2.0% 증가하였고, 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17년 1조 4,867억원에서 2018년 1조 3,664억원으로 8.1% 감소하였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는 2017년 436억원에서 2018년 506억원으로 16.1% 증가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는 4,265억원에서 4,007억원으로 6.1% 감소하였다.

[2018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652,108	2,721,815	2,731,899	2,440,482	△291,417	△10.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52,008	1,008,647	1,013,147	1,033,237	20,090	2.0
교통시설특별회계	1,389,688	1,486,726	1,486,726	1,366,405	△120,321	△8.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4,847	43,588	43,588	50,585	6,997	16.1
지역발전특별회계	461,413	426,546	426,546	400,719	△25,827	△6.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0,762	0	0	0	0	0
합 계	5,640,826	5,687,322	5,701,906	5,291,428	△410,478	△7.2

주: 총계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발전기금의 수입계획안은 7,269억원으로 전년 대비 408억원(5.3%) 감소하였다.

[2018년도 해양수산부 기금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수산발전기금	808,605	767,731	767,731	726,928	△40,803	△5.3

주: 총계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2018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발전기금의 지출계획안은 7,269억원으로 전년 대비 408억원(5.3%) 감소하였다.

[2018년도 해양수산부 기금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수산발전기금	808,605	767,731	767,731	726,928	△40,803	△5.3

주: 총계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라.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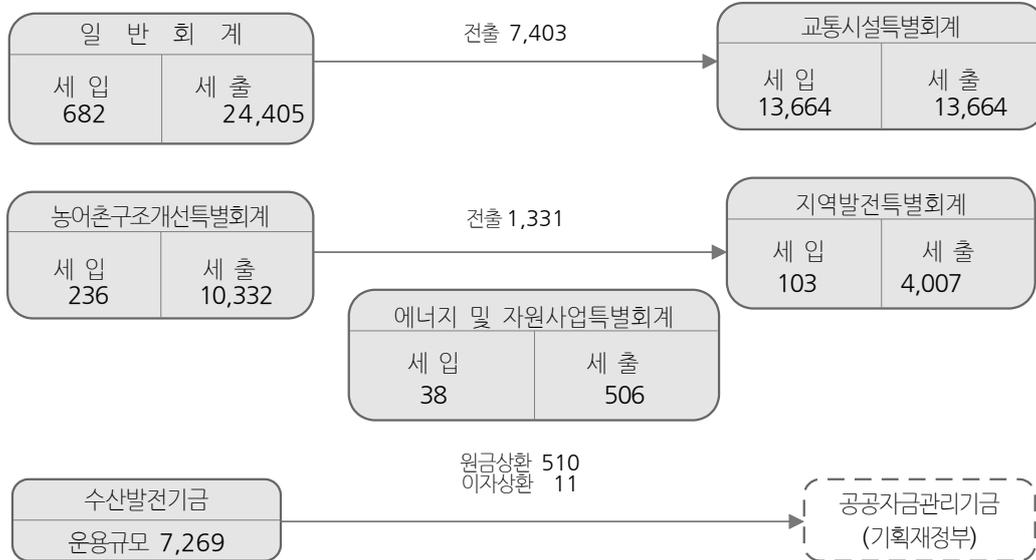
2018년도 해양수산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7,403억원 전출되었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1,331억원 전출되었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수산발전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원금 510억원, 예수금 이자로 11억원을 상환하였다.

[2018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총 18개 사업, 1,378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 사업은 해운전담지원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대형방제선 건조 사업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5,000톤급 대형방제선을 건조하기 위한 것이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 중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은 청년 귀어(예정)자에게 영어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은 에너지효율이 낮고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노후선박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조기폐선 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 사업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한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설립을 지원하는 것이며, 수산발전기금의 수산물유통정보조사사업은 수산물 유통실태 등 수산물 유통관련 정보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수산부 2018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예산안
일반회계 (12개)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	100,000
	대형방제선 건조사업	2,200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	150
	생태계기반 수산자원 변동 예측기술 개발(R&D)	3,786
	LNG병커링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구축(R&D)	3,100
	수산전문인력양성(R&D)	450
	안전한 항만 구축 및 관리기술 개발(R&D)	4,000
	IMO선박 국제규제 선도기술 개발(R&D)	3,300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정보화)	1,300
	(총액)남해어업관리단 인건비	9,990
	(총액)남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288
	(비총액)남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1,06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3개)	어선거래제도운영	340
	어촌발전기반조성지원	408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60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개)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4,257
지역발전특별회계 (1개)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	2,400
수산발전기금 (1개)	수산물유통정보조사	140
합 계		137,778

자료: 해양수산부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갯벌생태계 복원사업 ②항만 YT 친환경 LNG 전환사업 ③소비지분산물류센터 지원 ④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⑤동해항 3단계 개발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2017년 신규 복원사업 4개소의 총 사업비 대비 연차별 소요내역을 반영하여 증액되었으며, 항만 YT 친환경 LNG 전환사업은 지원대상 YT(야드트랙터)의 확대를 반영하여 증액되었다.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 1개소의 2018년 하반기 착공을 위한 공사비, 감리비 등의 사업비와 2018년 신규사업 1개소의 설계비를 반영하여 증액되었으며,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2018년 하반기 착공예정인 철거공사, 감리비, 건축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증액되었다.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은 선박 체선율 감소 및 물동량 증가 대비를 위한 항만시설의 연차사업비가 반영되어 증액되었다.

[해양수산부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14개)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지원	2,904	2,904	4,545	1,641	56.5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3,293	3,293	5,454	2,161	65.6
	(총액)서해어업관리단 공익요원경비	9	9	29	20	222.2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경비(비총액)	80	80	277	197	246.3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3,100	3,100	4,109	1,009	32.5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300	300	1,000	700	233.3
	항만 YT 친환경 LNG 전환사업	360	360	1,025	665	184.7
	지능형해양수산재난 정보체계운영(정보화)	528	528	2,566	2,038	386.0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4,465	4,465	5,895	1,430	32.0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운영지원(R&D)	1,986	1,986	3,200	1,214	61.1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R&D)	13,734	13,734	19,000	5,266	38.3
	수산식품산업 기술개발(R&D)	5,052	5,052	7,169	2,117	41.9
	차세대 한국형 어선개발(R&D)	2,820	2,820	4,180	1,360	48.2
	해양생태통합정보(정보화)	364	364	1,468	1,104	303.3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6개)	수산물 물류 표준화	630	630	948	318	50.5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 지원	3,042	3,042	6,873	3,831	125.9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1,000	1,000	12,700	11,700	1,170.0
	관상어산업육성	1,680	1,680	2,538	858	51.1
	연안국과의 협력(ODA)	5,608	5,608	9,124	3,516	62.7
	가거도항복구	21,000	21,000	30,000	9,000	42.9
교통시설 특별회계 (9개)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	67,605	67,605	80,995	13,390	19.8
	일반항	155,262	155,262	173,105	17,843	11.5
	동해항 3단계 개발	89,991	89,991	135,898	45,907	51.0
	여수신복항	40,041	40,041	64,478	24,437	61.0
	재해안전항만구축	34,100	34,100	87,409	53,309	156.3
	부산항 신항 소형선부두	1,910	1,910	2,530	620	32.5
	광양(여천)항	300	300	2,600	2,300	766.7
	마산항	9,224	9,224	12,158	2,934	31.8
	여수신항	1,000	1,000	2,740	1,740	174.0
지역발전 특별회계 (2개)	어촌지원 복합산업화 지원(제주)	4,401	4,401	7,270	2,869	65.2
	수산물안전검사 체계구축	600	600	5,000	4,400	733.3
수산발전 기금 (1개)	수산물공매납입금 부과징수비용	280	280	409	129	46.1
합 계		476,669	476,669	696,692	220,023	46.2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해양수산부

2018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해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해양진흥공사 출자금이 신규 편성되고 친환경 항만 운영을 위하여 항만 YI 친환경 LNG 전환사업의 예산이 증액 되었으며, ② 해양환경 및 해양생명자원 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형방제선 건조 예산이 신규 편성되고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 등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③ 해양영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제작, 항만시설 안전강화 등 예산이 증액되었고, ④ 해양수산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수산신산업 창업 지원 예산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신규 편성·소비지분산물류센터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⑤ 어업인 정착 및 어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이 신규 편성되었다.

2018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은 청년 귀어(예정)자에게 영어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향 수립의 근거자료가 되는 어업창업 및 귀어 정착률 등의 자료가 조사·확보되지 않고 어업창업범위, 심사방식 등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서, 조속히 근거자료 확보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실효성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지원 사업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지원 사업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년간 사업이 지연되었음에도 당초 사업계획이 적시에 조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FPC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구체적인 연계 조성·활용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조정·재수립된 후에 신규 설립 개소에 대한 예산의 편성여부 및 편성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상의 집행액에 비하여 사업규모가 큰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의 예비적 성격과 국가재정 효율화의 균형을 고려하여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비축사업은 대중성 어종 수매를 실시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하고 정부비축 수매 물량을 소비자 수요 및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함으로써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통상의 실집행액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를 편성하고, 수매계획의 적시 수정 등을 통하여 집행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사업은 유희항만 시설을 중심으로 해양산업과 해양연관 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집행 이전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역의 지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사업방식 조정 또는 예산규모 검토 필요

가. 현황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사업¹⁾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5톤 미만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선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과 동일한 11억 4,000만원이다.

[2018년도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어선사고예방시스템	1,200	1,140	1,140	1,140	0	0

자료: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호²⁾ 및 제17조제2항³⁾을 근

오은선 예산분석관(own-sun@assembly.go.kr, 788-4631)

- 1) 코드: 일반회계 3132-304
- 2)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선진화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근해어업 종류의 통합 또는 변경
 2.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의 조정
 3. 에너지 절감, 선단(船團) 규모의 축소 등 어업경영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어선의 현대화
 4.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어선형 어선의 보급
 5. **에너지 절감 또는 안전성·성능 향상을 위한 어선 장비·설비의 개량**
- 3)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 어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 종류의 통합·변경 또는 어구의 사용량·규모의 조정으로 인하여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제1호에 따른 어업 종류의 통합·변경 또는 어구의 사용량·규모의 조정으로 인하여 어업자의 경영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영개선지원금

거로 하여 2015년부터 시행 중이며, 사업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경비 부담률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이다. 지원되는 어선 안전장비는 구명조끼⁴⁾,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자동소화장치 등 3종으로서 품목별로 신청 가능하다.

[어선 안전장비별 단가 및 자부담액]

(단위: 천원)

장비명	사업단가	자부담액 (40%)	비고
구명조끼	140	56	어선 적당 최대 승선인원 수만큼 지원가능
VHF-DSC	1,200	480	GPS 연동 및 설치비 포함
자동소화장치	1,650	660	1종(자동소화기) 또는 2종(화재탐지기·자동소화기) 설치가능

자료: 해양수산부

[어선 안전장비 보급품(예시)]



초단파대 무선전화
(VHF-DSC)

자동소화장치

구명조끼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첫째, 낮은 실집행률을 감안하여, 어민 자부담률 등 사업방식을 조정하거나 집행가능한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에게 어선의 현대화, 어선 장비·설비의 개량 등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④ (생략)

4) 팽창식 구명조끼로서, 기존에 많이 보급된 고체식 구명조끼에 비하여 부피가 작고 착용이 간편하다.

동 사업의 예산 집행행률은 2015년 57.4%, 2016년 65.6%로서 연례적으로 저조한 양상을 보인다. 그 결과 총 사업대상 대비 어선 안전장비 보급률은 2016년 기준 구명조끼 31.4%, VHF-DSC 20.0%, 자동소화설비 6.2%로서 아직 높지 않은 상황이다⁵⁾.

[추진 목표 및 보급실적]

(단위: 개, 대)

구분	사업대상	목표량	~2016년 (실적치)	2017년 (목표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27,265	7,129	8,290	8,951	8,317	8,364
구명조끼	5톤미만 연안어업인 71,617명	50,132명 (70%)	22,501*	4,867	4,900	4,800	4,700	8,364
VHF-DSC	2~5톤 어선 18,183척	12,728척 (70%)	3,642	1,361	2,700	2,700	2,325 (사업중료)	0
자동소화 설비	"	5,455척 (30%)	1,122	901	690	1,451	1,292 (사업중료)	0

주: 1. 어업인 수: 2015년 어선원보험 가입대상(수협 정책보험부)
 2. 어선척수 : 2015년 등록어선 공시통계
 3. 2016년까지의 구명조끼 보급실적(22,501개) 중 동 사업에 따른 실적은 3,343개이며, 기타 수량은 동 사업 실시 전 2014년까지의 국비미지원사업(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수협중앙회 지원)에 따른 것임.
 자료: 해양수산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7년의 경우에도 9월 기준 사업자(장비 신청자) 모집실적이 3,829개, 8억 8,200만원으로서 당초 계획인 7,129개, 11억 4,000만원과 비교하면 수량 기준 53.7%, 금액 기준 77.4%에 그친다. 2017년 실적행률은 9월 기준 사업자 모집실적에 따른 예상치인 77.4%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⁶⁾,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지자체가 2017년 9월 이후 추가공고를 하여 사업자를 모집한다 하여도, 통상 동 사업의 공고에 따른 희망자 신청이 연초 등 상반기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모집실적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전체 사업대상 수 대비 2016년말 기준 보급실적(국비미지원사업 실적 포함)으로 산출하였다.
 6) 선정된 사업자가 장비를 설치하지 않고 중도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추가 모집분에 대한 보조금은 2017년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사업자 모집 시 공고·선정·설치 및 정산 등 집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7). 이전연도의 집행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사유로 2015년에 2억 7,400만원, 2016년에는 2억 4,700만원의 지자체 교부금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다8).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집행이 저조한 주요 사유로서, 자부담으로 인하여 어민 신청이 부진한 점, 이미 「어선법」에 따라 기존 고체식 구명조끼가 어선에 보급되어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장비별로 당초 계획수량 대비 연평균 실적달성률을 보면, VHF-DSC가 평균 104.5%로 가장 높으며 구명조끼는 37.7%, 자동소화장치는 52.7%로 낮게 나타난다.

[어선 안전장비별 계획 수량 및 실적]

(단위: 개, %)

장비명	2015			2016			2017. 9.			2018 계획
	계획(A)	실적(B)	달성률(B/A)	계획(A)	실적(B)	달성률(B/A)	계획(A)	실적(B)	달성률(B/A)	
구명조끼	5,000	2,372	47.4	3,353	971	29.0	4,867	1,779	36.6	4,900
VHF-DSC	1,400	1,323	94.5	1,732	1,845	106.5	1,361	1,530	112.4	1,645
자동소화장치	1,152	395	34.3	880	582	66.1	901	520	57.7	690
계	7,552	4,090	54.2	5,965	3,398	57.0	7,129	3,829	53.7	7,235

주: 1. 각 연도 집행(예산)액은 본예산 기준임(전년도 이월예산 제외).

2. 2017년 9월 기준 실적은 사업자 모집실적으로서, 사업자 중도포기 등에 따라 최종실적과 다를 수 있음.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일부 장비의 집행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어민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장비를 보급할 필요가 있어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안전장비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자부담률 등 사업방식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홍보 강화를 통하여 구명조끼와 같이 선호도가 낮은 장비에 대한 신청률을 올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공고, 선정, 장비설치, 정산요건 충족 확인 후 국비지급(정산) 등 절차에 통상 4~5개월 내외가 소요된다. 정산요건으로는 자부담 선집행, VHF-DSC 설치자의 무선통신자격 등 취득 확인(관련교육 이수 후 어업정보통신국 시험통신확인증과 교신가입증, 제한무선통신자격증 확인) 등이 있다.

8) 이월액 중 상당부분이 VHF-DSC 설치자의 무선통신자격 등 취득까지의 소요기간으로 인한 것으로서, 2016년의 경우 2017년 이월액 2억 4,700만원 중 76.7%(약 1억 9,000만원)를 차지한다.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취지에는 타당성이 있으나,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자부담률 등 사업방식을 조정하거나, 연도별 실집행률을 참조하여 집행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방식 조정의 예로는 어민 선호도 또는 보급 중요도에 따라 장비별로 자부담률⁹⁾ 또는 계획 수량을 조정하거나, 저소득 어가의 자부담률을 낮추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둘째, 집행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하여 사업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의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지침(이하 “사업시행지침”)」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하여서는 다음연도 예산을 30% 이내 절감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의 2018년 지자체별 예산 배정(안)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집행실적 과 예산 배정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게 나타나, 해양수산부의 지자체 예산 배정기준이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8년 예산이 2016년보다 증가하거나 동일한 총 5곳의 지자체¹¹⁾ 모두 2016년 집행률이 높지 않은 수준(46%~82%)을 나타낸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2018년 배정액이 각각 2016년 집행액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7년 집행예산액보다도 큰 금액으로서, 2018년도 실집행가능 여부가 우려된다.

9) 해양수산부는 향후 구명조끼의 자부담 완화 등 사업방식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0) 이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지원대상 확대(5톤 미만 어선→10톤 미만 연안어선) 또는 보급장비 다양화(휴대용 조난자위치발신기, 저체온예방구명조끼 등) 등이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원대상 확대에 있어서는 소형 영세 어업인의 안전도모라는 당초 사업취지에 적합하도록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1) 울산·전북·경북·경남·제주

[2015~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액 및 2018년 배정(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9.			2018	
	배정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배정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배정액 (A)	집행 예상액 (B)	집행률 (B/A)	배정액 (안)	2016 예산대비 증감
합계	1,200	689	57.4	1,200	758	63.2	1,140	75	77.4	1,140	△60
부산	58	47	81.0	170	67	39.4	48	26	54.9	6	△164
인천	91	7	7.7	23	15	65.2	22	14	66.6	13	△10
울산	59	18	30.5	4	3	75.0	1	1	88.8	4	-
경기	9	8	88.9	17	16	94.1	17	15	88.4	4	△13
강원	86	74	86.0	128	86	67.2	120	82	68.5	116	△12
충남	95	29	30.5	92	71	77.1	88	78	88.3	62	△30
전북	23	2	8.7	56	26	46.4	102	90	88.9	64	8
전남	560	340	60.7	471	288	61.1	386	298	77.1	420	△51
경북	16	7	43.8	100	82	82.0	109	66	60.2	116	16
경남	161	128	78.5	109	80	73.4	185	167	90.3	285	176
제주	42	29	69.0	30	24	80.0	62	45	72.6	50	20

주: 1. 각 연도 집행(예상)액은 본예산 기준임(전년도 이월예산 제외).

2. 2017년 9월 기준 집행예상액 및 집행률은 사업자 모집실적에 따른 추정치로서, 사업자 중도포기 또는 추가모집 등에 따라 최종 수치와 다를 수 있음.

자료: 해양수산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양수산부의 지자체별 예산 배정(안)의 계산방식은 부처 자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별도 지침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해양수산부는 해당 산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8년 지자체별 예산 배정(안) 산식]

1. 계산액④ = (전년도 예산액 × 20%) + (지자체 신청액 × 10%) + (어선세력 × 20%) + (2016년 집행실적에 따른 가중치 부여분 × 50%)

※ 집행실적에 따른 가중치 부여분

: 2016년 지자체 집행률에 따라 차등하여 가중치 부여분을 ‘합산’하는 것으로서, 2016년 집행률이 50%미만인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집행률 구간별로 일정액이 차등하여 합산됨.

2. 최종 배정액 = 계산액④ + (차액 × 조정계수)⑤

※ 조정계수 적용방식

: 지자체 신청액이 계산액④보다 작은 경우 →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지자체 신청액’으로 최종 배정액 결정

지자체 신청액이 계산액④보다 큰 경우 → 차액의 규모에 따라 조정계수를 달리 두어(차액의 0.01%~0.64%), ‘계산액④ + (차액×조정계수)⑤’를 최종 배정액으로 함.

주: 2017년도 배정 시에는, 전년도 예산액(40%), 지자체 신청액(30%), 어선세력(10%), 2015년 집행실적에 따른 가중치 부여분(20%)으로 비율을 적용하였음.

자료: 해양수산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동 산식을 상세히 살펴보면,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2016년 집행부진 지자체의 2018년 예산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률에 따라 차등하여 가중치 부여분을 ‘합산’¹²⁾하게 되어, 2016년 집행률이 낮음에도 합산분을 부여받는 지자체가 발생한다. 또한 최종 배정액의 계산에 있어 지자체 신청액이 계산액④보다 큰 경우에는, 2016년 집행률이 낮더라도 일정액의 조정계수 적용금액(차액 × 조정계수)을 합산받게 된다.

그 결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 실집행률이 높지 않음에도 2018년 예산이 증가하는 지자체가 발생하는 등, 지자체 예산 배정액 산출에 있어 과거의 집행률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지침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실제 집행여력을 고려하여, 2016년 집행률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하여서는 「2017년도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18년도 예산의 차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 2016년 집행률이 50%미만인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일정액이 차등하여 합산된다.

가. 현황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사업¹⁾은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영어정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촌 노동력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8년 신규사업으로 6억 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	0	0	0	604	604	순증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의 개요는 3년 이내 초기귀어자인 40세 미만의 어업창업(예정)자 중 연 100명에게 1인당 월 최대 1백만원의 영어정착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서, 수급자가 영어정착자금 수급기간(3년) 중 어업을 하지 않거나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국비 70%로 진행된다.

나. 분석의견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의 사업계획이 미흡하므로, 사업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 사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원인원(연 100명)은 최근 3년간 연 평균 40세 미만 귀어인(이하 “청년귀어인”) 수인 194명의 과반에 달하는(51.5%) 수치로서, 동 사업의 실효성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은선 예산분석관(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440-363

첫째,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전체 청년귀어인에 대하여 영어정착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어업창업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역량이나 의지가 강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 후 선발되어 지원받게 되므로, 최근 청년귀어인 중 실제 어업창업자 현황 등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지원인원을 추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귀어인 중 실제 정착에 성공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자의 비율(이하 “정착률”)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영어정착자금이 없는 현 상태에서도 청년귀어인의 정착률이 높게 나타난다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청년귀어인의 정착률이 높지 않다면 어업의 중도포기로 인하여 지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투입되며 미회수액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²⁾. 따라서, 실제 청년귀어인의 정착률 자료를 활용하여 지원인원을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아직 사업계획의 바탕이 되는 귀어인의 어업창업 및 정착률 자료를 조사·확보하지 않았으며, 어업창업 범위 및 신청요건·심사방법과 같은 세부적인 사업계획 역시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다³⁾.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대상 사업수요조사⁴⁾ 및 2017년 10월 이후 실시할(시기 미정) 귀어조사·연구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사업계획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신설하고 일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조속히 동 사업의 근거자료를 확보한 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실효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동 사업으로 인하여 청년 귀어인의 어업창업이 촉진되거나 정착률이 제고됨으로써 사업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이는 차후 사업의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도출되는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다.

3) 기타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는 영어정착자금 지원의 목적은 소득보전이 아닌 청년인력의 어촌 유입이므로 별도의 소득·재산기준은 두지 않을 계획이며, 지원방식은 현금 지급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착자금 지원을 통하여 실제 어촌 정착률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사업군은 중위소득 이하 귀어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득·재산기준 설정의 검토 필요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 2017년 9월 완료

[귀어인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16년	1,005	188	220	337	203	57
	(100.0)	(18.7)	(21.9)	(33.5)	(20.2)	(5.7)
2015년	1,073	207	253	398	176	39
	(100.0)	(19.3)	(23.6)	(37.1)	(16.4)	(3.6)
2014년	978	186	270	320	147	55
	(100.0)	(19.0)	(27.6)	(32.7)	(15.0)	(5.6)
2013년	690	150	181	230	102	27
	(100.0)	(21.7)	(26.2)	(33.3)	(14.8)	(3.9)

자료: 해양수산부

가. 현황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¹⁾은 연근해 어선어장 등의 유실침적어구 수거를 통하여 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계획안은 2017년 대비 7억원 증액된 79억원이다.

해양폐기물정화 사업²⁾은 연근해 주요 해역 내의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등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2018년도 계획안은 2017년 대비 2,000만원 감액된 80억 2,800만원이다.

[2018년도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 및 해양폐기물정화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연안어장 환경개선 [법정민간대행사업비 (320-08)]	5,509	7,200	7,200	7,900	700	9.7
해양폐기물정화사업 [민간위탁사업비 (320-02)]	8,068	8,048	8,048	8,028	△20	△0.2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과 해양폐기물정화 사업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사업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은선 예산분석관(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수산발전기금 3167-316

2) 코드: 수산발전기금 1065-301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의 내역사업은 유실·침적어구 수거처리, 교육·홍보 및 워크숍 개최이며, 해양폐기물정화사업의 내역사업은 침적쓰레기 수거·처리, 해양쓰레기 줄이기 인식증진, 해양쓰레기 통합관리체계 구축이다.

[해양폐기물정화사업과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 비교]

구분	해양폐기물정화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내용	항만, 어항, 환경관리해역 등에 대한 침적쓰레기 수거	연근해 주요어장에 대한 유실·침적어구 수거
근거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제119조, 제123조	「수산업법」 제8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제62조
사업지역	항만, 어항, 환경관리해역 등	연근해 주요 어선어장
지원형태	민간단체 위탁 (국비 100%)	민간단체 대행 (국비 100%)
사업처리기관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담당부서	해양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사업대상지에 있어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은 연근해 주요 어선어장을 대상으로 하고 해양폐기물정화 사업은 항만, 어항 및 해양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업목적 역시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5호3)에 따른 해양환경 개선이며, 해양폐기물정화 사업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제1항제2호4)에 따른 해양오염물질의 수거·처리이므로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3)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바다숲의 설치사업
 4.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6.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④ (생략)

4)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확산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1. 오염물질 유입·확산방지시설의 설치
2.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3.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

그러나 두 사업을 살펴보면 분리하여 사업을 운용할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두 사업은 모두 해안·부유쓰레기가 아닌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를 목적으로 하는데, 해양쓰레기의 75.5%가 어망어구 유실량인 점을 감안할 때 두 사업의 수거쓰레기 내 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⁵⁾. 실제 두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도 유실·침적어구를 포함한 침적쓰레기 전체를 수거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연간 발생량 추정]

(단위: 톤, %)

구분	발생량	비율
어망어구 유실량	44,081	75.5
어선 생활쓰레기	2,347	4.0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	4,382	7.5
항만 유입량	7,560	13.0
합계	58,370	100.0

주: 1. 2013년 기준

2. 해상기인 해양쓰레기 기준으로서, 육상기인 해양쓰레기(홍수기 초목 등) 제외 수치

자료: 해양수산부 등,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4~2018), 2014

또한 해양수산부의 설명과 달리 주요 항만·어항 인근해역과 연안 주요어장 모두 연근해를 일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사업대상지의 경계가 모호한 점이 존재하며, 국가 직접 수행이 아니라 국비 100% 법정민간대행사업 또는 민간위탁으로 민간단체에 의하여 수행된다는 점에서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두 사업이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추구(보호)하는 법익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는 점 역시, 두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한 수산해양환경 개선 및 자원보전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한 면이 있다.

한편, 두 사업을 통합하여 운용할 경우 발생할 실익은 다음과 같다.

4. 그 밖에 해양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
②~⑤ (생략)

5)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두 사업 모두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를 목적으로 하나,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은 어망어구 유실폐기물을 수거함으로써 수산자원 서식지의 보호·회복 및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항만 및 항계(harbour limit)내 폐기물을 수거함으로써 해양오염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두 사업의 합목적성에 오류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두 사업의 대상해역 선정·실시설계용역·수거용역 등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현재 이와 같은 각 단계가 두 사업에서 각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별도로 수행되고 있는데, 두 사업을 통합할 경우 각각의 해역을 분절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상지 및 관련용역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계획의 통합적·장기적인 설계가 용이해짐과 함께 두 사업 간의 대상지 중복 가능성이 해소되는 등, 사업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두 사업의 수거량(톤)당 평균 사업비는 해양폐기물정화 사업 170만원,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 300만원이며, 연도별로 수거량당 사업비의 편차가 존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해양폐기물정화사업과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의 수거량당 사업비]

(단위: 백만원/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해양폐기물정화사업	1.7	0.8	1.3	2.0	2.0	2.5	1.8	1.7
연안어장 환경개선	3.2	3.3	3.8	3.2	2.8	2.8	2.8	3.0

주: 사업비는 설계비·수거비·처리비의 합계임.

자료: 해양수산부

기타 부대사업에 있어서도, 해양폐기물정화 사업 내에서 매년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 추진되고 있으며, 다소의 사업내용 차이는 있으나 두 사업 모두 해양쓰레기 관련 교육·홍보 및 워크숍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두 사업을 통합할 경우 부대사업의 효율화 및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별도의 협의회를 두어 두 사업의 대상지 중복을 방지하고 있으며, 두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병렬식 사업구조를 유지함으로써 공공·민간자원(현재 사업 수행 중인 민간단체의 인적자원, 지식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통하여 비용절감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두 사업의 양태가 유사함에도 사업을 분리하여 운용하면서 중복을 막기 위해 별도 협의회라는 행정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업 실효성 확보방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통합이 곧 사업수행자의 통합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 통합 이후에도 현재 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축적된 경험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할 사유가 존재한다면 해역 등 개별 대상지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수행자를 구분하여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두 사업의 연혁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나뉘어 개편되면서(2008. 2. 29) 해양폐기물정화사업이 국토해양부로 이관되었고, 해양폐기물정화사업이 그대로 유지되는 중 2009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을 별도로 신설하였다. 이후 부처 개편으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폐지되고 두 부처의 해양수산 기능이 다시 해양수산부로 통합 편제되며(2013. 3. 23), 해양폐기물정화사업과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이 각각 존치된 면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예산안 자료를 통하여, 해양폐기물정화사업도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과 유사하게 연근해 어선어장의 침적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원화된 두 사업간 업무영역 조정을 주장한 바 있다.⁶⁾

6)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10. 1. p.803.

가. 현황

불법조업방지시설 사업은 중국 어선에 의한 우리나라 서해 어장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인공어초 등의 불법조업방지시설을 해당 어장에 설치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¹⁾의 내역 사업으로 우리나라 수산자원 조성 및 회복을 위하여 바다숲조성, 수산종자 자원관리,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등을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통하여 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동 내역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도 예산 대비 50억원이 감액된 50억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69,638	76,570	76,570	73,469	△3,101	△4.0
불법어업방지시설	11,000	10,000	10,000	5,000	△5,000	△50.0

자료: 해양수산부

동 내역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불법어업방지 구조물 50개를 평균 지원단가 1억원을 기준으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민간 보조 사업비 50억원이 편성되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50-304

[2018년도 불법어업방지시설 사업 예산안의 세부내역]

(단위: 개, 백만원)

연도	구조물	평균 지원단가	예산 (예산안)
2017	100	100	10,000
2018	50	100	5,000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불법조업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인공어초 조성 이전에 사전절차인 적지조사를 적절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연평도 해역 등에 불법조업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2)에 따라 인공어초를 해당 해역에 조성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에 근거한 해양수산부훈령인 「인공어초설치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5조제1항3)에 따른 적지

2)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바다숲의 설치사업
4.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6.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한 수면에 대하여 필요하면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라 시행한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평가한 결과와 제49조제4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인공어초설치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5조제1항

제15조(설치예정수역 선정)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어초설치계획의 범위 안에서 공단 이사장에게 어초설치 적지조사를 의뢰하여 적지로 판정된 구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수역을 어초설치 예정수역으로 선정한다.

1. 적지조사 이전에 인근 어업인들로부터 어초설치가 동의가 된 구역
2. 별표 2에 의한 어초설치 적지조사 항목 및 판정요건 기준에 적합한 구역
3. 수산생물의 산란, 서식장 조성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조사를 실시하여 공사로 인하여 사전에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하고 있다.

같은 훈령에서 적지조사의 세부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 2>에 따르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인공어초 조성을 위한 적지조사를 통하여 해당 해역의 수심, 용존산소, 수소이온농도(ph) 등을 현장조사, 청취확인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여 인공어초 설치가 가능한 적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초설치 적지조사 항목 및 판정요건 기준]

조사항목	조사방법	적지판정 요건
수심	음향측심기, MBES로 측정	태·폭풍에 의한 어초의 전도·매물 우려가 없는 수역
용존산소 (mg/L)	표, 저층을 구분 측정	5mg/L 이상
ph	"	6.5~8.5
유속	유향유속계로 측정	최대유속 2 m/s 이하
해저지형	SSS, MBES로 측정, 지층탐사기	기울기 5/100이하로 평탄한 해역
저질 상	입도분석법 또는 저질에 관한 구조물 매몰방지 토압 및 지내력 조사법	니토 또는 니질퇴적물(mud)의 함량이 70% 이상인 경우 지층탐사 및 시추퇴적물에 의한 토압 및 지내력을 계산하여 매몰안전성을 검토하여 판정
해조류 (패조류용어초 및 해중림초에 한함)	해조류 서식조사 (방향구조사 및 해조류 광합성 특성, 광량분포 조사)	해조류 서식지의 광합성 특성조사 및 광량분포조사 분석을 기본으로 하여 적지 판정
환경오염	현지 확인 및 청취조사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곳

자료: 해양수산부, 「인공어초설치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별표 2

4. 선박통항이 빈번하지 않은 수역(통항 선박의 안전수심을 고려한다)
5. 경사도가 완만하고 지반이 평탄하며, 조류 및 파랑에 의하여 어초 주변의 지반세굴, 어초의 전도·매물 또는 유실될 우려가 없는 수역
6. 공유수면 매립·간척사업 또는 공업단지 조성 예정지역 및 골재 채취 등으로 환경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수역
7. 지질·지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초의 매몰 가능성이 없는 수역

그러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일부 해역에서 불법조업방지시설인 인공어초를 설치하기 이전에 필요한 사전절차인 적지조사를 미흡하게 실시하여 예산 집행 이전의 사전절차를 미준수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2016~2017(5월말)까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불법조업방지시설로 설치한 인공어초 조성사업의 적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 4월 1일에 설치된 석재조합식어초 8기 등 총 9개 인공어초의 설치 이전에 적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불법조업방지시설으로 인공어초 설치 시 적지조사 수행 현황]

(단위: 백만원)

인공어초 형태	시설 설치완료일	적지조사기간	국고지원금
석재조합식어초 8기	2016. 4. 1	2016. 2. 3 ~ 4. 2	877
석재조합식어초 10기	2016. 7. 25	2016. 6. 30 ~ 8. 18	1,088
탑기단형강제어초 11기	2016. 7. 25	2016. 6. 30 ~ 8. 18	725
복합형해중림초 10기	2016. 12 .26	2016. 6. 30 ~ 8. 18	677
다기능삼각형어초 100기	2016. 12. 26	2016. 6. 30 ~ 8. 18	680
트리톤강재복합형어초 100기	2016. 12. 26	2016. 10. 11 ~ 12. 18	606
방사형인공어초 409기	2016. 12. 26	2016. 6. 30 ~ 8. 18, 2016. 10. 11 ~ 12. 18	833
사다리꼴복합강제어초 10기	2017. 2. 22	2016. 6. 30 ~ 8. 18	481
팔각반구형중형강제어초 10기	2017. 2. 22	2016. 6. 30 ~ 8. 18	839

자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그러나, 적지조사가 실시된 석재조합식어초 8기 등 3개의 인공어초 조성 사업의 적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용존산소, ph, 환경오염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상 명시된 적지조사가 적절하게 실시되지 않았다.

[인공어초 적지조사 결과 예시]

인공어초 형태	석재조합식어초8기	석재조합식어초10기	탐기단형강제어초11기
해역	대청, 소청도	연평도	연평도
수심(m)	3.4 ~ 61.3	5.2 ~ 35.2	5.2 ~ 35.2
용존산소(mg/L)	-	-	-
ph	-	-	-
유속	해양조사원 자료활용	해양조사원 자료활용	해양조사원 자료활용
해저지형	경사도 5%이하(일부제외)	경사도 5%이하(일부제외)	경사도 5%이하(일부제외)
저질 상	사질, 사니질	사질, 사니질	사질, 사니질
해조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환경오염	-	-	-

자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불법조업방지시설로 인공어초가 설치된 해역이 연평도, 대평도 지역으로 군사적 민감 지역이어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수행이 가능한 해저지형조사 위주로 적지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공어초설치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르면 인공어초 설치 이전에 적지조사는 의무 규정이라는 점에서 불법조업방지시설로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경우 규정을 준수하는 적절한 적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2018년 예산을 통하여 불법조업방지시설로 인공어초를 설치하기 이전에 「인공어초설치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라 적절한 적지조사를 실시하여, 예산 집행 이전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현황

해양박물관 건립 운영 사업은 해양문화와 해양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전시하는 국립해양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유물관리비, 전시기획비, 인건비, 정보화사업비 등을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인 국립해양박물관에 출연을 통하여 지원하는 해양박물관 운영 및 해양교육관 건립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동 내역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도 예산 대비 12억 4,000만원이 증액된 8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해양박물관 운영 및 해양교육관 건립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해양박물관 운영 및 해양교육관 건립	25,201	44,974	44,974	49,310	4,336	9.6
해양박물관 건립 운영	8,110	7,107	7,107	8,347	1,240	17.4

자료: 해양수산부

동 내역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31억 6,700만원, 기관 운영비 18억 1,200만원, 해양자료수집관리(해양자료수집 14억 3,700만원, 보존 7,000만원, 연구원 2억 7,000만원, 무기물 보존실 설치 3억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2,100만원) 20억 9,800만원, 전시기획 5억 5,000만원, 학술 및 문화 2억 4,000만원, 정보화사업 1억원, 전력 부하개선 비용 3억 8,000만원을 합한 83억 4,700만원이 정부 출연금으로 편성되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2031-308

[2018년도 해양박물관 건립 운영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2018 예산안
인건비	43명 인건비	3,167
기관운영비	운영비 276, 공과금 1,332, 셔틀버스 136, 비정규직 56, 비정규직 처우개선 12	1,812
해양자료수집관리	해양자료수집 1,437, 보존 70, 연구원 270, 무기물 보존실 설치 300, 비정규직 처우개선 21	2,098
전시기획	해외1회 350, 국내1회 100, 테마2회 100	550
학술 및 문화	학술조사 국내1회 60, 세미나4회 70, 도서관운영 110	240
정보화사업	해양유물 DB유지보수 50, 업무시스템관리 50	100
전력부하개선	전력부하개선 380	380
합 계		8,347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국립해양박물관은 해당 사업에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국가정보화시행 계획 포함 등의 사전 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아니하여, 예산 편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

정부 예산이나 기금이 투입되는 정보화 사업은 「국가정보화 기본법」²⁾ 및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³⁾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는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과 시행계획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분석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항을 점검·분석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신규사업 요구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의견을 예산요구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립해양박물관이 2016년 하반기에 추진한 국립해양박물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인 자료관리시스템과 해양아카이브시스템 내의 데이터가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자료관리시스템 및 아카이브시스템 용역’은 해양수산부의 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자료관리시스템 및 아카이브시스템 용역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내용	세부내용	집행액
자료관리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수자료 등록관리(구입, 기증 등), 자료 대여/격납/열람 신청 업무와 관련된 기능 추가 ○ 해양아카이브시스템과 연계 기능 추가 	151
해양아카이브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디지털 콘텐츠의 관리 및 접근이 쉽도록 인터페이스 개선 ○ 해양아카이브시스템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기능 ○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복사 등의 민원처리 	

자료: 국립해양박물관

2017년 예산에도 정보화 사업비 1억원(해양유물 유지보수 5,000만원, 업무관리시스템 개선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2017년 해양수산부 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립해양박물관은 연례적으로 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예산안에도 해당 정보화 사업(1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박물관은 법령 및 예산지침에 따라 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포함한 후 정보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보화 사업의 사전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3)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44

○ 정보화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신규사업 요구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의견을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

가. 현황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 사업¹⁾은 자연재해·사회적 재난 및 기타 특수한 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8년도 계획안은 2017년과 동일한 3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	796	30,000	30,000	30,000	0	0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기존의 영어자금 사업 중 특별영어자금을 분리하여 2016년에 신설한 사업으로, 1인당 2천만원 한도의 용자금을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로 1년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이다.

나. 분석의견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통상적인 집행현황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집행률은 2016년 2.7%(편성액 300억원 중 7억 9,600만원 집행)이며, 2017년 9월 기준으로는 13.3%(편성액 300억원 중 39억 8,700만원 집행)이다.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이 재해 등의 발생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을 가지므로 집행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 사업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집행액은 97억 5,900만원, 최근 3년간 연평균 집행액은 53억 3,800만원에 그친다. 2012년 태풍 불라벤 등에 따라

오은선 예산분석관(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수산발전기금 3465-303

303억원, 2014년 세월호 사고로 인한 출어제한 등으로 158억원을 집행한 사례가 있으나, 국가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서는 정밀한 계획안 산출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지라도 통상적인 집행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사업 규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만약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용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연재해를 입은 어업인을 지원²⁾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는 해양수산부의 재해대책비 사업³⁾의 경우에도, 최근 어업재해 피해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추가수요 발생 시 전용 등을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재해대책비와 달리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어업 운영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운전성 경비로서 즉시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시급히 필요한 어업인 생활자금 부족으로 이어지며, 이·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지원은 행정절차⁴⁾에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어업인 적기 생계지원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재해발생부터 어업인 용자까지의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재해 발생 후 2개월 이내의 용자액은 약 18.9%를 차지(2012년 대규모 태풍피해 기준)하여,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조기 수요자에 대한 용자는 이·전용 등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 기존 편성액으로 충당가능한 여지가 있다.

[2012년 태풍피해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 집행]

(단위: 백만원)

구분	2개월 이내 용자 (~2012.10.31)	2개월 후 용자 (2012.11.1~12.31)	계
건수	114건	396건	510건
	22.4%	77.6%	100.0%
금액	5,511	23,584	29,096
	18.9%	81.1%	100.0%

주: 1. 용자신청 후 철회(포기)가 반영된 것으로서 연도 총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2012년 태풍(볼라벤 2012년 8월 27일~29일, 덴빈 2012년 8월 29일~31일)에 대한 용자 약정일 기준임
 자료: 해양수산부

- 2)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인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지원
- 3)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443-302
- 4) 관계부처 협의, 필요시 국무회의 의결 등

[재해대책비 예산 편성근거]

구 분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
보상금	○ 2,400백만원 - 최근 3년간 평균 지원액(58억원)의 41.4% 수준	○ 2,400백만원 - 최근 3년간 평균 지원액(58억원)의 41.4% 수준
지방어항 등 피해복구	○ 5,000백만원 - 최근 3년간 평균 지원액(240억원)의 20.8% 수준	○ 5,000백만원 - 최근 3년간 평균 지원액(240억원)의 20.8% 수준
국가어항 등 피해복구	○ 2,600백만원 - 최근 3년간 평균 지원액(37억원)의 70.3% 수준	○ 2,600백만원 - 최근 3년간 평균 지원액(37억원)의 70.3% 수준

자료: 해양수산부

[긴급경영자금(용자) 상세 지원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피 해 명	지원액	
		건수	금액
2012	FDA 패류 수입금지 조치로 인한 굴양식 피해	51	1,086
	태풍(볼라벤, 덴빈) 피해	510	29,212
	소계	561	30,298
2013	남해안 적조 피해	49	2,484
	소계	49	2,484
2014	진도지역 출어 제한 및 양식장 유류오염 피해	518	15,000
	소계	518	15,000
2015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 관련 서해 5도 지원	4	58
	태풍(고니) 피해	15	159
	소계	19	217
2016	고수온·적조피해	50	796
	소계	50	796
2017. 9.	태풍(차바) 피해	15	225
	고수온·적조피해	36	575
	한일어업협정 지연	106	3,054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8	133
	소계	165	3,987

자료: 해양수산부

대형방제선 건조 사업의 대형방제선 소유권 이전 부적정 및 방제업무 신속투입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철저

가. 현황

대형방제선 건조 사업¹⁾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해양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5,0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건조하는 것으로서,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22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대형방제선 건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대형방제선 건조 (민간자본보조 320-07)	0	0	0	2,200	2,200	순증

자료: 해양수산부

2018년 예산인 22억원은 대형방제선 기본설계를 위한 비용이며, 총사업기간 3년 동안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758억원이다.

해양수산부는 대형방제선 건조 사업비를 국비 100%로 충당하되, 준공 시 대형방제선의 소유권을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에 무상이전하며 공단이 대형방제선의 건조 및 운영 일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형방제선의 운영비(연 56억원 추정²⁾)는 공단이 준설 등 수익사업에 대형방제선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자체 충당하며, 잔여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단에 귀속될 예정이다.

나. 분석의견

첫째, 국비로 건조한 대형방제선의 소유권을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이전하는 것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은선 예산분석관(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1036-305

2) 인건비 11억원(정원 22명), 연료비 30억원, 유지보수비 12억원, 보험료 등 기타경비 3억원

해양수산부 및 공단은 대형방제선 소유권 이전의 근거로서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³⁾ 및 제108조⁴⁾를 들고 있다.

그러나 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은 공단이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방제장비의 배치·설치를 자체적으로 또는 수탁·대행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법 제103조⁵⁾에서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방제분담금, 공단 사업의 수익금, 정부로부터의 지원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도, 이에 따라 국비 건조 방제선의 소유권을 공단에 무상이전 해야 할 필요불가결한 사유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또한 법 제108조는 해양수산부가 공단의 업무에 대하여 지

3) 제97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2.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오염물질의 수거·처리를 위한 사업
 - 나.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및 수탁관리
 - 다.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의 인양·예인
 - 라. 해양환경 관련 시험·조사·연구·설계·개발 및 공사감리
 3.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등의 배치·설치(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나.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의 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다. 그 밖에 해양오염방제와 관련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용역사업
 6. 해양환경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7. 제1호 내지 제6호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제108조(업무의 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중 긴급방제조치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5) 제103조(재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
2.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차입금
4.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5.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6. 자산운용수익금
7. 정부로부터의 지원금
8.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도 및 감독 등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서, 이 역시 특정 국가자산의 소유권을 공단으로 이전하는 근거로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대형방제선의 소유권을 공단에 이전하는 주요 사유로서, 건조절차를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게 될 경우 담당인력의 한계, 과도한 운영비, 국가가 소유할 경우 소관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 및 이에 따른 계류지의 결정⁶⁾ 문제 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해양수산부는 대형방제선의 건조절차를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게 될 경우 담당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현재 해양수산부는 관공선건조 및 운영 사업⁷⁾을 통하여 청항선·순찰선 등 관공선의 건조업무를 직접수행하고 있다. 2018년 관공선건조 및 운영 사업에는 총 4척(청항선 2척, 순찰선 2척)의 관공선 건조 비용이 편성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발주를 통하여 관공선 실시설계 및 건조공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같이 관련법률에 의거 선박 건조의 직접수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형방제선의 신조로 인하여 건조절차 관리와 같은 행정업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과 국가자산인 대형방제선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의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대형방제선의 운영비(연간 56억원) 발생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단은 대형방제선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고 수탁운영하면서도 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103조제2호⁸⁾에 따라 대형방제선 수익사업의 이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소유권 이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실제 해양수산부는 현재 총 20척의 국가 소유 방제선(청항 겸용)을 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6) 대형방제선을 해당 지방청 소관으로 하고자 하는 지역민원 발생 등

7) 코드: 일반회계 6133-300

8) 제103조(재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
2.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차입금
4.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5.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6. 자산운용수익금
7. 정부로부터의 지원금
8.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9)에 따라 대형방제선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해양수산부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이와 같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해양수산부) 소유 방제선의 해양환경관리공단 위탁운영 현황]

(단위: 톤, 백만원)

진수(연월)	선명	총톤수	사용목적(겸용)	금액
2016-12	온바당호	77	방제선(청항)	2,293
2015-09	항만정화1	79	방제선(청항)	2,601
2014-12	푸르미1호	78	방제선(청항)	2,661
2014-03	군산청해	81	방제선(청항)	2,383
2011-12	여청호	76	방제선(청항)	1,786
2009-07	청누리	78	방제선(청항)	748
2006-07	파란호	70	방제선(청항)	2,156
2003-07	청화	71	방제선(청항)	1,226
1998-03	부산936	54	방제선(청항)	1,235
1998-02	황금산	50	방제선(청항)	1,235
1997-03	푸르미2호	52	방제선(청항)	356
1997-02	목포청해	64	방제선(청항)	1,144
1995-11	인천937	149	방제선(청항)	1,868
1995-11	전남939	149	방제선(청항)	185
1992-12	제주935	33	방제선(청항)	706
1990-04	강원907	35	방제선(청항)	615
1989-12	인천938	36	방제선(청항)	461
1989-02	인천936	38	방제선(청항)	450
1988-11	부산933	46	방제선(청항)	335
1987-12	경북939	35	방제선(청항)	31

주: 국비로 해당 방제선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

자료: 해양수산부

- 9) 제105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공유재산을 5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형방제선이 국가 소유로서 소관 지방청이 특정된다 하여도 대형방제선의 방제업무 범위는 해당 지방청 계류지에만 구속되지 않으므로, 위험도 등에 따라 대형방제선의 지역별 이동이 가능하다. 지방청 업무의 경직성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지역별 이동이 적시적으로 이루어지기 곤란한 면이 있다면, 대형방제선의 소유권은 변경하지 않고 운영만을 공단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배치의 유연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형방제선 건조 사업의 예산과목인 민간자본보조(320-07)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지침”)」¹⁰⁾에 따르면, 민간자본보조(320-07)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공사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를 의미한다. 그러나 방제 업무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¹¹⁾ 등에 따른 국가의 책무이므로, 대형방제선 건조 비용을 민간자본보조(320-07) 비목에 계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가 건조를 직접수행할 경우에는 관공선건조 및 운영 사업의 예와 같이 실시설계비(420-02)·공사비(420-03)·감리비(420-04) 등으로 나누어 계상하여야 하며, 민간에 건조업무를 위탁하게 될 경우에는 그 위탁의 근거 및 성격이 지침에 적합한지를 살피어 민간위탁사업비(320-02),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등 적절한 비목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형방제선 운영을 위탁할 경우, 방제업무 등 신속투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대형방제선 관리방식을 포함하여 적절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공단에서 대형방제선의 운영을 수탁할 경우, 운영비는 공단이 준설 등 수익사업에 대형방제선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자체 충당하게 된다. 초동대응이 미흡할 경우 피

10) 기획재정부, 2017. 4.

11)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확산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1. 오염물질 유입·확산방지시설의 설치

2.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3.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

4. 그 밖에 해양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

②·③·④·⑤ (생략)

해가 급격히 확산되는 해양오염사고의 특성상, 동 대형방제선의 운영을 공단에 위탁하여 자체 수익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대형방제선이 연간 운영비에 상응하는 56억원의 준설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00일의 기간 동안 준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각 작업기간 사이의 대형방제선 정비·관리소요시간, 이동시간, 인력 피로도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적은 일수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대형방제선 건조의 최우선 목적은 해양오염사고 대응,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대규모 해양쓰레기의 제거 등 공적 성격의 업무에 대한 신속한 투입이며, 이는 예산절감보다 상위의 목적이라 볼 수 있다. 대형방제선이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공단 수익사업에 투입됨으로 인하여 공적 업무 수행이 지체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므로, 공단 「선박운영규정」이나 위탁계약서 등에 주요 대상지별로 준수하여야 할 표준이동시간¹²⁾이나 방제업무 미성실수행 시 제재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공단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조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¹³⁾. 또한 공단에 위탁한 대형방제선 운용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공단에 대하여 대형방제선의 연간 및 월간운항계획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승선인력의 최소인원·자격요건 또는 교육훈련기준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감사원은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2015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하여, 2014년 12월 부산항 기름유출사고 등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수익사업 겸용 방제선(예방선)이 우선 투입되지 못하고 공단의 예선업무 위주로 부적정하게 운용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12) 현재 공단이 방제대책본부 등의 방제선 배치 명령을 받을 경우 대상지까지 준수하여야 할 표준이동시간이나 방제업무 미성실수행에 대한 제재방안이 명시되고 있지 않아, 수익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방제투입이 지연되어도 그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한계가 있다.

13)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수익사업 중 사고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동원체계를 구축하고 준설시행업체와 계약 시 대형오염사고 현장 출동에 대한 특수조건을 명시하며, 대형방제선 운영매뉴얼을 별도로 제작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외 대형방제선 현황]

미 국	1천톤 이상 29척	스웨덴	5,400톤(인양, 수색구조 겸용)
일 본	4천톤급 3척(준설 겸용)	핀란드	3,450톤(쇄빙선 겸용)
중 국	2~3천톤급 5척(원유시추 겸용)	노르웨이	4,200톤(준설, 구난 겸용)
인 도	3천톤급 2척(해안경비 겸용)	네덜란드	2,388톤(해양조사 겸용)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선 보유 현황]

(단위: 척)

구분		20톤 미만	20톤 이상 50톤 미만	50톤 이상 100톤 미만	100톤 이상 300톤 미만	300톤 이상	계
방제선	전용방제선	4	0	0	2	1	7
	청방선	0	4	14	2		20
	예방선	0	0	1	22	4	27
방제 보조선	방제부선	0	0	0	0	3	3
	작업선	12	0	0	0	0	12
	기타선	0	0	2	4	1	7
계		16	4	17	30	9	76

주: 1. 청방선: 평상시 부유쓰레기 수거 등 청소업무에 투입하다가 오염사고 발생시 사고현장 투입

2. 예방선: 평상시 선박 예인작업에 활용하다가 오염사고 발생시 사고현장 투입

자료: 해양수산부

가. 현 황

해양환경인프라 구축¹⁾사업은 해양환경측정분석센터 3차년도 공사비 해당분 중 국고 지원액으로, 환경관리해역 관리 및 시스템 구축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5,300만원 증액된 18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해양환경측정분석센터 건립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환경관리해역 관리 및 시스템 구축	8,307	9,740	9,740	10,518	778	7.9
해양환경인프라 구축	400	1,700	1,700	1,853	153	9.0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측정분석센터의 총사업비는 당초 93억원이었으나, 서울에서 운영하는 생태 실험실과 공단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일반실험실을 통합시킬 계획을 세움에 따라 사업비가 일부 변경되어 130억원으로 증액되었다. 동 분석센터는 2017년 9월 현재 설계가 마무리된 상태이며, 10월 중으로 시공사를 입찰을 통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보조율 50%에 해당하는 46억 5,000만원 중 낙찰률(85%)을 적용하고, 기집행액 21억원을 차감하여 2018년 예산안 18억 5,300만원을 산출하였다.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일반회계 1033-300

[해양환경측정분석센터 건립 계획 현황]

사업기간	2016~2018년
총사업비	13,000백만원(정부지원금: 4,650백만원/공단 자체재원: 8,350백만원) (최초 총사업비 93억원 중 50% 국고보조, 사업규모 확대시 추가 예산 공단부담)
사업규모	지하1층/지상4층

자료: 해양환경관리공단

나. 분석의견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정부로부터 무상이관받은 예인선과 국유자산인 해상기증기선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창출한 이익으로 조성한 금융성자산 250억 7,000만원을 고려하여 2018년 해양환경측정분석센터 공사비 중 공단부담을 확대하도록 하고 국고보조금 지원액 일부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예인사업, 기중기운영사업, 건물임대사업 등의 자체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이익을 발생시켰으며, 이익의 규모는 2012~2016년 동안 60억 4,000만원~284억 5,800만원이다. 자체수익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단은 1998년에 (구)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부터 28척의 예인선을 무상으로 이양받고, 주로 일부 예선업자만 참여하는 공동배선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항만에서 예선사업을 수행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경제성이 낮은 선박 등을 감축하여 비용을 감소한 것도 이익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음으로, 국가소유 해상기증기선을 무상사용하기 시작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STX조선해양에 임대하여 안정적인 고수익을 창출하였다. 2012~2015년 동안 기중기선운영사업의 이익은 연간 35억원을 상회하였다. 마지막으로, 건물임대사업에서는 1억원 내외의 임대이익이 발생하지만, 2015년에 본사를 이전하면서 사옥을 332억원에 매각하여 발생한 일회성 처분이익 206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자체수익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사업	수익	30,489	30,252	30,682	33,064	33,947
	비용	26,742	26,084	28,541	25,850	27,652
	이익	3,747	4,168	2,142	7,214	6,295
기중기운영사업	수익	13,650	14,200	14,943	9,469	4,916
	비용	9,896	9,351	9,633	5,887	4,373
	이익	3,755	4,849	5,310	3,582	543
건물임대사업	수익	694	743	1,122	21,525	793
	비용	589	518	1,104	3,863	1,592
	이익	105	225	19	17,662	△799
자체수익 사업 합계	수익	44,834	45,195	46,747	64,059	39,655
	비용	37,227	35,953	39,277	35,600	33,616
	이익	7,607	9,242	7,470	28,458	6,040

자료: 해양환경관리공단

공단은 이러한 안정적인 자체수익사업을 통하여 금융성자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6년 말 현재 250억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공단은 그 동안 국가소유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시킨 이익 중 금융자산화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양환경측정분석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가적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자체수익사업의 금융성자산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현금성자산	16,277	13,679	7,426	5,361	6,465
단기금융상품	23,812	13,000	14,500	36,700	18,600
합 계	40,089	26,679	21,926	42,061	25,065

자료: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양식어업지원 사업¹⁾은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업체에 원료구입비 등 운영비를 용자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8년도 계획안은 2017년과 동일한 28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양식어업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양식어업지원	1,800	2,800	2,800	2,800	0	0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의 자금은 금리 3.0%(변동금리 가능)에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조건으로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업체에 지원된다.

나. 분석의견

수혜자의 한정 등 사업의 한계를 감안할 때, 양식어업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01년 시작되어 2014년까지는 (주)수협사료²⁾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용자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업체는 누구라도 용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오은선 예산분석관(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수산발전기금 3465-301

2) 수협중앙회와 양식관련수협이 공동출자하여 1997년 설립한 양어사료 전문 제조업체로서, 2016년 배합사료 생산량 기준으로 배합사료 업체(19개) 중 3위의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나 지원 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5~2017년 용자 선정업체는 종전과 같이 (주)수협사료가 유일하여, 각 연도 실적행액(2015년 28억원, 2016년 18억원, 2017년 7월 28억원) 전액이 수협사료에 대출되고 있으며, 기타 업체의 용자는 없는 실정이다.

(주)수협사료의 용자액은 28억원, 18억원이 격년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주)수협사료의 총 용자규모가 46억원으로서 매 2년마다 28억원과 18억원을 새로이 용자하여 그 금액으로 2년 전에 대출한 기존 용자금(2년 거치)을 상환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환 외 신규용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국내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업체는 약 19개³⁾인데, 해양수산부는 (주)수협사료 외에 다른 업체들이 동 용자를 이용하지 않는 주 사유로서 시중금리가 낮아 동 사업의 용자 유인요인이 적은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동 사업은 제도변경을 통하여 신청업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개모집 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선정 대상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사업 수혜자가 특정 민간업체 1개로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즉, 사실상 현재 선정되고 있는 (주)수협사료가 용자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동 사업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이 정부가 공공자금을 사용하여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재정용자사업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존속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⁴⁾.

또한 2017년에 (주)수협사료 외의 업체가 동 사업의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해양수산부의 사업지원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락한 점을 참조할 때,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인 양어용 배합사료 업계의 특성이 평가기준에 반영되어 왔는지에 대하여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평가기준상 종합배점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되는데, 현재의 평가기준은 이전 생산실적, 석박사급 등 연구인력, 일정 설비 및 기기 보유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신규 및 소규모 업체의 진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하여, 제품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안전성관리에 중점을 두어 평가기준을 마련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신규 및 소규모 업체도 배합사료의 안정성을 확보되는 수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 2016년 생산실적이 있는 업체 기준

4) 다만, 기존 용자 이용자의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사업의 폐지에 있어서는 단계적 폐지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동 사업의 취지가 일정한 배합사료 생산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수준의 업체에 대하여서까지 용자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평가기준을 완화하였을 때 선정업체의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것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면 평가기준의 변경이 아닌 사업의 존속 여부 자체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2017년 양식어업지원 용자 사업지원 평가기준]

구 분		세 부 항 목	배점
정성 (30%)	사업계획 체계성	① 경영개선 및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	40
		②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을 위한 노력 - 원료수급, R&D투자, 연구인력구성 등	40
		③ 용자지원을 통한 기대효과 - 정량적, 정성적 효과 기재	20
		④ 소계(가중치 30% 적용)	100
정량 (70%)	사료 생산실적	① '14년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 실적 - $(20 \times \text{사료생산실적(톤)}) / 20,000(\text{톤})$	20
	방역 소독 관리	② 공장출입차량 및 방문자 방역소독 - 공장출입구 소독설비, 고압세척기, 개인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10) - 상기 시설중 2 종류만 설치 및 운영: (5) - 상기 시설중 1 종류만 설치 및 운영: (3)	10
	원료 및 제품관리	③ 품질 및 안전성 관리 - 자기품질검사를 규정에서 정한 의무보다 많이 이행한 경우 점수 부여(1회당 5점)	25
	생산성 향상	④ 전년도 사료가격 인상율 - $(1 - \text{전년대비 사료가격 인상율}) \times 40$ * 생산품목이 많은 경우, 판매량이 높은 상위 3개 내외 품목에 한해서 평가 가능	30
		⑤ 사료제조 기술 보유 능력 - 전문가 근무 유무: 석사급 1명당 4점, 박사급 1명당 6점 - EP, SEP 기기 보유 능력: 1대당 2점	25
			⑥ 소계(가중치 70% 적용)
가감점	감점	① 사료검사 위반사항: 연간('14) 1회 적발당 -5점	-10
	가점	② 정부정책(사료분야) 회의·교육 참석 - 연간('14) 1회 참석당 +1점	+5
		③ 양식어업인 교육운영 횟수 - 연간('14) 1회 개최당 +1점	+5

자료: 해양수산부

[2016년 업체별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현황]

(단위: 톤)

연번	업체명	생산량	비율(%)	주요어종
1	(주)우성사료	22,009	15.04	전체
2	(주)카길애그리퓨리나	22,359	15.28	전체
3	(주)수협사료	20,006	13.67	전체
4	(주)코팩스	13,000	8.88	뱀장어
5	(주)사조동아원	12,400	8.47	전체
6	(주)CJ제일제당	11,500	7.86	전체
7	(주)대한사료	11,110	7.59	전체
8	제일사료(주)	10,610	7.25	전체
9	대봉LF 영어조합법인	5,000	3.42	넙치
10	(주)경원사료	4,500	3.07	전체
11	(주)유안사료	2,800	1.91	뱀장어
12	프라임오엔에프	2,000	1.37	분말
13	제주어류양식수협 친환경배합사료공장	1,850	1.26	전체
14	(주)세븐코스프	1,500	1.02	전체
15	(주)신안우럭	1,500	1.02	우럭
16	(주)오뚜기SF	1,500	1.02	해산어, 전복
17	이화유지공업(주)	1,300	0.89	넙치
18	(주)하스프	800	0.55	담수어
19	피쉬트리	600	0.41	분말
합계		146,344	100.00	

자료: 해양수산부

가. 현황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 사업¹⁾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지원 사업²⁾은 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6단계→4단계)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³⁾)(이하 “FPC”) 지원 사업의 예산을 살펴보면, 2014년 3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후 2015년~2017년에 미편성되었다가⁴⁾, 2018년도 2개소(지역미정) 신규사업으로 24억원이 편성되었다.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이하 “분산물류센터”) 지원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대비 38억 3,100만원 증액된 68억 7,300만원으로서, 2개소(계속사업 1개소, 신규사업 1개소)⁵⁾를 대상으로 한다.

[2018년도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지원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 사업	0	0	0	2,400	2,400	순증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지원 사업	685	3,042	3,042	6,873	3,831	126

자료: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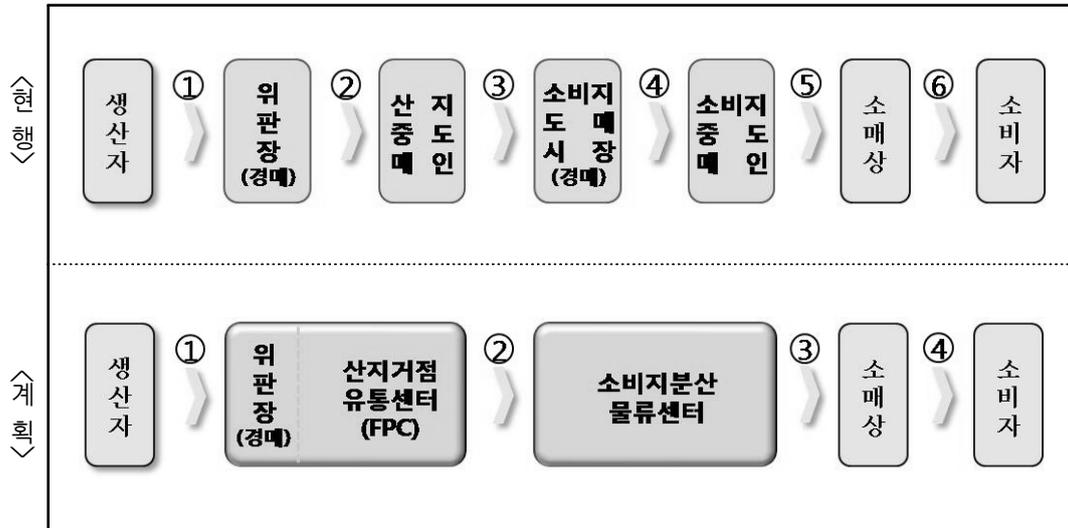
오은선 예산분석관(own-sun@assembly.go.kr, 788-4631)

- 1) 코드: 지역발전특별회계 3031-301
- 2)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040-320
- 3)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
- 4) 감사원에서 FPC 개별 개소사업이 아닌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적(2013. 6) 함에 따라 신규사업이 중단되어 미편성되었다가, 개별 개소사업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감사원과 재협의 완료(2016. 12)하여 2018년 예산에 다시 반영되었다.
- 5) 인천 계속사업, 호남권(전남 나주) 신규사업

FPC는 수산물을 기존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산지에서 자체매입하거나 위탁판매하여 생산자의 물량을 집적화하고, 전처리·가공 등 상품화한 후 대형 소비처 등에 공급하도록 계획되었다. 분산물류센터는 FPC·위판장 등에서 생산된 상품을 소비지 단위에서 집적하여 전통시장, 중소슈퍼 등 주요 소비처에 판매하는 도매중심 유통시설이다.

FPC 및 분산물류센터는 정부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⁶⁾의 핵심 사업으로서, 두 센터가 연계하여 기존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외 생산자단체 중심의 대안적인 유통경로를 도입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 및 생산자 단체의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에 따른 유통단계 축소(안)]



자료: 관계부처합동,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2013. 7.

나. 분석의견

동 사업들의 다년간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근거가 되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이 적시적으로 조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중 신규시설의 예산 편성여부 및 편성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6) 2013. 7. 10. 관계부처합동

당초 해양수산부는 종합대책을 근거로 하여 FPC를 2020년까지 20개소, 2025년까지 총 30개소(대규모 10개소, 중규모 20개소)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분산물류센터의 경우 2016년까지 1개소의 시범조성을 완료하고 성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초 계획에 비해 현재 FPC 및 분산물류센터의 조성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FPC의 경우 2017년 9월 기준 5곳⁷⁾에 그친다. FPC는 통상 기존 수협 위판장을 현대화·확대하여 조성되므로 분산물류센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주민 민원이 적은 편이나, 경관 저해 관련민원 등으로 인해 완공에 약 4년이 소요된 경주 FPC의 예처럼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FPC와 연계되어야 하는 분산물류센터의 경우, 2013년 당시 1개소⁸⁾의 시범조성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속적인 민원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무산되어 2016년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결과 현재 설립된 곳이 없다.

이와 같은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당초 종합대책에 근거한 FPC 및 분산물류센터의 확충과, 두 센터를 연계·활용하는 4단계 유통구조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약 4년 이상의 사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7년 9월 현재까지 기존의 종합대책을 조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현 실정에 맞는 FPC 및 분산물류센터의 구체적인 조성·연계활용 및 유통구조 개선 계획이 없는 상태⁹⁾임에도 2018년도에 각각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특히 FPC와 연계되어야 하는 분산물류센터가 1개소도 완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신규 FPC 2개소의 예산을 계상한 점¹⁰⁾, 당초 2016년에 실시 예정이었던 기존 FPC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평가도 현재까지 실시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전국 및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관점에서 동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할 수 있다.

7) 전남 완도, 강원 속초·고성, 제주 한림, 경북 경주

8) 지역: 대구광역시

9) 해양수산부는 내부적으로 2021년까지 신규 FPC 5개소를 추가설립하는 내용의 FPC 사업추진계획을 마련(2017. 3)하였다는 입장이나, 동 계획에는 분산물류센터 및 유통단계 축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당초 종합대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FPC와 분산물류센터의 연계활용 및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FPC 구축 자체로도 설비 현대화, 위판량 제고 등의 의의가 있기는 하나, 당초 계획 하에서의 유통구조 개선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2019년에 FPC 및 분산물류센터 등의 성과분석 및 사업계획 수립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동 사업들의 지연 또는 계획 미흡에 대하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국회 및 감사원의 지적¹¹⁾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계획수립 시기가 적시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년간의 사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근거가 되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이 적시적으로 조정되지 않은 점, 그에 따라 FPC 및 분산물류센터의 구체적인 조성·연계 계획이 없는 점, 기존 FPC에 대한 성과평가가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018년도에 신규편성된 시설(FPC 2개소, 분산물류센터 1개소)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 및 편성시기는 이와 같은 계획수립·평가 등이 완료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조속히 기존 종합대책의 조정 및 세부계획 수립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그동안의 사업지연 현황을 감안하여 실제 도달가능한 수준의 FPC·분산물류센터 확충안 및 지역·연차별 구체적인 유통구조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에 앞서 주민 협의 등 애로사항이 적절히 해소되었는지 실제적인 면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조성 현황]

(단위: 억원)

선정연도	소재지	사업기간	총 사업비	국비(40%)
2012	강원 속초	'13.12 - '15.04	160	64
	제주 한림	'13.08 - '15.04	140	56
2013	전남 완도	'15.03 - '16.05	60	24
	경북 경주	'16.06 - '17.09	60	24
	경남 고성	'15.04 - '16.03	50	20

자료: 해양수산부

11) 국회예산정책처 2014·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 및 2016년도 예산안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감사원 특정감사(수산업 육성 및 관리 실태) 감사결과보고서(2015. 11) 등

가. 현황

항만YT 친환경 LNG연료 전환사업¹⁾은 항만의 주요 하역장비인 YT(야드트랙터)에 있어, 기존 경유 YT를 친환경·저비용 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YT로 교체²⁾하여 친환경 항만을 구축하고 항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대비 6억 6,500만원 증액된 10억 2,500만원이다.

[2018년도 항만YT 친환경 LNG연료 전환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항만YT 친환경 LNG연료 전환사업	360	360	360	1,025	665	184

자료: 해양수산부

1대당 교체비용은 약 4,100만원³⁾이며, 재원 부담비율은 국비 25%, 항만공사 25%, 민간사업자(터미널운영사) 50%이다.

나. 분석의견

첫째, 친환경 항만 구현을 위하여 사업 확대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국 항만에서 운영 중인 YT는 총 967대(부산항 679대, 광양항 104대, 인천항 107대, 그외 항만 77대)이다.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 대상 YT를 전체 YT의 60%(581대)로 설정하였는데, 그 사유는 민간사업자의 자발적 LNG YT 도입 등을 감안한

오은선 예산분석관(own-sun@assembly.go.kr, 788-4631)

- 1) 코드: 일반회계 6133-314
- 2) 개조를 통한 교체는 국내업체가 수행하며, LNG YT 수입(주로 중국산)을 통한 교체도 있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차별 LNG YT 전환계획에 따른 국내업체 개조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3) 개조 교체비용 기준이며 수입 교체비용은 이보다 높은 편이나,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비 지원은 개조 교체비용 기준으로 행하여질 예정이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5~2016년 국비지원 대상(부산항)의 민간사업자는 터미널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노후화된 잔여 경유YT 60여대를 자발적으로 2018년까지 LNG YT로 교체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2017년까지는 부산항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며, 향후 기타 항만에 대해서는 각 항만공사·터미널운영사의 수요조사, 제도적 여건⁴⁾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항만YT 친환경 LNG연료 전환사업 실적]

(단위: 대)

항만명	계	전환 실적 (2018년 추진계획 포함)			
		~2015	2016	2017	2018
부산항	207	37	35	35	100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LNG YT 전환을 위한 국비지원비용은 1대당 약 1,025만원인데 비하여 전환에 따른 배기가스 감축 효과⁵⁾와 연료비 절감 효과⁶⁾가 크며, 민간사업자의 자부담이 50%(1대당 2,050만원)이기는 하나 연료비 절감으로 인하여 약 2년이면 자부담 상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총 사업대상 YT 대수(전체 YT의 60%, 581대)는 현 YT의 노후정도를 고려하여 설정된 것은 아니므로, 잔여 YT(40%, 386대)의 노후정도를 분석하여 향후 2~3년 내 노후에 따른 교체로 자연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을 제외한다면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추가 사업가능 규모를 파악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LNG YT 외의 친환경동력 YT의 사업화 및 지원 가능성에 대하여도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현재 YT에 대한 LNG 충전은 고정식 충전소에서만 가능한데, 부산항 외의 항만은 고정식 충전소를 운영하기에는 터미널별 YT 규모가 작은 편이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YT에 대하여 이동식 충전차량(탱크로리)을 통한 LNG 충전이 가능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5) 이산화탄소 24.3%, 질소산화물 99.4% 등 저감(자료: 해양수산부)
- 6) 경유에 비하여 연간 연료비 32.1% 절감(연 930만원 절감) (자료: 해양수산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자체적으로 전기 YT 개발을 진행 중이며, 2017년 연말까지 시제품을 개발하고 이후 광양항 YT 105대를 순차적으로 개조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전기 YT는 기존 대비 80%의 연료비가 절감되어 LNG YT보다 연료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이와 같은 기타 친환경동력 YT 개발 진행내용 및 전환소요비용을 면밀히 살펴보아, LNG YT보다 환경적·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국 항만별 YT 보유 현황]

(단위: 대)

구 분		항만YT 보유대수 ('16년말 기준)
합 계		967
부산항	소계	679
	북항계	265
	BPT(신선대,감만)	136
	자성대	90
	신감만	39
	신항계	414
	PNIT	76
	PNC	147
	HJNC	96
	HPNT	85
BNCT	10	
광양항	소계	104
	한진해운(2-1)	32
	KIT(2-2)	39
	대한통운(3-1)	33
인천항	소계	107
	신항계	67
	SNCT	40
	HJIT	27
	내항, 남항계	40
	ICT(남항)	25
	E1CT(남항)	10
	CJ대한통운(남항)	0
한진(내항4)	5	

7) 2017. 4. 18.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서호전기·한국국제터미널과 '동반성장을 위한 E-YT(전기 야드트랙터)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개발을 위한 공동투자액은 2억 4,000만원이다.

(단위: 대)

구 분		항만YT 보유대수 (‘16년말 기준)
평택 당진항	소계	23
	평택컨터미널	15
	동방아이포트	8
울산항	소계	31
	동방컨터미널	21
	정일울산	10
포항항	영일신항만	11
마산항	마산아이포트	2
경인항	소계	10
	인천터미널	9
	김포터미널	1

자료: 해양수산부

가. 현황

특수경비원보안위탁용역 사업¹⁾은 항만종합상황실, 경비초소, 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 등을 수행하는 항만보안 특수경비원에 대한 위탁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항만보안 시설 확충 사업의 내역사업이며,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대비 7억 9,900만원 증액된 38억 5,800만원이다.

[2018년도 특수경비원위탁용역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당초예산	추경(A)		B-A	(B-A)/A
항만보안시설 확충	18,559	15,794	15,794	7,960	△7,834	△49.6
특수경비원 보안위탁 용역	2,078	3,059	3,059	3,858	799	26.1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 항만보안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항만보안 특수경비원²⁾은 항만종합상황실, 경비초소, 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 업무 등을 수행하며, 2018년 예산상 보수(인건비)는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을 적용하여 책정되어 있다.

오은선 예산분석관(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 5064-303

2) 2017년 기준 74명이다.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³⁾은 공공부문의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대한 예정가격 산정 시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2018년 기준 8,329 원)를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의 항만보안 특수경비원 보수 책정은 동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감사원은 2016년 감사에서, 특수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항만보안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6개 기관⁴⁾에게 주의 처분하였다⁵⁾. 이에 6개 기관은 항만보안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항만보안 특수경비원은 근속기간이 짧아⁶⁾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고 경비보안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와 같이 근속기간이 짧은 것에는 낮은 임금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3)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 2012. 1.

4) 여수광양항만공사, 동해·마산·군산·목포지방해양수산청, 평택시(평택국제여객터미널)

5) 2016. 8. 29.

6) 6개월 이내 퇴사자 41.3%, 평균 근무기간 1년 10개월

가. 현 황

비축사업¹⁾은 대중성 어종 수매를 실시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정부비축 수매물량을 소비자 수요 및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함으로써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키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계획안은 2017년 대비 114억 7,800만원 감액된 871억 8,300만원이며, 이 중 저장품매입비(순수 비축사업비)는 863억 2,300만원이다.

[2018년도 비축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비축사업	64,907	98,661	98,661	87,183	△11,478	△11.6
비축사업 (저장품매입비 430-02)	64,907	98,421	98,421	86,323	△12,098	△12.3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최근 집행현황을 감안하여 비축사업을 편성하며, 적극적인 사업 집행을 위하여 수매계획을 적시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저장품매입비 계획안인 863억 2,300만원은 최근 3년간 매 연도 집행액(2014년 763억원, 2015년 786억원, 2016년 649억원)을 초과하는 규모이다. 저장품매입비 불용액은 2014년 67억 9,800만원, 2015년 45억 8,400만원, 2016년 380억 9,300만원이 발생하

오은선 예산분석관(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수산발전기금 3765-302

였는데, 해양수산부는 불용액 발생의 주 사유로 어업 생산량 감소²⁾에 따른 수매물량 감소 및 수매상한가 초과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 집행현황과 어업 생산량 감소추이를 감안할 때, 동 사업의 계획안이 적정수준으로 집행가능한 규모인지에 대하여 검토할 여지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³⁾.

[2014~2017년도 비축사업비(저장품매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4	83,147	76,349	91.8	0	6,798
2015	83,138	78,554	94.5	0	4,584
2016	103,000	64,907	63.0	0	38,093
2017. 7.	98,421	31,797	32.3	0	0

주: 1. 비축사업(코드: 3765-302) 예산 중 저장품매입비(430-02목)에 대한 것임.

2. 2017년도 집행현황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가을 이후 본격적인 수매를 통하여 집행률을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밝힘.

자료: 해양수산부

또한 동 사업비는 산지수매 외에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하여 수입산 또는 기존 민간 비축물량의 수매에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수매예측을 철저히 하되, 특정품목의 생산량 급감 등 상황변동이 발생하여 당초 계획된 수매품목·물량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예비품목을 반영하는 등 적시적으로 수매계획을 조정⁴⁾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급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수급 동향 점검회의⁵⁾를 정례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2)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6년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7%가 감소한 92.3만 톤으로 1972년 이후 44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낸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12년에 큰 폭의 감소를 보인 이후 뚜렷한 회복 없이 재차 큰 폭으로 감소하여 감소 추세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3) 해양수산부는 어업 생산량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예산안을 2017년 예산 대비 12.3% 감액 편성(984억원 → 863억원)하였으며, 생산 감소 등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비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 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수급계획이 결정되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일부 품목 및 수량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5) 비축사업 위탁기관인 수협중앙회, 수산관측센터, 국립수산물과학원이 참석하며, 해양수산부는 동 회의를 통

2017년 비축 예비품목(꾸치, 새우젓)을 지정하였으며, 민간재고 구매와 수입 비축 등 구매 방식을 다변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 비축사업 구매계획 및 실적]

(단위: 톤, 백만원)

구분	계획			실적		
	물량	톤당단가 (천원) *부대비용 포함	금액	물량	톤당단가 (천원) *부대비용 포함	금액
합계	31,072	3,315	103,000	18,835	2,905	64,907
마른오징어	65	30,769	2,000	41	28,488	1,394
오징어	3,335	4,348	12,500	0	0	2,193
고등어	2,812	4,363	12,269	320	2,181	1,969
명태	14,800	1,876	27,758	11,319	1,635	21,331
조기	392	28,061	11,000	371	23,652	9,486
갈치	1,530	19,263	29,473	1,183	18,678	23,669
삼치	1,200	2,500	3,000	59	3,305	602
멸치	138	14,493	2,000	138	12,029	1,865
천일염	6,800	441	3,000	5,404	300	2,398

자료: 해양수산부

[2017년 비축사업 구매계획 및 실적(2017년 8월 기준)]

(단위: 톤, 백만원)

구분	계획			실적		
	물량	톤당단가 (천원) *부대비용 포함	금액	물량	톤당단가 (천원) *부대비용 포함	금액
합계	24,980	3,940	98,421	9,253	3,192	35,079
마른오징어	75	26,667	2,000	0	0	42
오징어	4,051	5,431	22,000	1,743	6,049	11,175
고등어	3,035	4,283	13,000	0	0	477
명태	10,000	2,250	22,500	1,908	1,371	4,763
조기	474	28,059	13,300	0	0	214
갈치	887	19,866	17,621	847	17,654	16,045
삼치	1,113	2,954	3,000	0	0	126
멸치	145	13,793	2,000	0	0	100
천일염	5,200	577	3,000	4,755	300	2,138

자료: 해양수산부

하여 매월 생산 동향과 품목별 구매상황을 점검하고 국립수산물과학원의 품목별 생산 전망을 분석하여 비축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가. 현황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변동 예측기술 개발 사업¹⁾은 우리나라 해역에 적합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도 높은 수산자원 예측정보를 생산하고 어장·어종별 최적 맞춤형 수산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서 37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변동 예측기술 개발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변동 예측기술 개발	0	0	0	3,786	3,786	순증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과 기존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및 기존 결과물의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주 내용은 연근해 해양먹이망 군집 구조 등 파악 및 파라미터 확보, 동·식물플랑크톤·미세생물먹이망·중대형저서생물 군집구조 및 생물량 분포 파악, 기후변화 등에 따른 어장민감도 정량평가 기술 개발, 한국형 연근해 생태계변동 예측모델 기술개발 등이다.

그런데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최근에 완료된 연구사업을 살펴보면, 해역의 어업실태조사 및 변화동향 분석, 수산자원의 분포밀도 조사, 기후변화 영향에

오은선 예산분석관(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3632-301

따른 연안해양 생태계 변화 조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존재하여, 동 사업과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²⁾ 면에서 유사하거나 연관되는 면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기존 연구과제]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내용	기대효과
근해어업 자원조사	1997-01-01~ 2037-12-31	1. 주요 어종의 생태학적 특성 파악 - 근해 주요종의 체장 조사, 난자치어 분포 2. 어획시험조사 - 근해 주요종의 자원분포, 자원밀도 산정 3. 근해자원 조사기법 개발 - 중층트롤 어획시험 방법 및 난자치어 네트 개발	주요 어종별 생물학적 특성치 연구, 자원평가 및 관리방안의 기초자료 활용 등
독도 및 심해 생태계 수산자원 조사	2004-01-01~ 2037-12-31	1. 독도수산자원조사 - 울릉도-독도해역의 어업실태조사 및 변화동향 분석(자원량 산정, 해양생물변화모니터링, 미생물 연구 등) 2. 심해수산자원조사 - 심해분류군별 주요종의 생태조사, 심해자원 분포밀도 조사	독도 및 심해 주변 해역의 주요 어종 어장형성 자료 확보 등
기후 변화가 수중 생태계 구조에 미치는 영향 및 예측기술 개발	2013-01-01~ 2015-12-31	1. 수중생태계 구조파악 및 변화도 구명 - 정점별 수중생태계의 영양단계 파악 및 단계별 지표생물 탐색, 연안해양 저서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생태계 변화도 조사 등 2.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변동 재현 및 예측연구 - 수치모델을 이용한 한반도 주변 해역장·단기해양변동 재현 및 예측실험, IPCC AR5 기후예측모델자료 분석을 통한 한반도 주변해역 어장 환경 변동양상파악 등	현장자료 기반의 기후변화 영향 정도 파악으로 주요해역 및 생물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기후변동에 따른 한반도 주변 어장 환경변동 예측기법 마련 등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관리시스템

2)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 변동과 관련한 연구(기후변화 대응, 연근해 생태계 변동, 수산자원 평가 등)들의 기대효과는 안정적인 식량자원 확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어업인 소득 향상 등으로 유사하게 보일 수 있으나, 동 사업은 기존 단기·경험 중심의 수산정책을 중장기·통합 정책으로 전환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수산정보 제공을 통해 연근해 어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된 것으로서 기존 과제와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이 국립수산물과학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의 기존 연구과제와 차별성을 갖도록 세부과제 구성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해역의 기초조사·연구가 타 연구사업에서 실시된 부분이 있다면 그 결과를 활용하는 등, 기존 연구과제와 일부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사업결과물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³⁾.

[2018년도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변동 예측기술 개발 예산안 산출 근거]

<p>① 연근해 생태계 구조변동 평가기술 개발: 2,136백만원</p> <p>○ 산출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근해 기초생산력 및 해양먹이망 구조 파악 - 동·서·남해 및 동중국해 주요 어장의 기초생산력 규명(368백만원) - 동·서·남해 및 동중국해 생태계 구조 파악 및 파라미터 확보(1,543백만원) - IoT기반 무인관측 이용 빅데이터 생산활용기술 개발(100백만원) - 어장민감도 정량평가 기법 개발(125백만원) <p>② 한국형 연근해 생태계변동 예측모델 기술개발: 1,100백만원</p> <p>○ 산출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 환경 및 먹이생물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수치모델 선정(250백만원) - 연근해 수산자원 변동 모델의 기초설계 및 선정 모델의 성능 개선(650백만) - 모델 입력자료 구조 분석 및 연계 방법 검토(200백만) <p>③ 맞춤형 수산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550백만원</p> <p>○ 산출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관측 및 기존정보 통합 빅데이터 시스템 개발(220백만원) - 경험정보 데이터화 및 모델 활용 파라미터 추출 기술 개발(150백만원) - 맞춤형 수산정보서비스 빅데이터 표준화 기술 개발(180백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3) 국립수산물과학원은 현장 조사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존에 수행하지 못하였던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변동 예측 관련 연구항목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형 해양생태계 예측모델 기술개발 등에 있어 기존 연구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자료 입력체계를 사업 초기에 구성하여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가. 현 황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R&D)¹⁾ 사업은 자원 부존량이 풍부하고 발전효율이 높은 해양에너지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통해 화석에너지 비중을 저감시키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연구개발 관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 기획·평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도 예산 122억 9,900만원 대비 27억 700만원이 증액된 150억 600만원을 정부 출연금으로 편성하였다.

[2018년도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해양청정에너지 기술개발(R&D)	9,699	12,299	12,299	15,006	2,707	22.0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해양에너지 단위 실용화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의 3개 계속 과제 평균 연구개발비 39억 7,100만원을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연구개발하는데 필요한 예산 119억 1,300만원, ‘복합발전 기술개발’ 사업의 1개 계속 과제 평균 연구개발비 17억 3,000만원을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연구개발하는데 필요한 예산 17억 3,000만원,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1개 종료 과제 평균 연구개발비 13억 6,300만원을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연구개발하는데 필요한 예산 13억 6,300만원을 합한 150억 6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4131-301

[2018년도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개, 백만원, 개월)

구분	과제	평균 연구개발비	개월	2018 예산안
해양에너지 단위 실용화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3	3,971	12	11,913
복합발전 기술개발	1	1,730	12	1,730
전문인력 양성	1	1,363	12	1,363
합 계				15,006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의 해양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하여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등과 관련된 핵심 기술개발을 정부 출연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하여 풍력, 연료전지, 수소, 해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연구 수행 형태에 따라 해당 기관 연구개발 총사업비의 50~100%를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조류, 파력 발전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연구개발 분야의 유사·중복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동 사업에서 해양수산부는 조류 및 파력 등과 관련하여 ‘능동제어형 조류 발전 기술개발’, ‘방과제 연계형 파력발전 융복합 기술개발’ 등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 조류 및 파력 등과 관련하여 ‘에너지 자립형 교량을 위한 부유식 교량형 조류발전 기술개발’, ‘승강식 해상플랫폼을 가진 수직 진자운동형 30kW급 파력발전기 개발’ 등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류 및 파력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목적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양 부처 모두 연구개발 관리기관(전담기관)인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활용하여 대학·연구소·기업 등을 주관·참여기관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사업 방식도 동일하다.

또한, 지원분야를 살펴보아도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에서 조류 및 파력 발전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도 개별과제의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조류, 파력, 해수온도차와 관련된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유사하여, 양 부처에서 해상 관련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사업이 유사·중복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양청정에너지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의 조류·파력 관련 과제(예시)]

부처 (세부사업)	분야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해양수산부 (해양청정 에너지자원 개발)	조류	조류발전 실험역 시험장 구축	2017. 4. 1 ~2021. 12. 31
	파력	파력발전 실험역 시험장 구축	2016. 5. 2 ~2019. 12. 31
	파력	방과제 연계형 파력발전 융복합 기술개발	2016. 5. 30 ~2020. 12. 31
	조류	능동제어형 조류발전시스템 지지구조물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	2011. 11. 11 ~2018. 2. 28
	해수 온도차	1MW급 해수온도차발전 실증플랜트 개발	2016. 6. 1 ~2020.12.31
산업통상 자원부 (신재생 에너지핵심 기술개발)	조류	에너지 자립형 교량을 위한 부유식 교량형 조류 발전 기술개발	2015. 6. 1 ~2018. 5. 31
	조류	수중 무어링 조류발전용 semi-active 유량제어 및 수밀 원천기술 개발	2013. 12. 1 ~2016. 9. 30
	파력	승강식 해상플랫폼을 가진 수직 진자운동형 30kW급 파력발전기 개발	2013. 6. 1 ~2016. 8. 31
	조류-양수	조류-양수 융합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	2016. 5. 1 ~ 2018. 12. 31
	해수 온도차	OTEC ²⁾ 발전용 신개념 저온작동유체 및 반경류 터빈의 기술개발	2013. 12. 1 ~2016. 9. 30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http://www.ntis.go.kr>)

2) 해수온도차발전(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OTEC): 해수 표면의 온도와 심해 심층의 온도의 차이를

이처럼 부처간 연구분야가 유사한 경우 각 부처·연구개발 관리기관(전담기관)별 기술수요조사, 사업공고, 과제선정 및 주관기관 선정 등의 사전절차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사업간 유사·중복과 연구개발의 비효율적 추진이 우려된다³⁾.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조류, 파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연구과제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기획 단계부터 공유·협의하여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연계 추진하여 연구개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용하여 작동유체를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가 현재 추진 중인 해양청정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한 부처간 역할분담과 중복 투자방지를 위해 양 부처(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 현황

골든시드(Golden Seed¹⁾) 프로젝트 사업²⁾은 국가전략형 수출 및 수입대체 종자를 개발하여 세계 종자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의 종자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의 협력 R&D 사업이다. 총사업기간은 10년(2012년~2021년)으로 연구중점방향 등에 따라 1단계(2012년~2016년)와 2단계(2017년~2021년)로 나뉘며, 총사업비는 3,985억원³⁾이다.

해양수산부는 골든시드 프로젝트 중 수산종자사업단을 담당하며,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과 동일한 67억 5,000만원이다.

[2018년도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골든시드 프로젝트 (수산종자사업단)	8,000	6,750	6,750	6,750	0	0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종자사업단의 개발품목은 수출종자 3품종(넙치, 전복, 바리과) 및 수입대체종자 1품종(김)이며, 종자수출액 목표는 2021년 누계 기준 5,600만달러이다.

오은선 예산분석관(own-sun@assembly.go.kr, 788-4631)

- 1) 금값 이상의 가치를 가진 고부가가치 종자로서, 구체적으로는 1,000만달러 수준의 수출이 가능한 종자를 의미한다.
- 2)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531-401
- 3) 정부출연금의 상세규모는 해수부 748억원, 농식품부 2,165억원, 농진청 972억원, 산림청 100억원이다.

나. 분석의견

골든시드 프로젝트 1단계의 수출목표 달성이 목표 대비 12.3%에 그치므로, 성과 도출을 위하여 사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동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은 ‘종자 개발을 통한 종자 수출’, 구체적으로는 1종당 1,000만달러 수준의 수출이 가능한 수출종자(골든시드)의 개발을 통하여 전부처 기준으로는 2억달러의 수출을 달성하는 것이며, 과학기술적인 면에서의 특정 기술 개발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⁴⁾.

동 사업의 1단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총 16만달러(넙치 2만달러, 바리과 14만달러)로서 1단계 수출목표인 130만달러 대비 12.3%의 저조한 달성률을 보여, 본질적인 사업목적의 충족에 있어 극히 미흡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골든시드 프로젝트 1단계(2012~2016년) 사업목표 및 실적 현황]

품목	수출목표 (만달러)			기타(건)								
				논문(SCI)			특허출원			품종 및 브랜드 출원		
	목표	실적	달성도 (%)	목표	실적	달성도 (%)	목표	실적	달성도 (%)	목표	실적	달성도 (%)
넙치	30	2	6.7	9	10	111.1	5	10	200.0	3	5	166.7
전복	0	0	0	15	21	140.0	10	10	100.0	0	2	부가 달성
바리과	100	14	14.0	19	3	15.8	7	17	242.9	2	13	650.0
김	0	0	0	42	38	90.5	8	18	225.0	1	1	100.0
합계	130	16	12.3	85	72	84.7	30	55	183.3	6	21	350.0

자료: 해양수산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사업시행주체인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은 1단계 수출부진 사유로서 수출을 위한 종자 개발에 기본적인 육종기반 연구기간이 필요한 점, 종자수출 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불임화 기술 적용 및 수출시장의 환경에 따른 현지적응성 시험 등에 시간이 필요한 점, 어류의 경우 종자생산을 위한 세대관리에 다년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4)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 201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12)」 p.10~11에 서도 이 점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연구개발 중 예외적으로 발생한 돌발적 변수가 아니라 골든시드 프로젝트 출범 시 일반적인 종자개발의 관점에서 충분히 예상가능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농기평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동 사업 출범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기관 및 농기평의 목표 설계가 낙관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없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및 농기평은 사업 2단계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1단계에서 미흡하였던 실적분을 포함하여 최종 수출목표인 5,600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수행 및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연구개발사업을 계획할 경우에, 동 사업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의 실제적인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설정하여야 것이다.

[골든시드 프로젝트 2단계 수출목표]

(단위: 만 달러)

품목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넙치	90	140	160	200	380	970
전복	30	50	570	850	1500	3000
바리과	110	150	210	280	300	1050
김	0	2	11	40	397	450
합계	2,247	2,358	2,959	3,350	4,201	5,020

주: 최종 수출 목표는 1단계 목표치인 130만달러를 포함하여 전체 사업기간(2012~2021)의 누적치인 5,600만달러임.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가. 현황

새만금신항 사업¹⁾은 광역경제권 지원 및 환황해권 물류·레저관광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항만으로서 새만금신항을 개발하는 것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대비 105억 1,500만원이 감액된 309억원이다.

[2018년도 새만금신항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새만금신항	25,761	41,415	41,415	30,900	△10,515	△25.4
진입도로 및 북측방 파호안 축조 (공사비 420-03 및 감리비 420-04)	0	33,601	33,601	13,057	△20,544	△61.1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비 420-03 및 감리비 420-04)	0	7,209	7,209	12,024	4,815	66.8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새만금신항 사업의 진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월예상액의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 예산 중 높은 비중을 차지(2017년 98.5%, 2018년 81.2%)하는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와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의 경우, 공사비와 감리비가 2016년 전액 불용된 데 이어 2017년 9월 현재 역시 전액 미집행되고 있다.

오은선 예산분석관(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 5057-300

그 사유를 살펴보면, 2016년에는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가 지연되어 수시배정 예산이 미배정되었고, 2017년에는 6월에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9월 현재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²⁾.

이에 따라 연내 사업자 선정, 공사 발주를 완료한 후 연말까지 착공이 가능할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며, 연말 경 착공한다 하여도 총 374억 5,400만원의 2017년 공사비·감리비가 2018년도로 전액 이월되는 것은 사실상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³⁾.

이월액을 합산할 경우 두 공사의 2018년 예산현액은 당초 250억 8,100만원에서 625억 3,500만원으로 약 2.5배 증가하게 되므로, 순차적인 공정을 고려할 때 2018년도 집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할 수 있다. 향후 동 사업의 진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⁴⁾.

[2016·2017년도 새만금신항 사업 주요 미집행사유]

연도	주요 미집행사유
2016	새만금 신항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공사,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공사 수시 배정예산 미배정(총사업비 협의지연)
2017. 9.	새만금 신항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공사,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공사 발주 지연(총사업비 협의지연)

자료: 해양수산부

2) 사업자 미선정 사유는 1개 컨소시엄 단독입찰에 따른 2회 유찰(2017년 8월, 9월)이며, 해양수산부(군산지 방해양수산청)는 두 공사의 입찰방식을 종합심사낙찰제나 수의계약으로 변경하여 재공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 해양수산부 역시 연내 사업자가 선정된다 하여도 전액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2018년에는 사업 초기의 기초 형성을 위한 사석 투자작업이 주된 공정이므로 작업기간 대비 예산이 집중 투입되므로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가. 현 황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¹⁾ 사업은 유희항만 시설을 중심으로 해양산업과 해양 연관 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대상으로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1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2018년도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337	300	300	1,000	700	233.3
기반시설 설치	0	0	0	1,000	1,000	순증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²⁾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역으로 지정이 가능(2017년 12월 예정)한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중마일반부두 등의 유희항만시설의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25% (지자체: 25%, 항만공사 자체부담: 50%)를 국비로 보조하는 사업이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5069-300

2)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부산항 기반시설 구축 사업의 총사업비 262억원에서 2018년도 사업추진 예상률 10%와 국고보조율 25%를 적용한 6억원의 예산과 광양항 기반시설 구축 사업의 총사업비 171억원에서 2018년도 사업추진 예상률 10%와 국고보조율 25%를 적용한 4억원의 예산의 합인 10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기반시설 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예산안			
	총사업비	2018년 사업추진율	국고보조율	예산안
부산항	26,200	10	25	600
광양항	17,100	10	25	400
합계				1,000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역의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가 완료되어, 동 사업의 예산 집행 이전에 지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³⁾는 해양산업클

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0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해양산업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유희항만시설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
3. 해양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4.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러스터 지정의 요건으로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유희항만시설의 존재,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2017년 9월 기준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상태이며, 2017년 4월에 발표한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2017-2021)’에 법령상 여러 요건을 검토하여 2017년 12월에 공식적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에서는 항만 종류는 화물처리 중심 항만인 무역항의 유희항만시설을 대상으로 클러스터의 지정 목적인 항만하역 기능이 필요한 해양산업의 집적 육성이 가능한 안벽과 컨테이너 장치장을 중심으로 지정면적 전체가 10만㎡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따른 대상구역 선정기준]

구분	세부내용
항만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처리 중심 항만인 무역항의 유희항만시설을 대상 ○ 연안항은 여객, 어업, 국가안보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입지 특성 상 입주기업 수요 부족,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제외
시설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러스터의 지정 목적이 항만하역 기능이 필요한 해양산업의 집적 육성이므로 안벽과 컨테이너 장치장을 중심으로 선정
유희시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시점 기준 과거 1년 이상 운영이 중단되고 있고, 향후 운영계획이 미확정된 시설
면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항만의 지정면적 전체가 10만㎡ 이상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2017-2021)’, 2017. 4

해당 계획에 따르면,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중마일반부두 등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가능성이 높은 부두로 평가되어 해양수산부는 해당 부두를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지정가능구역으로 선정하고 있다.

5.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구역 등과의 중복지정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을 것
6.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해양산업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해양수산부는 2017년 9월 기준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역의 지정을 위한 부산항과 광양항에 대한 개발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산업클러스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 위하여 2018년도 예산 집행 이전에 사전 절차인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역의 지정이 이루어져 사업추진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어선거래제도 운영 사업¹⁾은 어선거래의 투명성 확보·편의 제공 및 어업 진입·퇴출의 유연성 제고 등을 위한 어선중개업등록제도와 어선거래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4억 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어선거래제도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어선거래제도 운영	0	0	0	408	408	순증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첫째, 어선중개업 교육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어선거래(연간 약 3,900건)는 공개시장이 없어, 브로커에 의하여 거래정보가 시장에 노출되지 않는 음성적 거래구조가 주를 이룸에 따라 사기, 불성실 중개 등의 불법·불공정거래가 발생하였다. 동 사업은 관련법 개정²⁾에 따라 등록의무가 있는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및 어선거래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폐해를 감소시키려는 것이다.

어선중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 사업에 의한 어선중개업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동 교육은 2017년에 3회에 걸쳐 총 358명을 대상으로 지정된 교육장에서 실시되었다³⁾.

오은선 예산분석관(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45-302

2) 「어선법」 개정 2016.6.27, 시행 2017.6.28.

3) 2017년 7월에 제1회 어선중개업자 신규교육(200명, 전체 국민 대상)이, 2017년 8월과 9월에 각각 어선중개업자 특별교육(8월 120명 및 9월 38명, 현 어선중개업 종사자 대상)이 실시되었다. 해양수산부는 3회에 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1회 어선중개업자 신규교육 희망자가 1,000여명으로서 선발 인원인 200명을 초과하여, 어선중개업 등록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현재 어선중개업 등록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 모두 부산 소재 교육장(제1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2회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제3회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수일간⁴⁾ 일과시간 중의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되고 있어, 타 지역 거주 또는 생업 등의 여건상 일과시간 중에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는 어선중개업 등록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의도치 않게 어선중개업을 특정 여건 하에 있는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선중개업 등록 수요가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는 점과 시험기회의 공정한 제공을 고려하여 현행 교육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요 항만지역에서의 추가 또는 순회교육 도입 등의 방안을 검토대상으로 할 수 있다.

둘째, 어선거래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어선중개업 등록은 의무인 반면, 어선 중개에 있어 어선거래시스템⁵⁾ 이용은 의무가 아니며 전적으로 매매자 또는 중개자 개인의 자율적인 이용에 따른다.

그런데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매매자 및 중개자, 매매(희망)가격 등의 정보가 공개되므로, 소득 노출 등을 우려하여 매매자 및 중개자가 동 시스템 이용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민 또는 귀어(예정)자 중에는 중고령자가 상당수를 차지하여 동 시스템 이용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동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거주(예정)지의 어촌의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매매자나 중개자의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적으로 어선거래시스템의 이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시스템 활용 실적이 우수한 중개업자에 대한 공지 및 정부 포상 등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선중개업 등록의무제도가 시행된다 하여도,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중개가 이루어

친 어선중개업자 교육을 통해 기존 중개업 영위자(152명)의 교육은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 제1회 교육 4일, 제2·3회 교육 3일

5) 어선중개업 등록기능 2017. 9. 8, 정식 거래등록기능 2017. 9월말경 개시

어지지 않는다면 정보 비공개 등으로 계속하여 거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개발·운영에 소요된 예산이 휘발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 시스템 이용의 활성화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현재 특정한 기준이 없는 어선의 표준중개수수료율을 정하거나 지자체별 일정 표본에 대하여 어선 실거래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어선거래의 피해를 방지하고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 현황

관공선건조 및 운영 사업¹⁾은 노후 관공선의 대체 및 신규건조비, 유류비, 정기검사 및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대비 106억 8,500만원 감액된 212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관공선건조 및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관공선건조 및 운영	13,063	31,380	31,900	21,215	△10,685	△33.5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첫째, 관공선 건조에 차질이 없도록 법정관리업체 등 계약업체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2017년 9월 기준 집행률은 예산현액 355억 2,400만원(이월액 36억 2,400만원 포함) 대비 53.6%이다. 집행률이 높지 않은 사유 중 하나는 진행 중인 총 10척 건조 계약 중 4척이 선금환급보증서(RG) 발행이 불가능한 법정관리업체와 계약되어 선금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 업체와의 계약은 조달을 통하여 체결되었으며, 계약 전 이미 법정관리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현 계약관련규정은 법정관리업체의 입찰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관공선을 건조하는 중소형업체(조선사)가 법정관리상태인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한 선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업체의 자금부족 상황을

오은선 예산분석관(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6133-300

일부 완화하기 위하여 공사진척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선박 건조의 초기 공정비용을 충당하게 되는 선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업체의 자금조달 경직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지연이나 부실 등 관공선 건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해양수산부는 중소조선사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법정관리업체와 계약할 경우에는 공정의 중간점검 및 업체현황 파악을 철저히 하여 건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예산 절감을 위하여 관공선 표준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순찰선, 청항선 등 신조 관공선에 대하여 용도 및 톤수에 있어 유사성이 있음에도 설계비를 각각 계상하고 있다. 향후 관공선 표준선형을 개발하여 설계시 적용한다면, 1척당 약 3,000만원의 기본설계비 예산 절감 및 3개월의 설계기간 단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관공선건조 및 운영 사업의 선박 설계비 내역]

(단위: 백만원)

건조 구분	소속	용도	총 사업비	2017년 추경 (설계비)	2018년 투입금액 (공사비/감리비/부대비)	비 고
대체	여수청	순찰선 (30톤급)	3,150	100	3,050 (2,890/130/30)	-
신조	제주도	순찰선 (40톤급)	3,200	110	3,090 (2,930/130/30)	-
	울산청	청항선 (150톤급)	7,180	200	6,980 (6,630/300/50)	LNG 추진 선박
	목포청	청항선 (80톤급)	3,380	110	3,270 (3,105/130/35)	-
계	4척 (대체 1, 신조 3)		16,910	520	16,390 (15,555/690/145)	-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순찰선의 경우 관할해역 특성 등에 따라 해역별·선질별²⁾로 별도의 설계가 필요하므로 표준선형의 개발비용 회수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 개발 실익이 부족한 면이 있으나, 청항선은 향후 동일 선질(강선)·톤수(150톤)의 LNG 추진선박으로 건조 예정이므로 해역별 표준선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³⁾.

2) 해역별 설계의 예로는 동해의 경우 파도·바람 영향이 크므로 흘수는 깊게, 거주구역은 낮게 설계하며, 남·서해의 경우 수심이 낮으므로 흘수는 낮게, 선폭은 넓게, 거주구역은 2층으로 설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선질 종류로는 강, 알루미늄합금 등이 있다.

3) LNG 청항선의 시범운영을 통한 안전성 평가 후, 2020년경 표준선형 개발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설명하였다.

가. 현황

선박안전기술공단 지원¹⁾ 사업은 선박검사 등 정부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업무와 내항 여객선 및 이용객 안전을 위한 운항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인건비, 경상경비 등을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 대비 15억 4,500만원이 증액된 17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선박안전기술공단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선박안전기술공단 지원	14,091	16,022	16,022	17,567	1,545	9.6

자료: 해양수산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정부의 선박검사업무, 운항관리업무 등을 대행하고 선박 또는 그 시설에 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하는 공공기관으로 수지차 보전 방식²⁾의 민간경상 보조로 예산을 편성받고 있다.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선박안전업무 지출인 인건비(293명) 219억 9,900만원, 경상경비 9억 9,800만원, 선박검사 수행 경비, 해양사고 예방활동 등의 사업비 66억 3,900만원, 운항관리업무 인건비·경상경비·사업비 88억 2,900만원을 합한 2018년 예상 총 지출액 384억 6,500만원 중 2018년도 예상 선박안전기술공단 자체수입(선박검사료, 운항관리비용 등) 208억 9,800만원을 제외한 175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6332-300

2) 수지차보전 방식이란 예산절감을 위해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방식을 의미한다.

[2018년도 선박안전기술공단 지원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2018년 예산안
선박안전 업무	인건비	○ 정부선박검사업무 대행에 따른 인건비(정원 293명) 반영	21,999
	경상경비	○ 2017년과 동일한 경상경비 편성	998
	사업비	○ 선박검사 수행 경비, 해양사고 예방활동, 정보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등	6,639
운항관리업무		○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8,829
소 계(A)			38,465
자체수입(B)			△20,898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지차 보전액(A-B)			17,567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수지차 보전 예산상 편성된 기관 지출예산 대비 실제 집행된 금액이 연례적으로 부족한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수지차 보전 기관으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경비, 선박안전검사 등 고유목적 사업비 등 필요 지출액에서 선박검사수수료, 기술용역개발 운항관리업무 등의 자체수입을 제외한 부분을 정부 보조를 통하여 지급받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지차 보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6월말)
수입소계(A)	22,888	22,544	23,514	23,629	31,511	30,853	36,238	35,891	36,732	21,313
- 선박검사수수료	9,526	9,536	9,957	10,015	12,000	11,886	12,721	13,123	11,281	8,209
- 기술용역개발	2,545	2,106	2,383	2,304	1,958	2,892	1,396	1,883	2,116	842
- 운항관리업무	0	0	0	0	4,031	2,474	7,037	5,804	7,037	2,789
- 기타수입	255	340	170	306	145	224	183	180	276	147
- 국고보조금	10,562	10,562	11,004	11,004	13,377	13,377	14,901	14,901	16,022	9,326
지출소계(B)	22,888	22,545	23,514	22,151	31,511	29,308	36,238	34,531	36,732	14,383
- 인건비	17,861	17,518	18,165	17,085	18,855	18,314	26,761	25,423	28,230	11,090
- 경상비	952	952	999	946	989	985	1,216	1,213	1,216	466
- 사업비	4,075	4,074	4,350	4,120	11,667	10,009	8,261	7,895	7,286	2,827
수입(A)-지출(B)	0	0	0	1,478	0	1,545	0	1,360	0	6,930
결산잉여금		0		1,478		1,545		1,360		0
- 퇴직급여 충당금전입액		0		398		1,870		1,360		0
- 잠수식 및 미주식 조정		0		114		137		0		0
- 금융기관 차입금상환		0		966		0		0		0
- 운항관리 업무 운차량		0		0		△462		0		0
- 다음연도 이월금		0		0		0		0		0

자료: 선박안전기술공단

2013~2016년도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지차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 합인 수입 총계 358억 9,100만원에서 인건비 254억 2,300만원, 경상경비 12억 1,300만원, 사업비 78억 9,500만원의 합인 지출 총계 345억 3,100만원을 차감한 결산잉여금 13억 6,000만원이 발생하였다.

2015년도 실제 수입액은 308억 5,300만원이었으나 지출액은 293억 800만원으로 결산 잉여금이 15억 4,500만원 발생하였으며, 2014년도 실제 수입액은 236억 2,900만원이었으나 지출액은 221억 5,100만원으로 결산잉여금이 14억 7,800만원 발생하였다.

이처럼 수치차보전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결산잉여금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운항관리업무 인수 초기 운항관리자 인력 미충원(정원 106명 대비 현원 86명), 선박검사원의 잦은 퇴직 등의 이유로 실제 편성된 정원보다 고용된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16년 예산과 실집행 금액의 차액인 집행잔액이 인건비에서 13억 3,800만원, 사업비에서 3억 6,600만원 발생하였으며, 2015년 집행잔액은 인건비에서 11억 6,200만원, 사업비에서 9억 1,600만원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례적으로 지출 예산과 실집행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지출 부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 (A)	결산 (B)	집행잔액 (A-B)	예산 (A)	결산 (B)	집행잔액 (A-B)	예산 (A)	결산 (B)	집행잔액 (A-B)
지출소계	23,514	22,151	1,363	31,511	29,308	2,203	36,238	34,531	1,707
- 인건비	18,165	17,085	1,080	21,797	20,635	1,162	26,761	25,423	1,338
- 경상비	999	946	53	1,119	1,119	125	1,216	1,213	3
- 사업비	4,350	4,120	230	8,470	7,554	916	8,261	7,895	366

자료: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연례적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수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2018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18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수입은 2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68억원(△41.3%)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5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8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15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2억원이다.

[2018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8,881	40,671	40,671	23,921	△16,750	△41.3
- 일반회계	8,877	9,844	9,844	9,451	△393	△5.1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831	1,400	1,400	1,774	374	28.6
-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16,547	29,427	29,427	11,496	△17,931	△60.9
- 지역발전특별회계	1,626	0	0	1,200	1,200	순증
합 계	28,881	40,671	40,671	23,921	△16,750	△41.3

주: 총수입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2018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지출은 9,258억원으로 전년 대비 87억원(0.9%)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848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15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995억원이다.

[2018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881,988	916,124	917,163	925,821	8,658	0.9
- 일반회계	732,020	774,906	775,945	784,827	8,882	1.1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4,501	42,909	42,909	41,529	△1,380	△3.3
- 지역발전특별회계	105,466	98,309	98,309	99,465	1,156	1.2
합 계	881,988	916,124	917,163	925,821	8,658	0.9

주: 총지출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나. 세입·세출

2018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18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2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68억원(41.3%) 감소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98억 4,400만원에서 2018년 94억 5,100만원으로 5.1% 감소하였으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14억원에서 18억원으로 28.6% 증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294억원에서 115억원으로 60.9% 감소, 지역발전특별회계는 12억원 순증하였다.

[2018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8,877	9,844	9,844	9,451	△393	△5.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831	1,400	1,400	1,774	374	28.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6,547	29,427	29,427	11,496	△17,931	△60.9
지역발전특별회계	1,626	0	0	1,200	1,200	순증
합 계	28,881	40,671	40,671	23,921	△16,750	△41.3

주: 총계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2018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9,258억원으로 전년 대비 87억원(0.9%)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7,759억원에서 2018년 7,848억원으로 1.1% 증가하였으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429억원에서 415억원으로 3.3% 감소, 지역발전특별회계는 983억원에서 995억원으로 1.2% 증가하였다.

[2018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732,020	774,906	775,945	784,827	8,882	1.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4,501	42,909	42,909	41,529	△1,380	△3.3
지역발전특별회계	105,466	98,309	98,309	99,465	1,156	1.2
합 계	881,988	916,124	917,163	925,821	8,658	0.9

주: 총계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다. 재정구조

2018년도 농촌진흥청의 회계·기금 간 재원 이전은 없다.

[2018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재원 현황]

(단위: 억원)

일 반 회 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 입 94	세 입 18
세 출 7,848	세 출 41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세 입 115	세 입 12
세 출 -	세 출 995

주: 총계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농촌진흥청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총 7개 사업, 299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농축산물 수출확대 장애요인 해소 기술개발 사업 등 5개 사업은 농업신성장동력 추진을 위한 R&D사업이며, 스마트 영농지원 체계구축 사업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이다. 또한 농특회계 농축산물 수확 후 융복합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농업 연구를 위한 것이다.

[농촌진흥청 2018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예산안
일반회계 (6개)	농축산물 수출확대 장애요인 해소 기술개발	6,000
	반려동물산업활성화 핵심기반 기술개발	4,800
	무인이동체(드론)활용 농경지관측과 현장적용 기술개발	3,000
	논이용 발농업안정 생산기술개발	4,530
	첨단기술 융복합 차세대 스마트팜 기술개발	6,000
	스마트 영농지원 체계구축	1,00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개)	농축산물 수확 후 융복합 실용화 기술개발	4,533
합 계		29,863

자료: 농촌진흥청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생물 다양성 위협 외래생물관리 기술개발사업 ② 농자재관리 및 평가 ③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 사업은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반영되었고, 농자재관리 및 평가 사업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농약 직권등록 사업 확대에 증액 되었으며,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은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자체 사업요구 및 신청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대되었다.

[농촌진흥청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2개)	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사업		400	400	3,800	3,400	850.0
	농자재관리 및 평가		3,524	3,524	7,329	3,805	108.0
지역발전 특별회계 (2개)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지원	생활계정	46,383	46,383	57,620	11,237	24.2
		세종계정	325	325	450	125	38.5
합 계			50,632	50,632	69,199	18,567	36.7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농촌진흥청

2018년도 농촌진흥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연구개발 및 보급,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 및 농업인의 지도·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로, 2018년 예산안은 R&D분야의 경우 농업 신성장 동력 창출 등을 위한 연구사업에 6개사업 28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적용됨에 따라 농약 직권등록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다. 기술보급분야는 2017년과 비교하여 농업생명연구단지 이전 및 지원사업이 완료되고, 농업기술위탁교육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었다.

2018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R&D 사업인 농업실용화기술 R&D지원 사업을 통하여 비R&D 성격인 유통이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 R&D의 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타 부처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 비하여 총 사업비 중 국고지원 비율이 높아, 국고지원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논 이용 밭농업 안정 생산 기술 개발 사업은 논콩의 연구에 집중될 우려가 있어 연구 대상 작물을 체계적으로 선정 및 배분할 필요가 있으며,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핵심기반기술 개발 사업은 협약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성과가 저조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이 존재한다. Golden Seed 프로젝트에서 달성한 총 2,093건의 수출 중 농촌진흥청의 실적은 5건에 불과하고,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0.08%로 사업 실적이 저조하여,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R&D사업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및 국고지원을 조정 필요

농식품 기술·제품 유통활성화지원 사업은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R&D)¹⁾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농식품 판로개척·마케팅 지원 사업과 농식품 기술·제품 해외시장진출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진흥청 소관 공공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출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 판로개척·마케팅 지원 사업은 농식품 분야 공공 R&D성과 기술을 이전받은 농식품산업체의 기술접목제품의 사업화 역량강화 및 판로확대를 위해 상품기획, 상품 경쟁력 향상, 유통·마케팅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농식품 기술·제품 해외시장진출지원 사업은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은 농식품산업체의 해외 사업화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분석, 상품 경쟁력 향상, 해외 유통·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진흥청은 동 내역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도 예산 13억원 대비 3억 9,000만원이 감액된 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업실용화기술 R&D지원(R&D)	8,820	10,000	10,000	12,000	2,000	20.0
농식품 기술·제품 유통활성화지원	1,300	1,300	1,300	910	△390	△30.0

자료: 농촌진흥청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38-300

1-1. R&D 사업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필요

가. 현황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식품 기술·제품 유통활성화지원 사업의 농식품 판로개척·마케팅 지원 사업은 식품·화장품 등의 소비재에 해당하는 상품을 대상으로 유통채널에 진입하거나, 기존 유통채널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농식품 기술·제품 해외시장진출지원 내역사업은 농식품분야 공공 R&D성과를 이전받아 기술실시유지중인 농산업 기술이전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제품의 해외 유통·마케팅 등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 분석의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R&D 사업인 동 사업을 통하여 비R&D 성격인 유통이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 R&D의 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농식품 판로개척·마케팅 지원, 농식품 기술·제품 해외시장진출지원 사업은 농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해외유통채널(온·오프라인, 홈쇼핑 등) 입점 및 판촉, 홍보마케팅이나 타겟 채널 확보 및 입점, 판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과 관련성이 부족한 비R&D 사업에 해당하므로 R&D 사업인 동 사업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농업실용화기술R&D 지원 사업의 유통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유형별 지원내용]

사업	유형	지원 분야	지원 내용
농식품 기술·제품 해외시장 진출 지원	A형	해외시장진입 지원 (제품의 수출역량강화 및 테스트판매 중심 지원)	○ 농식품산업체 수출역량 진단 및 시장조사 등을 통한 해외진출로드맵 구축 ○ 제품 현지화 컨설팅 및 현지 테스트 마케팅 등을 통한 바이어 매칭, 수입인허가 취득 등 지원
	B형	해외시장진출확대 지원 (해외유통채널 입점 및 수출확대 지원)	○ 수출확대를 위한 제품경쟁력 강화 ○ 해외유통채널(온·오프라인, 홈쇼핑 등) 입점 및 판촉, 홍보마케팅 등을 통한 수출확대 지원
농식품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A형	유통채널 진입 지원 (상품기획 및 테스트판매 중심)	○ 상품기획, 경쟁력향상, 온/오프라인 입점 및 테 스트판매, 홍보마케팅 등 지원
	B형	유통채널 확대 지원	○ 타겟 채널 확보 및 입점, 판매, 판촉, 홍보 등 지원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업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농업기술 제품
의 유통 확대나 해외 진출 지원에 있어, 전문화된 기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R&D 사업인 동 사업에서 비R&D 사업 성격인
농식품 판로개척·마케팅 지원, 농식품 기술·제품 해외시장진출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1-2.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국고지원을 조정 필요

가. 현황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식품 기술·제품 해외시장진출지원 내역사업을 통하여 농식
품분야 공공 R&D성과를 이전받아 기술실시²⁾를 유지 중인 농산업 기술이전업체를 대상
으로 기술제품의 해외 유통·마케팅 등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90% 이내
에서 해외시장진입 지원(A형), 해외시장진출확대 지원(B형)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해외시장진입 지원(A형)의 경우 농산업 기술이전업체의 수출역량 진단 및 시장조사
등을 통한 해외진출로드맵 구축, 해당 제품 현지화 컨설팅 및 현지 테스트 마케팅 등을
통한 바이어 매칭, 수입인허가 취득 등을 지원하고 있다.

2) 기술실시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시장진출확대 지원(B형)은 농산업 기술이전업체 상품의 해외유통채널(온·오프라인, 홈쇼핑 등) 입점 및 판촉, 홍보마케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동 내역사업은 타 부처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 비하여 총사업비 중 국고지원 비율이 높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서 중소기업이나 농어업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에 대하여 박람회 참가 및 해외판촉을 지원하는 수출 유망 상품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컨소시엄지원, 수출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해외마케팅 활동, 전시회, 상담회 등을 지원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동 내역사업과 타 부처 해외시장 진출 사업의 총사업비 중 국고지원비율을 살펴보면, 동 내역사업이 타 부처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어 민간 사업자의 책임성 확보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

동 내역사업은 민간 사업자의 총사업비 중 90% 이내를 지원하고 있지만, 수산물 수출 유망 상품화 사업은 80% 이내(출자 총액 제한기업: 50% 이내), 수출컨소시엄 지원 사업은 70% 이내, 수출성공패키지 지원은 중소기업 매출액에 따라 50~70%를 지원하고 있어, 동 내역사업의 국고지원율은 타 부처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여러 부처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비교]

구분	농식품 기술·제품 해외시장진출지원 사업	수산물 수출 유망 상품화 사업	수출컨소시엄 지원	수출성공패키지
사업시행주체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 화재단)	해양수산부 (한국농수산물 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 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 공단 등)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역량 진단 및 시장조사 ○ 해외유통채널 (온·오프라인, 홈쇼핑 등) 입점 및 판촉 지원 ○ 홍보마케팅 ○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조사/소비자 관농조사 ○ 포장디자인개발 ○ 박람회참가 ○ 해외관측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진출 전략 조사 ○ 온라인마케팅 ○ 공동브랜드 제작·등록 ○ 전시회, 상담회 ○ 해외유통망연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교육 ○ 현지시장조사 ○ 디자인 개발 ○ 온·오프라인 해외마케팅 활동 등
사업방식	출연	보조	보조	보조
국고지원율	90% 이내	80% 이내 (출자 총액 제한 기업: 50% 이내)	70% 이내	매출액에 따라 50~70%

자료: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동 내역사업의 높은 국고지원율(90%)은 사업대상자의 참여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타 부처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50~70%를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고 민간 참여자의 책임성 확보에서도 부적절한 면이 있다.

특히, 동 내역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해외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3)의 위임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이 되는 해외전시회의 구체적인 기준을

3)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수요조사
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전시산업 기반조성 사업
3. 국내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 개최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 ④ (생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마케팅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을 수립

정하고 있는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8조4) 및 제19조제1항5)에 따르면, 해외전시회 중 단체참가 전시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시회 참가 총비용의 50%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전략, 지원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전략시장 및 신규 유망시장 전시회 등에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타 부처의 유사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국고지원 비율을 감안하여 동 내역사업의 총사업비 중 국고지원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민간 참여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원받는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고, 이에 따라 제1항제4호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형 및 기준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생략)

- 4)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8조
제18조(해외마케팅 지원유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가. 단체참가 전시회 :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국가관(한국관)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하는 전시회
- 5)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9조제1항
제19조(해외전시회 지원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해외전시회 중 단체참가 전시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시회 참가 총비용의 50%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전략, 지원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글로벌 무역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해외전시회
 2. 전략시장 및 신규 유망시장 전시회
 3. 그 밖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III

개별 사업 분석

1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사업의 기존 사업과 차별화 필요

가. 현황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¹⁾ 사업은 지방농촌진흥기관 내에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²⁾ 및 교육장을 조성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0	0	0	1,000	1,000	순증
스마트농업 테스트 베드 교육장 운영	0	0	0	945	945	순증
사업평가 및 관리	0	0	0	55	55	순증

자료: 농촌진흥청

동 사업은 스마트농업 테스트 베드 교육장 운영 사업과 사업평가 및 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스마트농업 테스트 베드 교육장 운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50%의 국고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농촌진흥청은 동 내역사업을 통해 ICT 기반 농업 기술을 반영한 첨단 교육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2021년까지 80개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개소당 총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으로 이에 대해 1억 500만원의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며, 2018년 예산안은 9개소에 편성되었다.

남 회 예산분석관(nhc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일반회계 2131-306

2)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시스템, 설비를 말한다.

나. 분석의견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사업은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존 사업과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의 또 다른 세부사업인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³⁾ 사업은 영농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첨단과학영농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400만원(1.2%) 감소한 6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과학영농실증포 운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기 위한 실증 시험재배를 하기 위한 사업이며, 일부는 ICT, 빅데이터, 농업용 로봇 등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동 내역사업은 1994년부터 시행되어 2017년 기준 10개 시도에 149개의 시범포가 조성되어 있다.

과학영농실증포 운영 사업은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사업과 신기술실증시범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사업은 시설원예와 노지과수 분야에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원예의 경우 스마트팜 온실 및 원격제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실제 시범 영농을 하는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노지과수는 스마트 관수시설, 무인병해충예찰시스템 등 노지 스마트팜을 구축하여 시범 영농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된 국비와 지방비는 시범포의 노후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 관련 농자재 구입 등을 위해 사용된다. 전국 과학영농실증시범포의 운영 면적은 276.79ha에 이르며, 이는 시설원예(74.99ha)와 노지과수(201.8ha)에 대한 시범 영농을 실시하고 있다.

3) 코드: 일반회계 2231-300

[과학영농실증실증포 운영 현황]

(단위: ha)

시도	전체면적	시설	
		시설	노지
총계(149개소)	276.79	74.99	201.8
경기(18)	36.1	16.64	19.46
강원(16)	25.04	7.38	17.66
충북(10)	13.33	4.49	8.84
충남(15)	28.56	4.15	24.41
전북(13)	44.24	9.56	34.68
전남(21)	45.62	12.41	33.21
경북(23)	40.53	7.25	33.28
경남(20)	32.33	9.58	22.75
제주(4)	6.99	2.61	4.38
특광역시(9)	4.05	0.92	3.13

주: 2016년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이를 통해 과학영농실증실증포는 새로운 기술 및 품목, 스마트팜 등에 대해 실증하고, 이를 주변 농가에 보급, 시범,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대전광역시의 경우 농가의 소득 확대를 위해 주변 농가에 보급할 새로운 작물에 대해 스마트팜 교육장을 운영하였고, 전남 영광군은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이론 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여 전문 기술자를 양성하였다. 또한 강원도 삼척시는 스마트팜을 확산하기 위하여 작목별로 ICT를 활용한 영농을 실제 실험하기도 하였다.

한편, 2018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영농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스마트 농업에 대한 테스트베드와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농가에 대한 영농 모니터링과 빅데이터의 수집·분석·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기존의 과학영농시범포와 사업시행주체, 사업 추진체계, 국비 보조율이 유사하며, 농업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시범장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사업목표도 유사하다. 개소당 지원액도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1억 500만원이고,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은 1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사업과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 비교]

(단위: 백만원)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사업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
내역사업명	스마트농업 테스트 베드 교육장 운영	과학영농실증포 운영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사업시행주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피보조 기관명	지방자치단체	
국비보조율	50%	
지원 내용	실증환경 테스트베드 및 교육장 조성, 스마트농가 현장 모니터링시스템 등	시군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운영 활성화 시설보수 등 기반구축, 신규 지역특화품목 발굴 및 확산, 신기술 영농 현장교육 등
사업목표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및 교육장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	새로운 농업기술을 실증할 시범포 운영
사업시작연도	2018년	1994년
예산액	945	2,600
개소당 예산액	105	100

자료: 농촌진흥청

스마트팜 관련 실증포 및 교육장 조성은 주산지 및 지역별 안배, 지역전략작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관리를 위한 운영비가 수반되므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사한 목적과 내용의 사업이 중복 수행되거나 분산되어 추진되는 경우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두 사업의 내용을 차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논 이용 밭농업 안정생산 기술 개발 사업¹⁾은 쌀 생산조정 및 식량자급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논을 이용한 밭 농업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45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논 이용 밭농업 안정생산 기술 개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논 이용 밭농업 안정생산 기술 개발	0	0	0	4,530	4,530	순증
논 이용 밭작물 생산 성 증대 기술 개발	0	0	0	1,500	1,500	순증
간척지 논 이용 밭작물 안정 생산 기술 개발	0	0	0	3,030	3,030	순증

자료: 농촌진흥청

나. 분석의견

논 이용 밭농업 안정생산 기술 개발 사업의 연구대상이 콩·유지·잡곡 등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작물별 식량 자급률 및 해당 작물의 수익성 등을 반영하여 연구 대상 작물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쌀의 공급 과잉 기조로 인하여 논에서 밭으로 전환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²⁾하고 있으나³⁾, 논은 벼 재배 위주로 개발되어 있어 밭작물을 재배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수 및 작물의 내습성⁴⁾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 회 예산분석관(nhc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일반회계 1147-312

2) 2000년 7.2ha → 2010년 21.8ha → 2014년 25.6ha

3) 농촌경제연구원,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2015.12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2018년 신규 사업으로 논을 이용한 밭농업 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두 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내역사업은 논을 이용한 밭작물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 내역사업은 간척지 논을 이용한 밭작물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및 농어촌공사 등과 협력하여 논 타작물 전환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의 경우 13,000ha를 목표로 추진하였다. 2016년의 경우 논에서 밭작물을 재배한 면적은 연간 13,713ha에 이르며, 이 중 2,771ha에서 콩을 재배하고, 2,229ha는 사료 작물을 재배하여 전체 면적의 36.5%가 콩과 사료작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채소의 경우 배수 여건 등 환경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논에서 타작물로 전환된 면적 중 콩과 사료 작물이 차지하는 면적은 41.9%에 이른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로 인하여 재배면적이 늘어난 콩 등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⁵⁾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수도작에서 타작물로 전작한 농가가 특정 작물에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품목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6년도 논 타작물 전환 결과 품목별 전환 면적]

(단위: ha)

품목명	면적	품목명	면적
콩	2,771	연근	212
사료작물	2,229	고구마	199
인삼	708	녹두	170
고추	702	들깨	162
감자	545	경관작물	20
옥수수	511	시설채소/과채류	1,785
팥	247	과실류	758
참깨	227	기타	2,467
합계			13,713

주: 1. 시설채소/과채류: 100ha 이상 품목은 수박(315ha), 오이(175ha), 토마토(148ha), 고추(127ha), 딸기(125ha), 양파(112ha), 참외(109ha), 호박(100ha) 등임
 2. 과실류: 100ha 이상 품목은 사과(177ha), 포도(108ha), 블루베리(105ha) 등임
 3. 기타: 100ha 이상 품목은 약용작물(328ha), 수수(183ha), 울무(147ha), 묘목(139ha), 조경수(108ha) 등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6년 논 타작물 전환추진 목표(13천ha) 초과 달성”, 2016.08.10

4) 과습한 토양에 견디는 특성을 말한다.

5)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6년 논 타작물 전환추진 목표(13천ha) 초과 달성”, 2016.08.10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논 이용 밭농업 안정생산 기술 개발 사업 기획보고서」에 따르면, 내역사업인 논 이용 밭작물 생산성 증대 기술 개발 사업은 총 5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첫 번째 과제인 ‘밭작물 논 재배 확대를 위한 생산 환경 정밀 관리기술개발’ 사업은 주요 밭작물(콩·맥류·유지)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 과제인 ‘주요 밭작물 논 재배시 권역별 최대 생산을 위한 재배법 개선연구’도 콩·잡곡·유지 작물의 재배법 개선을 연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 밭작물 논 기계화를 위한 재배양식 표준화 기술개발’은 콩·유지·잡곡 및 서류⁶⁾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며, ‘논 경지 이용을 제고 밭작물 중심 작부체계 기술개발’도 원예작물과 연계하여 식량작물(콩·옥수수·잡곡 등)의 작부모형⁷⁾을 발굴할 계획⁸⁾이므로, 동 내역사업의 연구개발 대상이 특정 작물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 이용 밭작물 생산성 증대 기술 개발 사업 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품목	사업기간	2018년 예산안
밭작물 논 재배 확대를 위한 생산 환경 정밀 관리기술개발	콩·맥류·유지	2018~2022년	300
주요 밭작물 논 재배시 권역별 최대 생산을 위한 재배법 개선연구	콩·잡곡·유지	2018~2022년	300
주요 밭작물 논 기계화를 위한 재배양식 표준화 기술개발	콩·유지·잡곡 및 서류	2018~2022년	300
논 경지이용을 제고 밭작물 중심 작부체계 기술개발	식량작물 (콩·옥수수·잡곡 등)	2018~2022년	300
논 이용 고성능 복합작업파종기계 기술개발	-	2018~2022년	300

자료: 농촌진흥청

그러나 논 이용 밭농업 안정생산 기술 개발 사업은 식량자급률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진 반면, 서류의 경우 2015년 기준 식량자급률이 104.5%에 이르기 때문에 동 사업을

- 6) 뿌리나 줄기에 다량의 전분과 기타 다당류를 저장하는 식물로 감자, 고구마 등이 해당한다.
- 7) 작부모형이란 재배양식을 말한다.
- 8) 농촌진흥청, 「논 이용 밭농업 안정생산 기술 개발 사업 기획보고서」, 2017. 4월

통해 추진해야 할 타당성이 부족하다. 또한 콩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⁹⁾ 및 aI¹⁰⁾와 지자체¹¹⁾ 등에서 이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작 농가가 논콩의 재배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

동 내역사업이 논 이용 발작물 생산성 증대기술 개발을 통해 2022년까지 발작물 자급률을 15.2%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작물별 식량 자급률¹²⁾ 등을 반영하여 연구 품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이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논 이용 발작물 생산성 증대 기술 개발 사업은 기존 사업의 현황과 품목별 자급률 및 해당 작물의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9)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농진청, 농어촌공사(간척지, 농지매입비축), 들녘경영체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업을 통해 논 타작물 전환을 추진 중이다.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I)는 (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와 2017년 4월 국산 콩의 식량 자급률 향상 및 논콩의 생산기반 확대와 관련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11) 일례로 파주시의 경우 장단콩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벼를 재배하던 논에 콩을 재배하면, 자치단체에서 1ha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12) 2015년 기준 자급률은 밀 1.2%, 옥수수 4.1%, 콩32.1%, 보리쌀 23.0% 등이다.

가. 현황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¹⁾ 사업은 영농현장의 문제점의 개선하기 위해 첨단과학영농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400만원(1.2%) 감소한 6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6,037	6,184	6,184	6,110	△74	△1.2
기술자문위원 운영	0	0	0	138	138	순증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2018년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쌀 생산조절제 등과 관련하여 농민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기술자문위원을 운영할 계획이며,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다. 고용 예정인 기술자문위원의 인건비는 1인당 연간 2,58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5명의 민간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논에서의 타 작물 재배를 위한 현장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시행하기 위해 2017년 11~12월 공고를 통해 선발²⁾하여 식량작물 현장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식량정책, 적정생산, 농기계화, 가공·경영, 유통 전문가이다.

남 회 예산분석관(nhc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일반회계 2231-300

2) 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사람
 식량산업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식량산업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식량산업 관련분야 국가공인자격증(기사 이상)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식량산업 관련분야 기관, 단체, 회사법인 등에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식량작물 현장 컨설팅 지원단 업무 내용]

채용분야	인원	업무내용
적정생산	1명	식량작물 적정 재배기술 자문 및 현장컨설팅, 매뉴얼 제작지원
농기계화	1명	발농업 기계 활용 기술 자문 및 현장컨설팅, 매뉴얼 제작지원
식량정책	1명	식량산업 정책 자문 및 현장컨설팅, 매뉴얼 제작지원
가공·경영	1명	식량작물 가공기술 자문 및 가공시설 등 경영 컨설팅
유통(소비촉진)	1명	안정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출단지 육성 자문, 현장컨설팅

자료: 농촌진흥청

나. 분석의견

첫째,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채용 예정인 기술자문위원의 업무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식량작물 현장 컨설팅 지원단의 업무 내용 중 ‘적정생산’, ‘농기계화’ ‘식량정책’을 담당하는 인력은 관련 매뉴얼의 제작 지원도 함께 수행할 계획이며, ‘적정생산’과 관련하여 채용 예정인 전문 인력은 식량작물 관련 적정 재배기술에 대해 자문 및 현장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또한 ‘식량정책’으로 채용할 전문 인력도 식량산업 정책의 자문 및 현장컨설팅을 수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작물의 재배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 및 현장보급은 농촌진흥청³⁾과 국립식량과학원⁴⁾ 및 농업기술원⁵⁾의 고유 업무인 바, 이러한 영역에 대하여 민간 근로자를 채용하

3)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연구개발 및 보급,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 및 농업인의 지도·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직무)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과학원”이라 한다)은 식량작물·사료작물·곶기름작물·바이오에너지작물 등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 생산 환경 및 품질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시험연구사업, 예산·성과관리, 대외협력 및 홍보의 계획 및 조정
2. 보안, 관인관수, 인사, 급여, 회계, 결산, 용도에 관한 사항
3. 작물의 유전·육종 및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4. 벼·맥류·발작물·사료작물·유지작물·곶기름작물·서류의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개발
5. 작물 생산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연구
6. 식량자원의 개발 및 이용증진에 관한 연구
7. 고령지작물(원예작물을 포함한다)·감자의 품종개량, 재배기술개발 및 산지환경관리에 관한 연구
8. 북방농업 작물에 관한 기술개발

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채용 예정인 기술자문위원의 업무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농촌진흥청 및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도농업기술원과 시군기술센터가 수행하는 현장 지도·기술보급과 차별화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기술자문위원을 채용할 예정이지만, 농업기술상담을 통해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기존 사업과 차별화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고객현장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농업기술 관련 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고용된 상담인원은 총 21명으로, 민원 콜센터 3명을 제외한 기술위원 18명은 농촌진흥청에 소속되어 농업기술상담을 하고 있다. 2018년도 예산안은 5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고객현장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고객현장지원 사업	1,125	1,198	1,198	1,204	6	0.5
농업기술상담	433	497	497	523	26	5.2

자료: 농촌진흥청

해당 인력은 공모 방식에 의하여 선발되고 있으며, ①관련 분야 석사 이상, ②기사 이상 자격증, ③해당분야 20년 이상 근무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채용한다.

9. 바이오에너지작물·고구마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개발
 10. 수확물의 품질보전 및 이용증진에 관한 연구
 11. 간척지에서의 작물의 재배 기술개발 등 간척지 이용에 관한 연구
 12.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식량작물의 고부가가치화 연구
 13. 현장실증시험·연구 및 기술이전
- 5) 「농업기술원직제」
제2조 중앙농업기술원은 농림부장관의 감독에 속하여 농업에 관한 시험, 연구, 조사, 농업기술의 전수, 보급, 영농의 개선, 농업기술공무원 및 농촌청소년의 기술수련과 농업증산에 관한 건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도농업기술원은 중앙농업기술원장의 감독에 속하여 농업에 관한 시험, 연구, 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수·채소·축산·잠업/곤충 재배기술 전문가가 고용되어 있고, 토양/비료, 농기계/농업유통, 농약 등 농자재 전문가와 농식품 가공 및 귀농/귀촌/농업경영 전문가도 고용되어 있다. 특히, 전작에 관한 상담인력과 벼 재배기술 상담 인력도 근무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들 농업기술위원은 2016년 1년간 22,110건의 민원을 상담하였으며, 323건의 현장 지원도 시행한바 있다.

[농업기술위원 채용 현황]

	전문분야	자격	학력	학위
1	토양/비료	식품제조가공기사	대학원 졸	농학석사
2	토양/비료	-	대학원 졸	농학박사
3	토양/비료	토양해설사 등	대학원 졸	농학박사
4	농작물 병해충	-	대학원 졸	농학석사
5	농작물 병해충	-	대학원 졸	농학박사
6	농작물 병해충	종자기사 등	대학원 졸	농학박사
7	과수 재배기술	-	대학원 졸	농학석사
8	과수 재배기술	-	대학원 졸	농학박사
9	채소 재배기술	-	대학교 졸	농학사
10	채소 재배기술	종자기사	대학원 졸	농학박사
11	전작/특용작물	-	대학원 졸	농학박사
12	벼 재배기술	식량작물 전문지도사	대학교 졸	농학사
13	축산 기술	-	대학원 졸	농학박사
14	농기계, 농업유통	농기계분야 특기지도사	대학원 졸	공학박사
15	잠업·곤충	잠업전문지도사	대학교 졸	농학사
16	귀농·귀촌, 농업경영	전문지도사1급	대학원 졸	농학석사
17	농약	식물보호기사	대학교 졸	농학사
18	농식품 가공	식생활교육지도자 등	대학원 졸	농학박사 수료

자료: 농촌진흥청

고객현장지원 사업의 농업기술상담과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을 통한 식량작물 현장 컨설팅 지원단 사업은 농촌진흥청 소속 민간 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업 기술 상담 및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두 사업 모두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기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 분야 경력자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모집한다는 점과 공모를 통해 채용한다는 점에서 채용 방식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상담 내용의 경우 두 사업 모두 벼 재배기술, 전작 지원, 농식품 가공, 농업 경영 관련 전문 인력이 고용되어

6) 이밖에 농작물 병해충 관련 전문가가 있다.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고객현장지원 사업의 채용 영역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여 과수·채소·축산·잠업/곤충 재배기술까지 포괄한다는 특징이 있다.7)

유사한 목적과 내용의 사업이 중복 수행되거나 분산되어 추진되는 경우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두 사업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신규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이 고객현장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근로자를 채용하여 전작 지원, 가공, 경영, 벼 재배기술 등에 대해 상담하고 있고 현장 지원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과 고객현장지원 사업 비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고객현장지원
내역사업명	식량작물 현장 컨설팅 지원단	농업기술상담, 콜센터 운영
사업시행주체	농촌진흥청	
채용방식	공모	공모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학사 중 2년 이상의 경력자 ○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 관련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자 ○ 경력 20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기사 이상 자격증 ○ 경력 20년 이상
상담인력 구성현황	식량정책, 적정생산, 농기계화, 가공·경영, 유통	과수·채소·축산·잠업/곤충 재배기술, 토양/비료, 농기계/농업유통, 농약, 농식품 가공, 귀농/귀촌/농업 경영, 전작, 벼 재배기술, 농작물 병해충 등
사업시작연도	2018년	2006년
이용대상	농업인	
예산액	138백만원	523백만원
1인당 인건비	25.8백만원	

자료: 농촌진흥청

7)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 현장컨설팅 지원단은 벼 대체작물 재배 및 가공기술, 밭농업기계화 기술지원, 농업 경영 관련 전문 인력이 고용되어 전문기술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가. 현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사업¹⁾은 정부, 대학, 정부출연 연구소, 민간기업 및 농업인이 개발 및 보유한 농식품 관련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대비 27억 4,700만원 감액된 259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업기술실용화재단운영	27,023	28,667	28,667	25,920	△2,747	△9.6
영남권 종자종합 처리센터 설치	0	700	700	2,570	1,870	267.1
호남권 종자종합 처리센터 설치	1,651	5,525	5,525	0	△5,525	순감

자료: 농촌진흥청

종자종합처리센터란, 종자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생산·수확한 종자를 건조, 정선, 소독 등 여러 단계의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설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7년 10월 호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를 완공할 예정이고, 2018년 예산안에는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와 관련한 25억 7,000만원의 건설비를 편성하였다.

나. 분석의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작물의 재단 보급 물량이 1,643톤에 불과하므로, 권역별 종자 수요량 및 센터 간 물류비용, 지역별 생산 작물 등을 고려하여 종자종합처리센터의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 회 예산분석관(nhcc@assembly.go.kr, 788-4632)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136-300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구축했거나 구축 예정인 종자종합처리센터는 총 3군데이며, 이 중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중부권 종자종합처리센터는 2013년 설치되어 연간 1,000톤의 종자를 처리하고 있고, 2,500톤의 종자를 처리할 수 있는 호남권의 경우 2017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8년 예산안은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의 건설을 위해 25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3개 센터의 처리 용량은 연간 6,000톤에 이른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종합처리센터 현황]

(단위: 톤)

구분	처리용량	취급작물	소요예산/ 추진현황
중부권 (강원 횡성)	1,000	벼(특수미), 맥류	○ 예산: 자체예산 등 ○ 2013년 기설치
호남권 (전북 김제)	2,500	벼(특수미), 맥류	○ 예산: 110억원 ○ 기간: 2015~2017년
영남권 (경북 안동)	2,500	발작물(잡곡, 두류)	○ 예산: 156억원 ○ 기간: 2017~2019년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 관리업무는 국립종자원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국립종자원은 벼, 보리(겉보리, 쌀보리, 청보리), 밀, 콩(두부 및 장용, 콩나물용)에 대한 국가보급종을 보급하고 있고, 정부의 보급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유망 신품종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보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기능성·가공용 특수미, 사료용 벼, 맥류, 발작물, 사료용 옥수수 및 청보리 등의 종자를 증식 및 보급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종자의 2016년 전국 수요량은 9,124톤 수준이다. 이 중 1,643톤을 실용화재단이 생산 및 보급하였고, 나머지는 농가의 자체 채종 및 자율교환 등에 의해 보급되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취급 종자의 수요 현황]

(단위: 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안)	2018 (안)	2019 (안)	2020 (안)
전국 수요 현황	8,935	9,006	9,115	9,124	9,580	10,155	10,764	11,410
농업기술실용화 재단 보급 물량	909	1,290	1,475	1,643	1,817	3,000	4,000	5,000

주: 지역별 수요현황은 재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작물의 전국재배면적과 단위면적당 과중량 등을 기준으로 추정(2017년 이후는 2016년 재배면적 기준)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인이 자체 채종하는 경우 종자의 퇴화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립종자원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종자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전체 종자수요 9,124톤 중 18.0%인 1,643톤을 보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6,000톤에 이르는 종자종합처리센터를 구축하고 있어 처리 용량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20년까지 재단이 보급하는 종자에 대한 수요가 11,410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 중 5,000톤을 보급할 계획이므로, 이를 위해 예상 수요량의 51.8%인 6,000톤에 대한 처리시설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수요량이 많은 국가보급종의 경우 해당 품종을 국립종자원이 취급하고, 상대적으로 수요량이 저조한 신품종에 한해서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취급한다는 점에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예측 물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립종자원이 종자 수요가 많은 국가보급종에 대해 자체 정선 시설에서 종자를 선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10개소의 정선 시설을 운영³⁾ 중이다.

2)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연평균 증가율 5%를 가정하고 산출하였다. 5%는 대체작물 도입정책에 따른 특수미, 맥류, 발작물 및 사료작물의 재배증가(3%), 그리고 기능성·웰빙 작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증가(2%)를 전국재배면적과 단위면적당 과중량을 반영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3) 연도별 처리 물량은 2012년 37,936톤, 2013년 38,574톤, 2014년 40,743, 2015년 40,033톤, 2016년 34,788톤이다.

[국립종자원 등 정선센터 현황]

(단위: 톤, 개, m²)

구 분		정선능력	면적	
			공장	저장고
합 계		24,800	50,687	28,457
국립 종자원	소계	21,900	39,691	25,127
	강원	1,500	4,692	2,400
	충북	1,500	3,700	1,575
	충남	4,900	7,107	4,210
	전북(익산)	2,200	4,687	3,749
	전북(정읍)	2,200	6,495	4,300
	전남	3,900	5,852	4,506
	경북	3,200	3,910	2,311
	경남	2,500	3,248	2,076
지자체	소계	2,900	14,696	3,330
	경기	2,900	4,995	3,330
	강원	0	6,001	0

주: 1. 정선능력은 각 지원별 시간당 처리능력 × 8시간 × 90일 × 운영효율80% 수준 적용하여 산출

2. 정선능력은 벼를 기준으로 산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따라서 수요가 많은 종자는 국립종자원이 생산하여 보급하고, 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품종이 안정적으로 시장수요를 확보할 때까지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해당 품종이 국가보급종으로 선정되면 국립종자원에서 보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별 작물 특성 및 취급 작물의 확대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종자종합처리센터의 적정 운영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¹⁾은 1,000만달러 수준의 국가전략형 수출종자를 20개 이상 개발하여 종자강국의 실현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의 협력 R&D 프로젝트로, 4개 부처의 예산은 모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Golden Seed 프로젝트 운영센터에 출연된다.

이 중 농촌진흥청은 종축과 함께 벼·옥수수 등에 대한 국가전략형 수출종자를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식량종자사업단을 운영 중이며,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과 동일한 78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Golden Seed 프로젝트	8,320	7,814	7,814	7,814	0	0
식량종자사업단	4,500	4,162	4,162	4,162	0	0

자료: 농촌진흥청

나. 분석의견

Golden Seed 프로젝트의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Golden Seed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동 프로젝트는 2021년까지 2억 달러를 수출할 목표로 추진하였다. Golden Seed 프로젝트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뉘며,

남 회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일반회계 1133-401

2013년 시작된 1단계는 2016년 종료되었고, 2017년 2단계 사업이 시작된 상황이다.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 따르면, Golden Seed란 종자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품목의 수출 규모로서 천만 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농촌진흥청 식량종자사업단은 벼, 감자, 옥수수 3개 품목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는 식량종자사업단의 수출 목표액을 벼·감자 1,000만 달러, 옥수수 1,500만달러로 계획하고 있으나, 총 사업 기간의 절반이 경과한 시점(2016년)에서의 수출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전체 수출 목표액이 2억 달러였던 것과 달리 1단계 프로젝트가 종료된 2016년 말 기준 수출 실적은 3,058만 달러에 불과하며, 이 중 농촌진흥청이 소관하는 식량종자사업단의 사업 추진 결과를 보면, 벼와 감자의 경우 품종 개발 및 수출 실적이 없으며, 옥수수에 3개 품종이 개발되어 1만 달러가 수출된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업 시행 결과를 감안할 때, 식량종자사업단의 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한 측면이 있다.

[소관부처별 수출시장 개척용 Golden Seed 프로젝트 현황]

(단위: 건, 만달러)

소관 부처	품 목	개발 현황					수출 현황				
		누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누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농식품부	고추	47	7	8	18	14	319.9	29	41	62	188
	배추	48	9	10	16	13	424	48	80	133	163
	무	25	0	5	10	10	412	16	155	121	120
	수박	30	6	4	9	11	77.8	1	15	23	38.8
해수부	넙치	0	0	0	0	0	2	0	0	0	2
	전복	0	0	0	0	0	0	0	0	0	0
	바리과	0	0	0	0	0	14	0	0	14	0
농진청	벼	0	0	0	0	0	0	0	0	0	0
	감자	0	0	0	0	0	0	0	0	0	0
	옥수수	3	0	2	0	1	1	0	0	0	1

주: 1년차 2013.7~2014.5, 2년차 2014.5~2015.5, 3년차 2015.5~2016.2, 4년차 2016.3~2016.12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촌진흥청 식량종자사업단은 2018년 국립식량과학원과 민간 연구기관이 주관하여 품목별로 각각 2~3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7개 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 저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어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성과 저조의 원인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과 달리 벼와 감자의 국내 품종이 해외 현지 적응 시험에 어려움이 나타남에 따라 품종 발굴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며, 그 결과 벼와 감자의 경우 품종 등록 및 수출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의 경우 채소, 원예 작물과 달리 품종 육성에 장기간(7~10년)이 소요되며, 벼와 감자의 실적 저조는 기존 개발 품종 중 현지 적응성 시험에서 적응력이 뛰어난 품종의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2단계 사업(2017~2021년)부터 품종개발 등 사업성과가 본격화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 식량종자사업단의 수출 목표액을 벼·감자 1,000만 달러, 옥수수 1,500만달러로 계획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총 사업 기간의 절반이 경과한 시점(2016년)에서의 성과가 매우 저조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Golden Seed 프로젝트에서 달성한 총 2,093건의 수출 중 농촌진흥청의 실적은 5건에 불과하고,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0.08%로 사업 실적이 부진하므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Golden Seed 프로젝트 식량분야 과제현황]

(단위: 백만원)

	주관기관	참여기관	2017 예산액	2018 예산안	2019 이후
1. 수출용 일대잡종 벼 품종 개발 및 수출기반 조성	식량원	팜한농	480	480	3,279
2. 수출용 중장립현 다수성 벼 품종개발 및 수출기반 조성	식량원	건강나라	660	660	4,284
3. 중국남부 및 동남아시아 적응 수출용 감자 품종육성 및 수출기반 조성	식량원	오리온	600	600	3,951
4. 중앙아시아 및 북방지역 적응 수출용 감자 품종육성 및 수출기반 조성	홍익바이오	홍익바이오	584	584	3,860
5. 수출용 단옥수수 품종개발 및 수출기반 조성	농우바이오	충북대	392	392	2,586
6. 열대지역 적응 수출용 옥수수 품종개발 및 수출기반 조성	아시아종묘	식량원	530	530	3,358
7. 고위도 지역 적응 수출용 옥수수 품종개발 및 수출기반 조성	농협종묘	강원도원	500	500	3,188

자료: 농촌진흥청

가. 현황

농축산물수출확대장애요인해소기술 개발 사업¹⁾은 FTA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을 수출 주도형 농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수출 단계에 있는 신선농축산물에 대한 장애요인 해소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60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농축산물수출확대장애요인해소기술 개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축산물수출확대장애요인 해소기술개발	0	0	0	6,000	6,000	순증
수출용 접목묘 대목 선발 및 무병묘 생산 기술 개발	0	0	0	1,500	1,500	순증
수출 신선 농축산물 안정공급 장애요인 해 소기술 개발	0	0	0	3,200	3,200	순증
수출 신선 농축산물 해외 잔류기준 설정	0	0	0	1,300	1,300	순증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기술우위 분야 및 수출경쟁력 우위 품목의 시장확대를 목적으로 농축산물수출확대장애요인해소기술 개발 사업의 과제를 계획하였으며, 이 중 첫 번째 내역사업은 수출용 종자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목표로 종묘²⁾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³⁾이다. 이에 동 내역사업은 종묘 관련 대량 생산 기술,

남 회 예산분석관(nhc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일반회계 1147-308

2) 식물의 씨나 싹을 심어서 가꿈. 또는 그런 모종이나 묘목을 의미한다.

3) 농축산물수출확대장애요인해소기술 개발 사업은 국내 경쟁력 우위에 있는 채소 접목묘(모종) 및 대목(호

내병성·내환경성 종묘의 선발 기술 등의 연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2018년 5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15억원이 편성되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가 접목 등에 있어 기술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수출 시장 및 품목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 내역사업인 수출 신선 농축산물 안전 공급 장애요인 해소 기술 개발도 신선농축산물을 다양한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계절에 무관하게 출하할 수 있는 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나. 분석의견

농축산물수출확대장애요인해소기술 개발 사업은 법적 근거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물수출확대장애요인해소기술 개발 사업은 FTA 대응 경쟁력 향상 기술 개발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기획된 사업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은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출 단계에 있어 경쟁 우위에 있는 품목의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한 예산 편성은 사업의 법적 근거와 상이한 측면이 있다.⁴⁾

예를 들어 내역사업인 수출 신선 농축산물 안전 공급 장애요인 해소 기술 사업의 2018년 과제 품목인 파프리카·딸기·배·단감⁵⁾ 등의 수출입 현황을 보면, 파프리카는 수입액이 전혀 없는 반면, 수출액은 1,088억원에 이르고 딸기·배·단감 모두 농산물 수출입 결과 대규모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박)종자, 접목로봇 등을 포함한 종묘 사업과 짓소의 정액 및 수정란 등을 아프리카 등에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4)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지금까지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한 FTA 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업 부분의 경쟁력 향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여 동 사업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5) 2018년 농축산물수출확대장애요인해소기술 개발 사업은 파프리카 고온기 착과 불량 해소, 딸기 저장력 향상 품종 개발 및 보급, 배 생리장해 해소 기술 개발, 배·단감 과피흑변·과심갈변 생리장애 해소 등의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농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톤, 백만원)

품목명	수입액				수출액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파프리카	0	0	0	0	29,376	96,418	30,276	108,847
딸기	7,659	15,581	8,792	17,395	3,676	37,353	4,125	39,578
배	36	104	21	53	22,493	65,302	25,607	75,846
단감	0	0	0	0	8,612	12,656	6,838	10,018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또한 수출 신선 농축산물 해외 잔류기준 설정 사업도 수출국별 농약 및 유해 미생물 등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수출 가능성이 있고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작목을 중심으로 연구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농축산물수출확대장애요인해소기술개발 사업은 법적 근거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FTA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축산물에 대한 관련 연구개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핵심기반기술 개발¹⁾ 사업은 반려동물산업을 국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반려견의 우수형질을 선발하고 증식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며, 기능성 사료 등의 국산화 기반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48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반려동물산업활성화 핵심기반기술 개발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반려동물산업활성화 핵심기 반기술 개발	0	0	0	4,800	4,800	순증
반려견 우수형질 선발 및 증식 효율화 기술 개발	0	0	0	1,900	1,900	순증
반려견 주요 질병 조기진 단 및 복지증진 기술개발	0	0	0	2,900	2,900	순증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두 개의 내역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첫 번째 내역사업은 반려견의 우수 형질을 선발하고 증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고, 두 번째 내역사업은 반려견의 주요 질병에 대한 조기진단과 복지증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 분석의견

첫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및 연구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남 회 예산분석관(nhc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일반회계 1147-310

내역사업인 반려견 우수형질 선발 및 증식 효율화 기술 개발은 증식효율과 우수형질로 분류된다. 이 중 증식효율은 반려견의 복제생산 기술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우수형질은 유전학 분석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반려견 복제생산 기술 효율화 플랫폼 구축은 반려견을 대상으로 특수목적견의 우수 개체 개발, 개 체세포 복제수정란의 임신율 향상 연구, 유전자원 동결보존 기술 개발 등을 연구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한편, 동물의 사육·관리 및 보호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제3조2)는 2018년 3월 22일부터 의무 조항으로 변경³⁾되어 동물보호의 수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24조4)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금지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은 이 조항의 예외⁵⁾와 관련하여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를 하는 경우, 방역을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 생태·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실험하는 경우에는 실험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려견을 대상으로 증식효율, 우수형질 등의 사업 내용이

2)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4) 「동물보호법」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使役)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5)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3조(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 ①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 등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를 하는 경우
 2. 방역(防疫)을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
 3.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種)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실험하는 경우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실험을 하려면 해당 동물을 실험하려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되, 심의 결과 동물실험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면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승인으로 본다.

동물의 생명보호 및 존중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다소 괴리가 있으며,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실험금지의 예외 조항과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핵심기반기술 개발 사업이 2018년 신규로 추진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연구윤리 및 연구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산업활성화 핵심기반기술 개발사업 주요 연구추진 내용]

		1단계(2018~2020)
반려견 우수형질 선발 및 증식 효율화 기술 개발	반려견 유전자원 수집·보존·증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견(토종견 포함) 우수 유전자원 수집·보존 ○ 개의 난자 및 복제 수정란 동결보존 기술 확립 ○ 개 생식세포 체외 배양
	반려견 형질평가 마커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성 유전병 유전자 마커 개발 ○ 반려견 품종간 및 품종 내 유전변이 집단유전학적 분석 ○ 개체식별 유전자 마커 개발
반려견 주요 질병 조기진단 및 복지 증진 기술개발	생애주기별 주요 질병 조기진단·관리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견 생애주기별 주요 질병 국내 발생 현황조사 ○ 생애전환기 주요 질병 조기진단 지표 설정 ○ 반려견 혈액형 판정기술 개발
	반려견 복지증진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견 스트레스와 행동변화 상관관계 분석 ○ 번식견사 사육환경·시설 조사 및 생산시설 기초모델 디자인

자료: 농촌진흥청

둘째,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핵심기반기술 개발 사업은 협약 관련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동물보호법」,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사법」, 「약사법」⁶⁾ 등 다수의 법에 산재되어 있으나, 산업 육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는 부재하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이 반려동물 관련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R&D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촌진흥청(축산과학원) 간의 역할 분담이 선행되어야 하며,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축산과학원), 농협(축협), 수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6) 동물의약품 유통구조와 관련된다.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핵심기반기술 개발 사업 기획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농촌진흥청은 반려견 주요 질병 조기진단 및 복지증진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의 사육환경, 사육시설, 번식시설 등과 관련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며, 유기동물 개체 관리 관련 기술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신규로 추진 예정인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핵심기반기술 개발 사업은 민간의 수요를 반영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학·관·연 사업단의 체계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하였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 및 참여기관 등 관련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협약에 대한 사업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관련 사업 계획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2018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18년도 산림청 소관 총수입은 9,41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4억원(4.8%)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17년 900억원에서 2018년 912억원으로 1.4% 증가하였으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8,394억원에서 7,953억원으로 5.3% 감소하였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590억원에서 545억원으로 7.7% 감소하였다.

[2018년도 산림청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030,080	980,863	988,405	941,027	△47,378	△4.8
- 일반회계	84,160	89,994	89,994	91,242	1,248	1.4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93,606	831,871	839,413	795,323	△44,090	△5.3
- 지역발전특별회계	1,807	0	0	0	0	0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0,507	58,998	58,998	54,462	△4,536	△7.7

주: 총수입 기준

자료: 산림청

2018년도 산림청 소관 총지출은 2조 135억원으로 전년 대비 477억원(2.3%)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652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476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475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33억원이다.

[2018년도 산림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957,903	2,011,118	2,061,193	2,013,510	△47,683	△2.3
- 일반회계	945,316	942,976	983,918	965,190	△18,728	△1.9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60,259	682,800	682,800	647,567	△35,233	△5.2
- 지역발전특별회계	307,456	327,274	336,407	347,461	11,054	3.3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4,872	58,068	58,068	53,292	△4,776	△8.2

주: 총지출 기준
자료: 산림청

나. 세입·세출

2018년도 산림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9,41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4억원(4.8%) 감소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900억원에서 2018년 912억원으로 1.4% 증가하였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8,394억원에서 7,953억원으로 5.3% 감소하였으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590억원에서 545억원으로 7.7% 감소하였다.

[2018년도 산림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030,080	980,863	988,405	941,027	△47,378	△4.8
- 일반회계	84,160	89,994	89,994	91,242	1,248	1.4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93,606	831,871	839,413	795,323	△44,090	△5.3
- 지역발전특별회계	1,807	0	0	0	0	0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0,507	58,998	58,998	54,462	△4,536	△7.7

주: 총계 기준
자료: 산림청

2018년도 산림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조 7,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741억원(2.6%) 감소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1조 5,894억원에서 2018년 1조 5,528억원으로 2.3% 감소하였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8,394억원에서 7,953억원으로 5.3% 감소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는 3,364억원에서 3,475억원으로 3.3% 증가하였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590억원에서 545억원으로 7.7% 감소하였다.

[2018년도 산림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742,925	2,759,020	2,824,179	2,750,050	△74,129	△2.6
- 일반회계	1,588,711	1,540,877	1,589,362	1,552,804	△36,558	△2.3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00,914	831,871	839,412	795,323	△44,089	△5.3
- 지역발전특별회계	307,456	327,274	336,407	347,461	11,054	3.3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8,844	58,998	58,998	54,462	△4,536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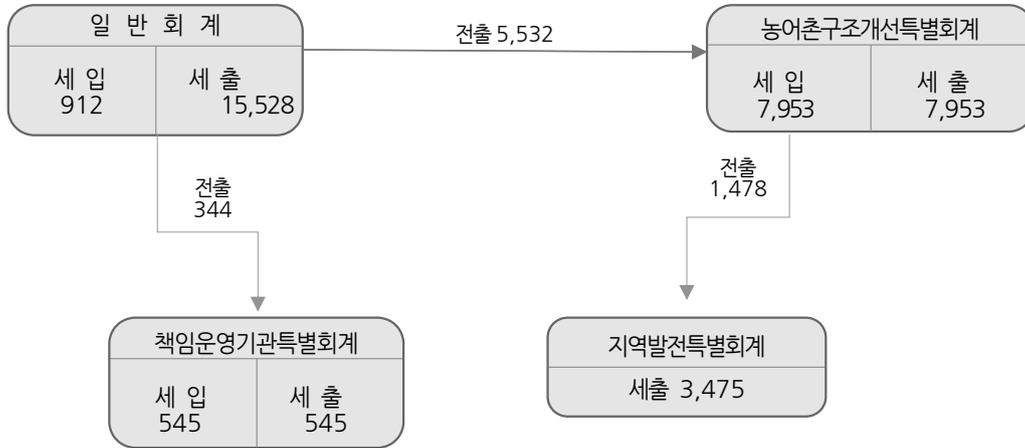
주: 총계 기준
자료: 산림청

다. 재정구조

2018년도 산림청의 회계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5,532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344억원이 전출되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1,478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부담금으로 12억원이 전출되었다.

[2018년도 산림청 소관 회계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산림청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산림청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 205억원 규모이다. 기후영향 적응연구(R&D)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생태계 구조 및 기능 보전에 대한 연구를 위한 것이며,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개발(R&D)는 산림재해 예측 기술 고도화를 통한 정확도 향상 도모를 위한 것이다. 지진·해일대응 사업은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땅밀림 억제 등 해안방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존 사방사업에서 이관되었다. 새만금수목원 조성은 해안식물 유전자원 개발 및 보전 등을 위해 신설되었으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임업인경영자금지원(융자)은 임업인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산림청 2018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예산안
일반회계 (4개)	기후영향 적응연구(R&D)	3,982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개발(R&D)	1,350
	지진·해일대응	3,504
	새만금수목원 조성	1,70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개)	임업인경영자금 지원	10,000
합 계		20,536

자료: 산림청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산림서비스도우미 ②산사태재난 경계피난 ③국립세종수목원 조성 ④귀산촌인창업자금지원 ⑤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생활)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산림서비스도우미는 유아숲, 산림치유 등 관련 전문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었고, 산사태재난 경계피난은 비구조물 중심의 산림재해예측력 강화를 위한 산악기상망 구축·운영을 위하여,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은 공사연차에 따라 주 공사가 진행되는 점을 반영하여 예산이 증액되었다. 귀산촌인창업자금지원은 임야거래 활성화 등 임업인 지원 강화를 위하여,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은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등에 대한 지자체의 수요가 늘며 예산이 증액되었다.

[산림청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10개)	산림생명자원 소재 발굴연구(R&D)	3,900	3,900	5,202	1,302	33.4
	신기후체제 대응 연구(R&D)	3,000	3,000	4,679	1,679	56.0
	산림서비스도우미	10,619	12,919	26,247	13,328	103.2
	산림복지활성화사업	15,530	15,530	24,724	9,194	59.2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968	968	6,267	5,299	547.4
	산림생물다양성증진	14,374	14,374	19,556	5,182	36.1
	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 관리기술개발사업(R&D)	200	200	300	100	50.0
	한국수목원관리원 지원	16,022	16,022	20,933	4,911	30.7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11,966	11,966	24,900	12,934	108.1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1,696	1,696	2,655	959	56.5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3개)	조림	99,890	99,890	112,240	12,350	12.4
	귀산촌인창업자금지원 (융자금)	24,000	24,000	34,000	10,000	41.7
	융복합기반 임산업의 신 산업화 기술개발(R&D)	5,629	5,629	8,410	2,781	49.4
지역발전 특별회계 (1개)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생활)	150,489	150,489	173,068	22,579	15.0
합 계		358,283	360,583	463,181	98,646	28.5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산림청

2018년도 산림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에 86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② 양질의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업 일자리 지원사업인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에 26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③ 임산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에 59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④ 임업인 경영안정 및 임업 진입 촉진을 위하여 임업인경영자금지원 사업이 100억원의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2018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사업은 연간 300명의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10개월간 운영하여 산불현장 투입 및 진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불 빈발시기 및 지역을 감안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운영기간 및 배치를 검토하는 등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은 기존에 직접 고용하여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하였던 유아숲지도사를 민간의 위탁운영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증가하는 산림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탁운영 및 유아숲지도사 자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외산림인턴 지원 사업은 산림분야 해외 직장체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과 기업 맞춤형 인력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체험형 인턴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형 인턴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운영 효율성 제고방안 필요

가. 현황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사업¹⁾은 동시다발·대형산불, 야간산불 등의 산불현장 투입 및 진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의 내역사업이며, 2018년 신규사업으로 88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산림재해일자리	0	68,850	87,397	86,749	17,899	20.5
산불재난특수진화대	0	0	0	8,813	8,813	순증

자료: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이하 “특수진화대”) 사업은 산림청에 의하여 직접 운영될 예정이며, 연간 채용인원은 300명, 근무기간은 250일(약 10개월)이고 1일 임금은 10만원이다²⁾.

이외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하 “예방진화대”)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등이 있다. 예방진화대의 선발인원은 10,762명³⁾으로서, 주로 2월부터 5월 중순 및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연간 150일간 산불예방활동, 산불 진화·뒤틀감시 및 진화장비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며, 1일 임금은 약 63,000원이다.

오은선 예산분석관(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1931-310

2) 특수진화대는 시범사업으로서 2016년에 100명, 2017년에 200명으로 운영 중이며, 인건비 등 관련예산은 기존의 예방진화대 사업예산(국가 직접운영)에서 집행되고 있다. 그 결과 예산상 예방진화대의 편성인원(국가 직접운영)은 2016년 1,350명, 2017년 1,405명이었으나 실고용인원은 2016년 1,052명, 2017년 83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18년에는 특수진화대가 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예산상 편성인원인 1,405명 전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3) 국가 직접운영 1,405명(국비 100%), 지자체 운영 9,357명(국고보조율 40%)

나. 분석의견

산불 빈발시기 등을 감안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운영기간 및 배치에 대한 검토 등 운영 효율성 제고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산불 빈발시기는 가을철부터 봄철의 기간(11월~이듬해 4월)으로서 발생건수의 77.7%, 피해면적의 92.8%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야간산불 역시 주로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주로 발생하며, 100ha 이상 피해를 입은 대형산불이 발생한 시기의 경우 3~4월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감안할 때, 특수진화대의 운영기간이 산불 비수기를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1인당 연간 250일인 점에 대한 검토의 여지가 있다.

주 업무에 있어 예방진화대는 산불예방·진화(야간진화 등 제외), 특수진화대는 대형·야간 산불현장 등 투입으로서 차이가 있고, 현재 예방진화대가 재정지원일자리로서 장년층(55세 이상)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대하여 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불재난 대응능력이 보다 뛰어난⁴⁾ 특수진화대의 사업취지는 인정된다. 또한 산림청은 예방진화대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5~10월에 발생하는 산불 등에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특수진화대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진화대의 사업 취지가 산불현장 투입 및 진화 역량의 강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근무기간의 책정과 산불 빈발시기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산불 발생시기를 감안하여, 전체 인원의 근무기간을 일률적으로 책정하지 않고 상시(10개월)근무인원과 산불 빈발·고위험 시기의 집중투입인원을 나누어 선발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⁵⁾.

또한 특수진화대의 배치(안)을 살펴보면 1개 지방청·관리소당 동일하게 10명⁶⁾의 특수진화대가 배치될 예정(10명×30개소)인데, 특수진화대의 사업목적이 실질적인 산불대응능력 제고인 만큼, 산불 빈발지역, 야간·대형 산불 주발생지역, 진화 장시간소요지역 등 구체적인 현황을 고려하여 개소당 인력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특수진화대의 경우 예방진화대보다 체력검정요건 등이 강화될 예정이다.

5)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상시근무가 아닐 경우 우수인재의 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나, 임금단가(1일 10만원)를 고려할 때 단기근무에 대한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6) 산림청은 특수진화대가 산불 진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10명을 1개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살수 2, 호스설치 3, 진화선 구축 2, 펌프가동 1, 수조관리 1, 진화차운전 1).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비교]

구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전형→체력검정→면접 ○ 체력검정: 기관별 응시인력을 감안하여 자체적(체력검정 기준 포함)으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전형→체력검정→면접 ○ 체력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력검정을 통하여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감시, 산불진화 전담인력으로 활용하여 산불피해 최소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발생 시기가 연중으로 확대되고 도시지역·야간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대형화 되는 등 유동적인 산불변화 추세에 적극 대응
근무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1일 8시간 ※ 산불발생위험도, 지역실정과 기상여건에 따라 계절(월)별 근무시간 조정, 산불발생시 반드시 출동 ○ 근무기간: 5개월(산불조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1일 8시간 ※ 기상여건 및 산불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 ○ 근무기간: 10개월(산불조심기간 포함 운영)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단가: 1일 48,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단가: 1일 100,000원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방지 계도 및 산불 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사업 ○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 장비의 유지·관리 등 산불방지와 관련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상 시(우천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재난과 산림재해대응 교육·훈련 및 진화자원 정비, 산불재난 대비·대응태세 구축(담수지 확보, 인화물질제거, 산불예방활동 등) 등 ○ 산불상황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현장 투입 및 산불진화(국·사유림 구분 없음)

자료: 산림청

[최근 10년간 월별 산불 발생현황]

(단위: 건, ha)

구분	전체(평균)		야간(평균)		30ha 이상(누계)		100ha 이상(누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합계	394	478.05	44.9	79.19	0	0	0	0
1월	30	27.02	6.4	4.70	2	133.40	0	0
2월	49	21.58	6.1	2.65	1	52.00	0	0
3월	100	158.70	6.2	31.48	10	1,382.60	3	634.7
4월	94	213.73	8.8	32.84	12	1,433.99	4	899.8
5월	38	23.54	4.4	3.34	1	86.00	0	0
6월	24	5.99	3.8	1.38	0	0	0	0
7월	2	0.18	0	0	0	0	0	0
8월	3	0.49	0.5	0.09	0	0	0	0
9월	7	1.08	0.6	0.12	0	0	0	0
10월	14	3.29	1.9	0.44	0	0	0	0
11월	19	11.90	3.2	1.41	1	47.00	0	0
12월	14	10.55	3.0	0.74	1	68.00	0	0

주: 2007~2016년 기준 평균이며, '30ha 이상' 및 '100ha 이상' 란은 10년간 누계임.
 자료: 2016년 산불통계연보(산림청, 2017. 3)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¹⁾은 기존에 직접 고용하여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하였던 유아숲지도사를 민간의 위탁운영방식²⁾으로 전환함으로써 증가하는 산림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의 내역사업이며 2018년 신규사업으로 63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산림서비스도우미	9,930	10,619	12,919	26,247	13,328	103.1
유아숲교육 운영	0	0	0	6,343	6,343	순증

자료: 산림청

산림청에 따르면 기존의 유아숲지도사 직접고용 예산(2017년 기준 86명, 17억원)이 동 사업 예산으로 편입되어 기본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동 사업의 2018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국고지원 30억 6,900만원(45개 기관 × 6,800만원), 지방자치단체 보조³⁾ 32억 7,400만원(96개 기관 × 6,800만원 × 50%)으로서 총 지원기관(업체)의 수는 141개이다.

나. 분석의견

기존 유아숲지도사를 통한 사업을 위탁으로 전환함에 있어, 유아숲교육 위탁운영 및 유아숲지도사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오은선 예산분석관(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1740-302

2) 유아숲지도사 고용인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구성·참여자 모집·진행 등 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위탁하는 방식일 것으로 예상된다.

3)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가 일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 8월 기준 산림복지전문업(유아숲교육업,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업체는 38개⁴⁾이며, 유아숲지도사 자격 취득자는 약 2,134명⁵⁾이다.

등록업체 수(38개)가 동 사업의 지원기관 수인 141개 대비 27.0% 수준인 점, 유아숲지도사 보수교육이 의무가 아니므로 총 자격취득자 중 사업에 적합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일부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행 첫 해인 2018년에는 신규등록 업체의 역량부족, 부적정 유아숲지도사의 참여 등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여가생활과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위탁전환을 통하여 유아숲교육 민간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향후 유아숲교육 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산림청은 유아숲교육 위탁업체 선정·사업관리 및 유아숲지도사 자격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유아숲지도사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교육 및 자체시험을 통해 배출되고 있으며 교육과정·기간 및 수강료가 양성기관마다 상이한데, 이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⁶⁾.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격에 대한 검증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방법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⁷⁾.

덧붙여 기존에 직접고용하였던 유아숲지도사는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유아숲체험원의 활동코스·시설물 관리, 안전환경 조성 등의 공공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탁운영 전환으로 인하여 이러한 유아숲체험원의 공공적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유아숲지도사 자격 취득 현황]

(단위: 명)

계	2013~2015	2016	2017. 8월말
2,134	936	637	661

자료: 산림청

- 4) 유아숲교육업 33개(서울 10, 부산·충북·충남 각 2,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각 1, 경기·강원 각 3, 경북 5), 종합산림복지업 5개
- 5) 숲해설가의 경우 2017년 8월말 기준 약 8,937명(2017년 취득 847명 포함)이다.
- 6) 산림청은 현재 인증기관 심사 시 교육과정 등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일정수준 이하로 교육수준 등이 하락하는 것은 방지된다는 입장이다.
- 7) 산림청은 추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유아숲지도사·숲해설가·산림치유지도사 등의 보수교육(3~4년 주기 등)을 법제화하며, 유아숲지도사 자격을 등급화(1·2급 등)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아숲지도사 역할 및 자격취득방법 등]

법적 정의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람	
역할	유아숲체험원 등에 배치되어 유아들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함. 숲생태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유아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하여 유아들이 숲에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 놀이, 상담, 보호, 치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취득 방법	취득방법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 출석시간, 이론 및 시연평가 70점 이상,교육실습 30시간 이상
	참가제한	학력, 경력, 연령 등 제한 사항 없음
	교육기간	약 5개월 ※ 교육기간, 수강료는 양성기관마다 상이하며 상기기간은 평균 소요기간
	교육횟수	연 1~2회 (2회의 경우 평균 상·하반기)
	신청방법	양성기관의 교육생 모집시기에 맞춰 양성기관에 개별 접수 ※ 양성기관마다 교육시기가 다를 수 있음
	자격증교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교부

자료: 산림청

가. 현황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¹⁾은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생산·유통 기반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임산물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임가소득 증대 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예산안은 2017년 대비 25억 2,700만원 감액된 596억 200만원이다.

[2018년도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청정임산물이용증진	55,462	62,129	62,129	59,602	△2,527	△4.1
· 종자공급체계구축	3,470	4,470	4,470	5,120	650	14.5%
· 생산기반조성	30,812	30,812	30,812	30,812	0	0
· 가공산업육성	4,842	4,842	4,842	4,842	0	0
· 유통구조개선	7,900	11,940	11,940	11,740	△200	△1.7%
· 임산물6차산업화	6,500	8,327	8,327	5,350	△2,977	△35.8%
· 소비촉진 및 정보관리	1,938	1,738	1,738	1,738	0	0

자료: 산림청

나. 분석의견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이 낮으므로,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비가 549억 8,400만원으로서 총 예산의 9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부진한 문제가 있다.

오은선 예산분석관(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37-300

[2018년도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 비목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청정임산물이용증진	55,462	62,129	62,129	59,602	△2,527	△4.1
일반수용비(210-01)	0	20	20	20	0	0
피복비(210-03)	0	4.5	4.5	4.5	0	0
임차료(210-07)	0	2.5	2.5	2.5	0	0
여비(220-01)	0	15	15	15	0	0
사업추진비(240-01)	2	4	4	4	0	0
관서업무추진비(240-02)	0	2	2	2	0	0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100	100	0	0
민간경상보조(320-01)	796	750	750	750	0	0
민간자본보조(320-07)	1,920	1,720	1,720	3,120	1,400	81.4%
지자체경상보조(330-01)	3,082	3,082	3,082	3,082	0	0
지자체자본보조(330-03)	48,962	55,829	55,829	51,902	△3,927	△7.0%
출연금(350-01)	600	0	0	0	0	0
출연금(350-02)	0	600	600	600	0	0

자료: 산림청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지자체 교부금의 평균 실적행률은 58.2%에 불과하여 연례적으로 큰 규모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6년의 경우 지자체 교부금 520억 4,400만원 중 52.8%인 274억 5,400만원만이 실적행되고 163억 2,400만원이 2017년 예산으로 이월된 상황이다. 2017년 역시 교부액 589억 1,100억원 중 126억 8,600만원만이 집행된 상태로서 집행저조가 우려된다.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 지자체 국고보조 실적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산림청 예산액	지방자치단체 집행내역				
		교부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2013	32,535	32,535	23,455	5,678	3,401	72.1
2014	33,871	33,871	23,706	7,959	2,205	70.0
2015	44,962	44,962	23,300	14,952	6,710	51.8
2016	52,044	52,044	27,454	16,324	8,266	52.8
2017.8월	58,911	58,911	12,686	0	0	21.5

자료: 산림청

산림청은 집행부진사유로서 지자체의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자부담분 부담 등으로 인한 사업 포기자 증가 및 공개경쟁입찰 수행 대상자 선정 지연을 들고 있으며, 자부담금 우선 집행²⁾ 확인 후 국고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10월 이후부터 실집행률이 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내역사업 중 임산물⁶차산업화 사업의 경우 특히 집행이 저조한데, 2015년에 시작한 총사업기간 3년 사업³⁾의 지자체 국고보조 실집행률을 계산하여 보면 2015년 0.8%, 2016년 32.3%에 불과하고, 2016년 신규사업⁴⁾에 있어서는 2016년 지자체 국고보조 실집행률이 18.5%에 그쳤다. 산림청에 따르면 임산물⁶차산업화 사업의 실집행 저조 문제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장기간 소요, 부지 미확보, 지자체 사업계획 미흡 등에 기인한 것이다.

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제5항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집행 후 국고보조금을 집행한다.

3) 산림버섯클러스터(충북 괴산), 묘목유통단지(충북 옥천), 청정임산물 6차산업단지(전남 곡성), 황칠 산업화 단지(전남 장흥), 산양삼산업화단지(경남 함양)

4) 지리산 향노화유통센터(경남 함양), 임산물클러스터(충남 보은, 충남 공주)

[임산물6차산업화 상세사업별 지자체 실집행액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상세사업	2015					2016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산림버섯 클러스터	300	0	300	0	0	1,000	300	700	0	30%
묘목 유통단지	200	10	190	0	5.0%	890	11	700	179	1.2%
청정임산물 6차산업단지	300	0	300	0	0	1,000	333	631	36	33%
황칠 산업화단지	150	0	150	0	0	850	468	378	4	55%
산양삼 산업화단지	323	0	323	0	0	1,023	430	593	0	42%
임산물 클러스터	0	0	0	0	0	2,000	510	1,489	1	25%
자라산 향노화 유통센터	0	0	0	0	0	1,000	44	956	0	4.4%
계	1,273	10	1,263	0	0.8%	7,763	2,096	5,447	220	27%

자료: 산림청

2018년 임산물6차산업화 사업에는 총사업기간 2년의 신규사업인 전북권역 6차산업화(정읍)에 11억 5,000만원, 단년 사업인 임산물클러스터 2개소에 총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향후 사업의 집행 부진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전 사업의 실제 추진현황을 감안하여 2018년에 2년 또는 단년으로 책정된 사업기간을 현실적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의 지자체 보조금 교부시기 및 횟수가 2월·4월(총 2회)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집행률을 반영하여 보조금 교부시기나 횟수를 달리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가. 현황

임업인경영자금지원 사업¹⁾은 임업인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통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임업분야 신규종사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용자사업으로서, 2018년 신규 사업으로 1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임업인경영자금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임업인경영자금지원	0	0	0	10,000	10,000	순증

자료: 산림청

나. 분석의견

임가소득 등 임업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요건 등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사업대상자를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임업인과 임업분야 신규종사자 등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자 1,000명에게 1인당 평균 1,000만원²⁾을 용자³⁾하고, 대출 기간은 2년, 금리는 고정금리의 경우 2.5%(변동금리 가능)로 할 예정이다. 동 사업의 대상 인원 책정방식 및 용자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경영자금⁴⁾의 예를 참조한 것이다.

오은선 예산분석관(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38-311

2) 임가 9.5만호 × 지원비율 1.5% × 대출률 70% = 997.5 ≒ 1,000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경영자금: 전체 농가 대비 농축산경영자금 지원비율 1.5%, 대출률 70~80%

3) 산림청은 신규사업의 수요예측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우선 용자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속사업 시 수요 변동 등을 감안하여 이차보전의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경영자금을 포함한 농업정책자금사업에 있어, 국가재정의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가재정에 의한 직접용자방식이 아닌 이차보전 방식을 택하고 있다. 농업정책자금

임업인의 소득상황은 농·어가에 비하여 열악한 편으로서, 2016년 기준으로 임가소득은 농가의 90.3%, 어가의 71.3%이다. 또한 임업의 특성상 다른 사업에 비하여 소득창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시급성 등의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수요자에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임가소득 등 지원요건을 포함한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업인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사업 위험요소 관리방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2017년 10월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추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⁵⁾. 임업인의 경영안정 및 임업 진입 촉진이라는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사업 신설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검토에 앞서 조속히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임가소득과 농·어가소득 비교]

(단위: 천원, %)

구분	2014	2015	2016
임가소득	31,058	32,223	33,585
농가소득	34,950	37,215	37,197
어가소득	41,015	43,895	47,077
임가/농가소득(%)	88.9	86.5	90.3
임가/어가소득(%)	75.7	73.4	71.3

자료: 산림청, 2016 임가 경제조사, 2017. 5.

의 2018년 용자규모는 7조 2,174억원(농축산경영자금 1조 4,200억원 포함)이며, 농업정책자금과 부채대책 이차보전 사업을 합한 농업자금이차보전(코드: 농특회계 1040-301) 사업의 2018년 예산은 2,215억원 6,200만원이다.

5) 산림청은 10월 하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관련기관 전문가와 사업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 현 황

한국임업진흥원 지원¹⁾ 사업은 국가 산림자원조사 및 임업경영 정보서비스 제공, 임업 및 목재산업 기술 보급·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인건비, 경상경비, 고유목적사업비를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민간보조 사업이다.

산림청은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도 예산 210억 1,500만원 대비 19억 500만원이 증액된 22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22,171	21,015	21,015	22,920	1,905	9.1

자료: 산림청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100억 9,600만원, 경상경비 28억 4,200만원, 사업비 110억 8,600만원, 시설비 12억 2,000만원, 예비비 3억 3,400만원에 한국임업진흥원 2018년도 예상 자체수입 26억 5,800만원을 차감한 229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42-300

[2018년도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예산(A)	2018년 예산안(B)	(B-A)
인건비	9,342	10,096	754
경상경비	2,842	2,842	0
사업비	9,477	11,086	1,609
시설비	1,320	1,220	△100
예비비	179	334	155
자체수입	△2,145	△2,658	△513
합계	21,015	22,920	1,905

자료: 산림청

나. 분석의견

한국임업진흥원은 동 사업의 고유목적사업비를 부적절하게 활용하여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연도말 직원 해외연수 등으로 집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연례적으로 경상경비에 속하는 교육훈련 성격의 해외연수, 개인자격증 취득 일반교육을 사업비를 활용하여 집행한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2016년의 경우에는 목재제품품질관리 사업비를 활용하여 연도말에 한국임업진흥원 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비를 활용하여 기술거래사교육, 6시그마 입문 교육, 전직원 워크숍 교육비를 집행한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경상경비²⁾의 정의에 따르면, 교육훈련비를 경상경비로 규정하고 있어, 직원 대상 해외연수비, 워크숍 교육비, 개인 자격증 교육훈련비는 사업비가 아닌 경상경비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한국임업진흥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해외연수 등의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 12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을 말한다.

[2015~2017년(8월) 사업비를 활용한 해외연수 등 교육훈련 사업 추진(예시)]

(단위: 천원)

연도	내역사업명	건명	지출일자	지출금액
2017 (8월)	목재제품 품질관리	2017년도 경영평가 신규지표 교육	2017. 5. 16	2,750
		교육훈련비(공공기관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실적 관리 실무)	2017. 6. 1	520
		교육훈련비(노무관리양성)	2017. 6. 1	440
		교육훈련비(감사교육원)	2017. 6. 20	265
		제2차 경쟁 워크숍	2017. 1. 12	1,000
		경쟁TF 워크숍	2017. 4. 26	1,000
		경쟁보고서 작성 제2차 워크숍 세미나실 대관	2017. 1. 31	753
		18년도 중기 예산(안) 작성 워크숍	2017. 1. 31	600
	임산업활성화지원	교육훈련비(고객만족경영 기초)	2017. 6. 8	460
	특별관리 임산물품질관리	1인1임산물&조사분석실 워크숍	2017. 7. 20	890
2017년도 하반기 사업추진 리뷰 워크숍		2017. 7. 21	845	
임업소득본부 전직원 워크숍		2017. 5. 26	800	
2016	목재제품 품질관리	2016년 우수직원 해외연수(인도네시아)	2016. 12. 27	20,000
		2016년 우수직원 해외연수(일본)	2016. 12. 23	20,000
		2016년 11월 전화외국어 교육비 일부지급	2016. 12. 9	1,850
		6시그마 입문 White-Belt	2016. 6. 3	840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기술거래사교육	2016. 8. 16	1,600
	임산업 활성화지원	공공기관 경영실적 보고서 작성 대응 실무	2016. 12. 23	770
		유통관리사 판매사무 과정	2016. 11. 18	700
		변화관리 리더쉽(한국능률협회)	2016. 12. 31	640
2016 전직원 워크숍 교육진행비		2016. 5. 30	2,200	
임업자산개발보급	2016년 하반기 고객만족(CS) 교육비	2016. 11. 18	1,900	
2015	목재제품 부가가치 증대	교육훈련비(자산관리실무)	2015. 11. 23	1,000
		직원역량강화 교육(한국생산성본부)	2015. 12. 26	1,000
	임업생산역량강화	전직원 워크숍 전세버스(3대)	2015. 10. 29	3,630
	R&D관리 성과보급	전직원 워크숍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운영	2015. 11. 2	1,320
	R&D관리 성과보급	전직원 워크숍 숙박비(임업지식통합서비스 센터)	2015. 11. 2	740
	임업생산 역량강화	전직원 워크숍 기념품	2015. 11. 4	440
	임산물 판로개척 지원	직장인의 역량 개발 및 경력관리	2015. 12. 16	280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향후, 한국임업진흥원은 사업비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외연수 등과 같은 교육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해외산림인턴 지원 사업은 산림분야 해외 직장체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과 기업 맞춤형 인력지원으로 해외산림개발 활성화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을 도모하는 국제산림협력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산림청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민간보조로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동 내역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 예산과 동일한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국제산림협력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제산림협력	5,896	6,147	6,147	5,963	△184	△3.0
해외산림인턴 지원	286	286	286	286	0	0

자료: 산림청

동 내역사업의 사업수행체계를 살펴보면, 산림관련 대학(원)·전문대 졸업예정자, 졸업 후 미취업자, 재·휴학생(5학기 이상 수료자),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 후 산림관련업체 2년 이상 종사자(3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 산림 관련 기업이나 국제기구에 인턴으로 파견하는데 필요한 체재비²⁾, 항공료, 파견준비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동 내역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해외 진출 기업이나 국제 산림 관련 기구에 해외산림인턴 20명을 파견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³⁾를 지원하는 예산 1억 9,100만원, 해외산림사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단기교육 과정에 필요한 예산 9,500만원을 합한 2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331-300

2) 월 800천원~1,400천원/급지별 상이

3) 국고보조율: 기업 70%, 국제기구 100%

[2018년도 해외산림인턴 지원 사업의 세부내역]

(단위: 명, 과정, 천원, %)

구분	인원 (교육과정)	평균 지원금액	국고보조	2018 예산안
해외산림인턴	20	13,671	70	191,394
인력양성	1	95,000	100	95,000

자료: 산림청

나. 분석의견

동 내역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산림인턴은 체험형 인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형 인턴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이 2013~2017년(8월) 동안 추진한 해외산림인턴의 파견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은 25명의 인턴이 기업에 23명, 국제기구에 2명이 파견되었고 평균 파견기간은 약 6.9개월이었으며, 2016년은 19명의 인턴이 기업에 14명 국제기구에 5명 파견되었고 평균 고용기간은 약 5.4개월로 전체 인턴이 해당 기관의 업무를 체험하는 체험형 인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산림인턴 파견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인턴	평균 파견기간 (월)	평균 보수 (1개월당)	파견 기관	
				기업	국제기구
2013	25	6.9	1,165	23	2
2014	37	6.5	1,200	32	5
2015	42	5.1	1,025	34	8
2016	19	5.4	984	14	5
2017(8월)	18	4.8	1,161	12	6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체험형 인턴은 산림 관련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해당 업종에 대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계약기간(해외산림인턴은 4~8개월)이 종료된 후 정규직 전환이

어렵고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하여 해당 인턴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단순 작업이나 보조 업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질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성이 떨어지고 전문성 함양에도 부족한 문제가 있다.

향후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동 내역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산림인턴의 사업방식을 정규직으로 고용이 예정될 수 있는 정규직 전환형 인턴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청

1 현황

2018년도 해양경찰청 세입예산안은 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00만원(0.8%) 증가하였다.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18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2,987	4,451	4,451	4,486	35	0.8

자료: 해양경찰청

2018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1조 2,718억원으로 전년 대비 614억원(5.1%) 증가하였다.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8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238,379	1,208,251	1,210,406	1,271,844	61,438	5.1

자료: 해양경찰청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범죄수사활동 ② 함정건조 ③ 함정계획정비 ④ 지방관서인건비 등 9개 사업이다.

범죄수사활동 사업은 해양경찰청 개청(2017. 7. 26)에 따라 경찰청으로부터 수사정보 인력이 이체된 영향으로 증액되었고, 함정건조 사업은 2016년 추경예산으로 반영된 3천톤 급 등 신조함정 6척에 대한 연차사업비를 반영하여 증액되었으며, 함정계획정비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선박펀드 사업으로 도입된 중·대형함정의 정비 시기가 도래되어 증액되었으며, 지방관서인건비는 정원 증가 등에 따라 증액되었다.

[해양경찰청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9개)	경비대테러역량강화	4,859	4,859	6,824	1,965	40.4
	교육원기본경비	725	1,045	1,045	320	44.1
	범죄수사활동	2,678	2,678	4,478	1,800	67.2
	본부인건비	47,550	47,550	58,095	10,545	22.2
	지방관서인건비	574,388	574,388	635,410	61,022	10.6
	진압및전투장비관리	1,200	1,200	1,895	695	57.9
	함정건조	40,849	40,849	52,419	11,570	28.3
	함정계획정비	19,818	19,818	28,300	8,482	42.8
	해양경비정보화관리	8,927	8,927	14,572	5,645	63.2
합 계	700,994	701,314	803,038	102,044	14.6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해양경찰청

2018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독도·이어도 해역 해양주권 수호 및 서해5도 경비 등 불법 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위한 함정·항공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②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VTS시설 등 재난 안전망 구축과 해양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구조·구난을 위한 잠수지원정 등 수색구조장비 예산을 계속사업으로서 편성하고, ③ 해양환경보전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는 해양사고 시 오염물질 유출·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장비 확충 및 대형 해상 화학사고 대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며, ④ 함정·항공기 등 장비 성능 유지와 가동률 향상을 위한 정비·유지 등 현장 임무 중심 예산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항공기도입 사업은 해양재난사고에 대한 구난체계를 구축하고 해·공 경비에 필요한 항공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헬기 등)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위하여 노후 항공기의 대체도입에 대한 부처간 통합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신위성장비관리 사업은 해상경비 및 해상치안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신·항해·위성장비를 운영·설치하는 사업으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단계 및 실제 소요현황을 감안하여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예산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항공기도입 사업의 통합적인 대체도입 등 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항공기도입 사업¹⁾은 해양재난사고에 대한 구난체계를 구축하고 해·공 경비에 필요한 항공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헬기 등)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대비 169억 1,000만원 감액된 210억 1,200만원이다.

노후 중형헬기 1대 대체도입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 42억원(4년차 중 1년차), 신규 중형헬기 2대 도입을 위한 계속사업 예산 168억원(4년차 중 3년차) 등이 편성되었으며, 중형헬기 1대당 총사업비는 280억원이다.

[2018년도 항공기도입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항공기도입	24,676	37,922	37,922	21,012	△16,910	△44.6

자료: 해양경찰청

나. 분석의견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위하여 노후 항공기의 대체도입에 대한 부처간 통합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해양경찰청은 노후헬기 대체도입 기준을 기령(機齡) 26년 이상(획득시점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에 최초로 대체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은선 예산분석관(own-sun@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4132-300

[노후헬기 연차별 대체도입 계획]

구분	벨	카모프			
	89년(1대)	'95년(2대)	'97년(3대)	'98년(2대)	'99년(1대)
기 령('17년 기준)	28년	22년	20년	19년	18년
사업착수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획득시점 (기령)	'21년 (32년)	'22년 (27년)	'23년 (26년)	'24년 (26년)	'25년 (26년)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는 「노후헬기 수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용역(2017. 6)」에서 해경 노후헬기의 최적 교체주기를 26년으로 도출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며, 헬기의 잔존가치·운영비, 해양운영환경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타 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관별로 노후헬기 대체도입 기준이 기령 20년부터 30년까지 편차가 있으며, 대체도입 기준의 근거 역시 국방부 장비편람, 기관 자체 연구용역 등으로 나뉘어 일관성이 부족하다.

[타 기관 노후헬기 대체도입 기준 및 근거]

대체도입 기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령	20년	20년	약 30년
근거	국방부 장비편람	자체 연구용역	자체 연구용역 등

- 주: 1. 소방청 연구용역: 소방항공대 최적화 관리운영모델 개발, 2014. 12.
 2. 산림청 연구용역: 노후헬기 수명기준 및 정비에 관한 기준 연구용역, 2016. 9.
 3. 산림청 연구용역에서는 헬기 노후를 고려한 장비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한 기령을 20년으로 도출하고 있으나, 산림청에 따르면 이는 정확히 대체도입 기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노후화 및 대체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는 약 30년 이상 기령에 대하여 대체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자료: 해양경찰청

이는 현재 국가 보유 항공기의 대체도입에 대한 통합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가가 소유한 항공자산의 노후정도·잔존가치·수리비용·교체시기 및 비용 등이 체계적으로 평가·관리되지 못하고, 기관에 따라 대체도입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기관의 항공기는 유사시 국가 전력으로서 통합하여 기능하게 되며 평시에도 치안·구조 등 기관 간 일부 중복되는 영역의 임무를 서로 지원할 수 있으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종도입·운영·대체도입·폐기 등 전 단계를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청은 2018년 예산안에 노후헬기 대체도입이 최초로 반영되어 있는 등 향후 순차적으로 노후항공기 대체도입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항공기 도입 및 운영의 체계화·효율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항공기 대체도입 등에 대한 통합적인 기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기관별 연구용역 등 별도 사업비용이 절감되며, 각 부처의 노후항공기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제고되는 부대효과도 예상된다.

가. 현황

통신위성장비관리 사업¹⁾은 해상경비 및 해상치안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신·항해·위성장비를 운영·설치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재난안전통신망구축²⁾ 사업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예산 6억 7,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다. 정부의 재난안전통신망구축 사업은 재난안전 관련 기관별로 운용 중인 통신망 및 단말기를 단일하게 구축하여 재난안전 대응력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³⁾으로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추진될 계획이다.

[2018년도 통신위성장비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통신위성장비관리	11,005	13,466	13,466	14,639	1,173	8.7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0	0	0	672	672	순증

자료: 해양경찰청

오은선 예산분석관(own-sun@assembly.go.kr, 788-4631)

- 1) 코드: 일반회계 4134-300
- 2) 코드: 일반회계 3033-500 (행정안전부)
소방, 경찰, 해경, 군 등 재난 관련 핵심기관의 8대 분야(소방, 경찰, 해경, 군, 지자체, 전기안전, 가스안전, 의료 분야)에 대한 333개 재난대응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 단일 자가망을 구축하는 사업
- 3) 현재 소방, 경찰, 해경, 군 등 재난안전 관련 각 기관은 일치되지 않은 재난안전통신망 및 이에 따른 각각의 단말기를 운용하고 있다. 각각의 통신망은 기술방식 및 주파수대역이 달라 서로 교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난 현장에서는 구조대원들이 여러 종류의 단말기를 휴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나. 분석의견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단계 및 실제 소요현황을 감안하여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예산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청의 2018년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예산인 6억 7,200만원은 336대, 구매단가 200만원 기준으로 책정되었다.

그런데 정부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이하 “구축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9월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⁴⁾가 진행 중으로서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등 사업추진계획의 구체화가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2018년도가 구축 사업(안)에 있어서 1단계 연도이기는 하나 실제 적용시기 및 지역 등에 있어서는 불확정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처별 2018년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예산을 보면 경찰청은 구매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소방청 예산은 7,400만원, 국방부 예산은 4억 1,100만원으로서 해양경찰청의 구매예산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부처별 2018년도 단말기 보급 예산안]

(단위: 대,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구매대수 (A)	1대당 구매단가(B)	예산액 (A×B)
해양경찰청	통신위성장비관리 (일반회계 4134-300)	336	2	673
소방청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충 청강원대,호남대) (일반회계 1171-303)	46	1.6	74
국방부	예비전력운영지원 (일반회계 2632-305)	411	1	411
계				1,158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이는 정부의 시범사업(2015년 11월~2016년 6월) 검증결과가 당초 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과 달라짐으로 인한 것으로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 KDI에 의하여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수행되고 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예산은 구축 사업의 추진현황을 감안하여 편성되어야 하는 만큼, 재난안전통신망의 적용시기 및 지역 등에 대한 예상치와 해양경찰청 관서위치·인원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실제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해양경찰청의 2018년도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배치계획에서는 2018년 예산안의 336대보다 적은 209대가 배치될 예정으로 나타난다.

또한 해양경찰청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단가가 200만원으로서 타 기관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었다. 단말기 유형별로 구매단가가 100만원대(휴대용)에서 400만원대(차량용)로 차이가 있으므로, 단말기 유형별 소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구매단가 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청 2018년도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배치계획]

(단위: 대)

구 분		지역별 배치 기준			
		무전기 타입	스마트폰 타입	고정용	차량용
계	209대	28	54	7	120
해경청(세종)		0	7	1	19
동해청(강원) 중부청(충북)		0	7	2	
속초서(강원)		7	10	1	47
동해서(강원)		7	10	1	
보령서(충남)		7	10	1	54
태안서(충남)		7	10	1	

자료: 해양경찰청

[재난안전통신망구축 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2015~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시범사업	평창동계 올림픽 대비 특별보강 사업	본 사업 1단계 (중부권)	본 사업 2단계 (남부권)	본 사업 3단계 (수도권)	보완 및 운영
강릉, 평창, 정선	강릉, 평창, 정선 등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서울, 경기, 인천	

주: 1. 구 국민안전처는 시범사업을 통하여 경찰 607대, 소방 468대, 해양경찰청 924대, 군 100대, 강원도 397대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보급함.

2. 해양경찰청은 시범사업을 통하여 보급받은 924대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해양경찰청 강원권 지역에 속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배치되어 사용 중(동해지방해양경찰청 185대, 속초해양경찰서 291대, 동해해양경찰서 448대)이며, 동 단말기는 평창올림픽 종료 후 행정안전부로 회수 및 재배치될 계획임.

자료: 행정안전부 및 해양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유형별 제원]

구분	휴대용		고정용	차량용
	무전기 타입	스마트폰 타입		
외관				
구성품	단독 본체형	단독 본체형	본체 + PC 콘솔	본체 + PC 콘솔
출력	23dBm	23dBm	31dBm	31dBm
방수/방진	IP67	IP55 혹은 IP67	-	-
화면크기	2~3인치	5~6인치	7인치 이상	7인치 이상
동작온도	-20 ~ +60℃	-10 ~ +55℃	-20 ~ +60℃	-20 ~ +60℃
배터리	3,000 mAh 이상	2,700 mAh 이상	별도 전원	별도 전원
제조사 (시범사업)	에이엠텔레콤	삼성전자 팬택 사이버텔브릿지		
단가	1,404천원	1,010천원	3,223천원	4,620천원

자료: 행정안전부

가. 현황

재료비(210-11목)는 사업용·시험연구 및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등의 비용으로서, 실험·실습 기자재·시약·시료 구입비, 시설·장비의 원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료 및 자재,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선박·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광물·동물·사료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부서사업이나 행정사무 등을 수행하는 중 소요되는 소모성물품 등에 대한 비용인 일반수용비(210-01)와 구분된다.

나. 분석의견

재료비 비목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청이 재료비(210-11) 비목으로 편성한 내역 중 검토가 필요한 항목을 살펴보면, 「수색구조역량강화」 사업 중 구조대원 잠수슈트·구급장비 등 구입비 3억 6,700만원, 「경비대테러역량강화」 사업 중 특공대 잠수복·소모품 등 구입비 3억 6,700만원 등이 있다.

[2018년도 재료비(210-11) 예산안 중 비목 적정성 검토필요 항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8 예산안	주요내용
수색구조역량강화	367	구조대원 잠수슈트(건식·습식) 234, 구급장비 및 구조물품(소모성) 133
경비대테러역량강화	367	해상특수기동대 전술 잠수 소모품 구매 143, 특공대 잠수복 구입 214, 특공대 훈련시설 정비 재료 10
정비창기본경비(총액)	0.3	경찰의날 행사비 0.3
총무활동	6	복사기 소모품 구입 6

자료: 해양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오은선 예산분석관(own-sun@assembly.go.kr, 788-4631)

1)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7. 4. p.186, pp.329~330

잠수복 및 잠수·구조 등 관련물품의 경우 특정한 실습·연구 등 용도에 한정되지 않고 상시적인 해상경비·안전·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와 같은 재료비 비목의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복사기 소모품의 경우 통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사무비 내지는 물품 구매비이고, 경찰의날 행사비 역시 정비창에서 본부와 별도로 구매하는 행사 현수막, 물품 비용이므로 재료비 편성이 적절하지 않다. 이 두 항목의 경우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²⁾에서 명확히 일반수용비 편성의 사례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예산에 대하여서는 감액하고 기존의 일반수용비를 활용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안전·구조 활동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소방청의 경우,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규정에 따라 소방방재 관련 연구·훈련 등에 소요되는 재료 및 장비 등(실험 센서, 화재실험세트 재료, 화생방훈련·구조교육 장비 등)에 한정하여 재료비 비목에 편성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부합하도록 재료비를 편성하며, 부적정한 항목은 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비목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2) 기재부, 2017. 4. p.177

집 필

총괄 | 조용복 예산분석실장

심의 | 고기석 사업평가심의관
상지원 예산분석총괄과장
서세욱 산업예산분석과장
임종수 사회예산분석과장
박해진 행정예산분석과장
정연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수옥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오은선 예산분석관
남희 예산분석관
이동엽 예산분석관
이은경 예산분석관

지원 | 김리라 행정실무원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7년 10월 00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546-0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7